#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입법평가 

문화복지 관련 규정의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이 경 희

## 입법평가 연구 13-24-(7)

#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입법평가 - 문화복지 관련 규정의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 

이 경 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입법평가 

- 문화복지 관련 규정의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on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 Effectiveness Analysis on Welfare Regulations in the Cultural Sector -

연구자 : 이경희(전문연구원)<br>Lee, Kyung-Hee

2013. 10. 18. 

## 요 약 문

## I. 입법평가의 개요

$\square$ 지식기반사회의 창의적 가치요소라 할 문화예술에 관하여 정 책적 요청이 지속되고, 문화예술복지에 관하여도 법 이론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 이에 구체적인 문화예술복지관련 조치 와 규정에 대하여 실증적인 입법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square$ 평가기준은 문화예술관련 법률 및 문화예술진흥법의 규범 목적의 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선정함. 평가대상은 수범 자로서 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과 집행하는 행정실무가 모 두 대상으로 함.
$\square$ 평가방법은 규범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명확성 및 법정합 성을 분석함. 특히 법의 수범자에 대한 설문방법을 통해 규 정과 조치에 대한 실효성과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 ․ 입법평가의 실시

$\square$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규범분석
○ 문화예술복지 관련 규정의 법체계성

- 수범대상을 국민으로 하는 문화예술관련 조치 및 규정들은 법 적 체계성을 정립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
- 현행 문화예술의 복지에 관한 조치들은 다양한 법률과 규정들 로 산재되어 있어, 이들 조치들은 상이한 법체계와 시행주체 등 또한 달리하고 있음.
- 기본법안도 국민의 문화예술증진에 관한 조치에 관한 법적 기 준을 규정하거나, 상위적 지위에서 조치 및 규정을 하위 법률 에 위임하지 않고 있음.

○ 적용대상 개념의 명확성 : 문화예술복지•문화적 권리 등

- 문화예술 등 정의규정은 고찰에 근거한 개념보다는 법 형식적 으로 적용대상의 명시를 위한 포지티브방식의 열거적 규정방식 으로 평가 됨.
- ‘진흥’의 법체계로 적용대상을 법률에서 명확히 정의하기 어려 운 경우, 적어도 하위 법령에서 적용•진흥의 대상을 판단하는 법적 요건을 규정해야 함.

○ 적용기준의 명확성 : 지급기준•산정기준 등 법적 판단요건

- 문화예술관련 조치의 대상과 산정기준 및 지급기준•방식•절 차에 관한 규정의 명확성이 낮게 평가 됨.
- 예컨대 문화이용권지급 조치의 대상인 '문화소외계층’의 법적 정의를 규정하지 않음. 구체적 조치는 법 기술적으로라도 적용 대상 및 판단기준의 법적 요건이 사전에 규정되어야 함.
$\square$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사회적 분석

○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수범자의 이해가능성
○ 문화복지 관련 규정의 실효성

- 현행 문화예술복지 규정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 문화관련 법률의 일반국민 문화생활 기여도

○ 문화복지 서비스의 규범화
○ 국민 문화복지를 위한 규범체계에 대한 인식

- 국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규범체계
- 문화기본법 제정 시 문화예술진흥법의 역할

○ 국민 문화복지의 시행기구 및 전문인력에 대한 인식

- 문화복지 시행기구 및 관련 규정
- 문화복지 법률 제도 및 서비스 신설 시 기구 및 인력배정
-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의견
- 문화복지 전문인력이 제공해야 할 서비스


## III. 쟁점별 대안과 분석

$\square$ 국민 문화복지 관련 규범체계 확립 방안
○ 기본법 체계 내 규범화 방안의 가능•한계

- 기본법의 선언적 권고적 규정의 한계로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 법, 규모, 기구 등에 관한 조치와 규정의 제정이 필요
- 기본법상 법률 제정의 원칙, 조치 선정의 기준, 적어도 위임규 정이 있을 때 현실성 기대가능
- 기본법과 법률들 간의 체계성 필요
- 문화복지 관련 조치의 형식적 규정방식의 과제는 기본법체계 하 에서도 잔존

○ 국민에 대한 문화예술 복지 관련 조치의 입법 방안

- 기존 법률들은 문화예술 장르, 지역적 적용범위, 인적 적용대상 등 다양한 기준으로 입법됨.
- 인적 대상별로 규정하는 경우, 동일 인적대상에 대한 이중조치 또는 특정 인적대상에 대한 사각지대 발생 가능. 적용대상을 법 률에서 정의하고, 하위 법령에서 조치의 적용•판단기준의 법적 요건을 규정할 때 실효성 확보
- 법률 및 하위법령은 기본법 내지 상위법의 수권범위 내 규율가 능한 바, 법 체계 내에서 정책적 탄력가능성 제한 가능함을 유의
$\square$ 수범자의 이해가능성 및 집행가능성 확보 방안
○ 수범자 국민의 문화복지 접근경로
- 본고 사회적 조사결과 문화예술복지 관련 규범에 대한 인지도 가 낮고, 문화관련 정보 획득경로가 극히 편중된 것으로 평가
- 문화소외 등을 판단하는 법적 요건 및 수범자의 조치에 대한 접근방안에 있어서 수범자의 이해가능성을 고려할 필요
- 규정의 효과성 및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실무가의 복지관련 규정 및 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
$\square$ 문화복지 관련 규정 및 조치의 효과성 향상 방안

○ 문화복지 전문인력을 통한 전달체계

- 문화복지서비스의 용역화 : 문화복지 관련 전문인력을 통한 전 달조치는 수범대상자의 연령, 직종, 지역, 경제 등 상대적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구체적 규모와 대상을 선정할 필요
- 문화복지 용역서비스의 내용 : 전문인력의 업무내용 및 용역서 비스의 구체적 조치의 선정 및 이를 규정하는데 수범자에 대한 실증적 결과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필요성 요건에 따른 급여 산정기준

- 본고 사회적 분석 결과에서 보듯 문화복지급여에 대한 구체적 조치의 요구는 수범자대상군의 특성은 물론 상대적 주관적 속 성까지 포함
- 소득기준만을 법적 요건으로 규정한데 따른 계속적 개정보다 는, 적어도 급여의 산정기준의 요건으로 규정해나가는 방식이 법적 명확성과 안정성에 도움
- 예컨대 현행규정에서도 산정기준으로 필요성 조사를 규정하고, 필요성 요건의 하나로 소득기준을 예시하는 방안 등

주제어 : 입법평가,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 문화복지

## Abstract

## I . Background to and Method of Research

$\square$ Policy on culture and art is continually required as the production factors of knowledge-based society. Legal study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 has been studied for well-being. Now, legal impact assessment in culture and art sectors is also needed.
$\square$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was enacted in 1972, the oldest law in the field of culture and played the role of culture as the principal framework act. Therefore, it is significant to analysis legal impact of the culture and art promotion act.
$\square$ Evaluation object includes both public subjected to regulation and administrators enforcing to regulation. In order to analyze the clarity and consistency, normative analysis method is used.

## П. Major contents

Normative analysis on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O Legal system analysis on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 Measures and regulations in culture sector are for the people that did not systematically assessed.
- Framework law on culture, even the choice of action does not define the principal rules.
- Now welfare actions in culture sector are defined in various legal system and organization.

O Clarity of the application and acceptance criteria

-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does not define the culture and be an example.
- At least in the sub must specify the criteria for the application of the law.
-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must define specific criteria to pay the cultural benefits.Survey on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O Public Understanding of the Culture and Art Promotion Act

- The perceived level of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CAPA)
- Understanding of content of the CAPA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on culture welfare

- The current cultural and artistic satisfaction of the people on welfare provision
- legal contribution to the cultural life of the public
- the reason of the low contribution of culture - related laws

O Standardization of culture and welfare services

- Welfare services necessary for the culture
- Cultural and welfare services needed by the public

O The Public Understanding of the legal system

- Rules for the promotion of national culture welfare system
- The role of CAPA under the framework legal system

O Public understanding on professional staff in the culture sector

- Cultural Regulations Enforcement Agency
- Positive comments about culture and welfare professionals
- Culture and welfare services professionals need to be provided

2) Key Words :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CAPA), Culture, Art, Welfare in culture sector

## 목 차

요 약 문 ..... 3
Abstract ..... 9
제 1 장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입법평가의 개요 ..... 17
제 1 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 17
제 2 절 입법평가의 구성과 방법 ..... 19
제 2 장 입법평가의 대상과 기준의 선정 ..... 21
제 1 절 평가 대상의 선정 ..... 21

1. 입법평가의 목표 ..... 21
2. 평가대상의 조치 ..... 22
제 2 절 평가 대상의 문제 ..... 25
3. 국민의 문화예술복지에 대한 적극적 수요증가 ..... 25
4. 접근 문화장르와 정보획득 경로의 편향 ..... 28
5. 상대적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소외 ..... 33
6. 문화예술복지 전달체계의 과제 ..... 38
제 3 절 평가 기준의 선정 ..... 41
제 3 장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규범 분석 ..... 45
제 1 절 규범 분석의 개요 ..... 45
제 2 절 문화예술진흥법의 규범체계성 분석 ..... 46
7. 문화예술진흥법의 법체계성 ..... 46
8. 문화복지 관련 규정들의 법합치성 ..... 53
제 3 절 문화예술진흥법의 명확성 분석 ..... 67
9. 입법목적의 명확성 ..... 67
10. 법상 개념의 명확성 ..... 68
제4 장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사회적 분석 ..... 73
제 1 절 사회적 분석의 개요 및 설계 ..... 73
11. 설문의 배경 및 목적 ..... 73
12. 설문의 표본 및 방법 ..... 74
13. 설문의 설계와 내용 ..... 75
14. 응답자 특성 ..... 77
제 2 절 행정기관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분석 ..... 82
15. 업무수행 관련 ..... 82
16. 문화예술진흥법 관련 ..... 91
17. 문화예술복지 법제화 관련 ..... 99
제 3 절 일반국민 설문조사 결과 분석 ..... 107
18. 문화예술 이용 관련 ..... 107
19. 문화예술진흥법 관련 ..... 126
20. 문화예술 복지 관련 법제화 관련 ..... 145
제 5 장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 ..... 159
제 1 절 문화예술복지 관련 규정의 규범체계성 ..... 159
21. 문화예술복지 관련 규정의 법체계성 ..... 159
22. 적용대상 및 적용기준의 명확성 ..... 168
제 2 절 문화예술복지 규범에 대한 수범자의 이해가능성... ..... 172
23.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수범자의 이해가능성 ..... 172
24. 문화복지 관련 규정의 실효성 ..... 180
25. 문화복지 서비스의 규범화 ..... 186
26. 국민 문화복지를 위한 규범체계에 대한 인식 ..... 191
27. 국민 문화복지의 시행기구 및 전문인력에 대한 인식 ..... 194
제 6 장 대안의 비교 • 분석 ..... 201
제 1 절 국민 문화복지 관련 규범체계 확립 방안 ..... 201
28. 기본법(안) 체계내의 국민 문화복지 규범화 방안 ..... 201
29. 국민에 대한 문화예술 복지관련 조치의 입법 방안 ..... 208
제 2 절 수범자의 이해가능성 및 집행가능성 확보 방안 ..... 212
30. 수급대상 • 급여내용의 특성 및 수범자의 친숙성 • 필요성 인식에 따른 문화복지 접근경로 ..... 212
31. 행정실무가의 문화복지 규정•조치 가이드라인 ..... 215
제 3 절 문화복지 관련 규정 및 조치의 효과성 향상 방안 ..... 216
32. 문화복지 전문인력을 통한 전달체계 ..... 216
33. 필요성 요건에 따른 급여 산정기준 ..... 219
제 4 절 대안의 한계 ..... 224
참 고 문 헌 ..... 225
【부 록】
34. 행정기관 설문조사 질문지 ..... 229
35. 일반국민 설문조사 질문지 ..... 239

## 제 1 장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입법평가의 개요

## 제 1 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문화적 복지는 사회보장법상 가치일 뿐 아니라, 지식기반사회의 생 산원동력인 창의•창조적 가치를 생산하는 요소이라 할 것이다. 특히 창의성을 압축하고 있는 예술은 문화산업을 포함한 산업적•경제적 가치는 물론, 지적생산수단을 사용하는 현대산업구조 전 분야에 걸친 발전적 자원이자 자산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미 다수의 국가들이 지식기반 내지 창조사회로의 전개에 대응하 는 미래산업의 생산기저로서의 문화예술복지분야에 구체적인 정책과 이에 대한 법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한국의 향후 복지정책 또한 문화복지개념을 정책상 제도로 시행해나가는 동시에 관련 법률의 제• 개정까지 예상되고 있다. 또한 지역적 문화격차를 축소해나가고 소외 계층의 문화적 참여기회의 확보가 정책과 법률의 목적에 포함될 것으 로 기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학계는 문화복지라는 법적 개념의 확립을 비 롯한 법이론적 연구는 이루어져 온 반면, 구체적인 문화적 급부에 관 하여서는 사회학 내지 행정학의 분야에서 정책적 차원의 접근이 보다 활발히 있어왔다.
이제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시스템의 구 축과 관리의 기반으로서, 관련 법체계와 이를 위한 실증적 연구로서 입법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이미 문화적 복지에 대한 국민 들의 참여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국가의 문화에 대한 역할은 또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국가의 문화보호 내지 문화부양이라는 법 이론적의 과제뿐 아니라, 이를 실현하는 국가의 문화정책상 과제이자 이에 관한 구체적 규범체계는 입법평가의 대상이라 하겠다.

문화복지 관련 법제에 대한 정책적 기대는 일관성과 지속성을 전제 한 체계적 문화복지의 실현기능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 복지에 대한 법적 개념에서부터 구체적 급여에 대한 법적요건에 이르 기까지 법제화는 점진적이고 개별적인 접근이 계속되고 있다. 법적용 의 범위와 대상에 있어서도 각 규범에서 각기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체계라 할 수 있다. 예컨대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소외계 층, 학교의 재학생과 직장의 직원 및 그 밖의 종업원 그리고 국민에 대한 문화복지증진의 조치를 각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등의 경우 문 화 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로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문화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을 적용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건 강가정기본법은 문화정책에 있어 가족을 대상으로 우대하는 방안의 강 구를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법, 문화산업진흥법상 등 개 별 법률들에서 문화복지 관련 규정들이 각 대상별로 산재하고 있다.

이렇게 문화예술을 대상으로 산재된 규정들에 대한 연구방법은 규 범체계에 대한 입법평가가 선재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복지로 서의 문화개념이라는 이론적 연구 내지 비교법적 연구를 통한 방법을 넘어 대상 법규정에 대한 실질적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방법 으로써 입법평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법정책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안의 모색으로서 각 방안에 대한 입법평가도 필요하다 하겠다. 우선 현행 규범에 대한 사 후적인 실효성 판단으로서 법체계적 확인과 효과성 분석의 실시가 선 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입법대안과 정책의 수립의 전제를 위한 연 구로서도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본 연구는 대상 규범의 체계성 내지 법정합성을 파악하고 각 규범의 적용대상에 대한 사회적 분석방법을 통한 실증적인 입법평 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로써 실현 내지 기대가능성 있는 현행

규범 및 법체계를 제언하고, 향후 효율적인 정책기반에 대한 법적 역 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제 2 절 입법평가의 구성과 방법

입법평가의 범위로써의 문화예술복지는 현행 규정상 문화와 예술 및 복지에 관한 법적 정의를 활용한 개념으로 제한할 필요가 크다. 예컨대 포괄적 범위 내지 상위개념으로 보고 있는 ‘문화’와 그에 포섭 된 구체적 '예술'의 학제적 논의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입법평가의 범위로 선정하는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본 입법평가의 범위로써 문 화와 예술 및 복지의 개념은 관련 법상 정의규정을 평가대상으로 하 겠다. 다만 평가기준으로서 대상법제의 원리에 따른 법적 개념은 다 루어질 수 있겠다.

입법평가의 기초적 평가기준이라 할 수 있는 평가대상의 규범목적 은 명문의 목적조항뿐 아니라 법제정 이유와 배경까지 살필 수 있다. 나아가 이후 제정된 개별 법률들의 규범목적들 간의 체계적 분석도 활 용함으로써 평가기준의 선정한다. 즉 문화예술진흥법의 규범목적을 기 본적인 평가기준으로 법제•개정의 이유와 배경을 포함하여 분석할 수 있다. 그 밖에 체계성을 근거로 동일대상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 범목적을 평가기준에 포섭할 수 있다.

또한 평가대상은 수범자로서 조치의 시행주체와 적용대상을 포섭한 다. 즉 문화예술복지의 관리운영주체로서의 국가 내지 소관부처와 지 방자치단체 및 관련 위원회 등의 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조치의 적용대상으로서 국민과 문화소외계층 등을 평가범위로 선정 하고자 한다. 즉 규범의 적용대상자로서 국민과 규범의 집행자인 관 리운영주체 등이 규범의 수범자로서 평가대상이 된다.

제 1 장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입법평가의 개요

평가대상에 대한 분석방법으로써는 사후적 입법평가의 단계로서 평 가대상 법규정에 대한 규범적 분석방법을 활용한 법체계적 평가를 우 선 실시함으로써 법정합성 및 명확성 등에 대한 문제 분석을 할 수 있다.

나아가 대상규범에 대한 실효성 내지 효과성 분석을 위한 실증적 입법평가의 방법으로서 사회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즉 평가대상 규정의 적용범위로서 문화예술복지의 수급자 및 관리운영주체 예컨대 문화예술의 수급주체로서의 국민 또는 생산주체인 예술인 및 관리 운 영주체로서 국가 내지 소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개별적인 평 가대상으로서 효과성 분석을 시행할 수 있다.

특히 문화적 복지의 수급대상자들에 대한 사회적 분석 방법을 활용 함으로써 현행법상 관련 조치들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기대한다. 또 한 예술가 및 행정가들에 대한 집중면접방식의 활용하고자 한다. 그 밖에 평가대상의 선정을 위한 문제분석의 단계 및 설문의 설계 그리 고 대안의 분석단계에서는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을 통한 방법을 활 용하였다. 이러한 평가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본 입법평가의 결과는 사 후적 평가로서 뿐 아니라 향후 관련 법제의 제•개정에 대한 사전적 평가의 선행연구로서도 활용될 수 있겠다.

## 제 2 장 입법평가의 대상과 기준의 선정

## 제 1 절 평가 대상의 선정

## 1. 입법평가의 목표

입법평가의 실시하기에 앞서 선행될 단계는 바로 평가의 목표를 선 정하는 것이다.
평가의 목표란 평가대상인 법률이 목적하는 결과이자 입법평가를 통 해 궁극에 달성해야하는 성과라 하겠다. 즉 법률이 효력을 발휘하고 자 하는 내용, 또는 그 효력을 통해 얻으려는 이익이라고도 하겠다.

대체로 입법의 목적과 필요성을 통해 법률의 목표가 선정되며, 이로 써 법의 목적 조항을 통해 목표를 우선적으로 살피게 된다.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문예진흥법’ 또는 ‘평가대상법률’)은 입법목 적은 우선 목적 조항에서 직접적으로 발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법률 의 제•개정의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문예진흥법의 적용된 조치들의 목적에서도 찾을 수 있다.

우선 문예진흥법의 입법목적은 법의 목적 조항 및 법률 구성에 따 라 다음의 목적 I. II.로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목적으로 한정 할 경우 목표 III.과 목표 1.2.로 제한할 수 있다.
<최상위 목표>
목표 I.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 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
목표 II.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문화예술진흥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의 조치를 통한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과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의 확대
목표 III.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위 목표>
목표 1. 문화예술복지의 증진을 통한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과 국민의 문 화 향수 기회의 확대

목표 2.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 향상과 적극적 참여 증진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평가대상의 궁극 의 지향점이자 평가의 최상위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나아가 대안 내지 방안의 비교가 이루어지는 범위 내지 범주가 될 것이다.

본 평가는 목표 1 과 2 를 기준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목표를 아 래의 정도로 선정할 수 있다.
<세부 목표>
목표 가.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와 향수기회 확대 등 문화예술복지 조치의 효과적인 증진

목표 나. 국민의 문화예술복지에 대한 이해 향상
목표 다. 문화예술복지 규범의 체계화

## 2. 평가대상의 조치

발견된 목표를 전제로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 치들의 내역이 도출될 수 있다. 관련 조치들은 다음의 주요 영역에 의 해 파악될 수 있다. 각각 개별조치는 모든 조치를 조사범위 내에서 주 요한 조치들로 선정•열거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에 대하여 평가될 문제가 질의되고, 목표에 근거한 평가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표 П－1＞문화예술진흥법상 평가대상 조치의 규정

| 순 | 조 치 들 | 적용범위 | 평가대상 |
| :---: | :---: | :---: | :---: |
| 1 | 1．문화의 날，달 설정 | －문화의 날은 매년 10 월 셋째주 토요일 <br> －문화의 달은 매년 10 월 <br> －공연•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br> －강연회나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 $\star$ |
| 2 | 2．문화강좌 설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br>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 <br> －「지방문화원진흥법」상 설립이 인가된 지방문화원 <br>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 <br>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star$ |
| 3 | 3．학교 등의 문화예술 <br> 활동 단체 권장， <br> 활동비 일부 지원 |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 2 조에 따른 각급 학교 <br>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이 100 명 이상인 직장 | $\star$ |
| 4 | 4．도서－문화전용 상품권인증제도 | －고시기준에 따른 상품권 발행자 | X |
| 5 | 5．문화산업의 육성 • 지원 |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 X |
| 6 | 6．장려금 지급 |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시상 <br> －대통령령에 정한 국제경연대회 입상 | X |


| 순 | 조 치 들 | 적용범위 | 평가대상 |
| :---: | :---: | :---: | :---: |
| 7 | 7．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지원 | i |
| 8 | 8．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증진 시책강구 | ＂문화소외계층＂이란 <br>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 조제 2호에 따른 수급자 <br>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 조제 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 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br>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 급자 <br> 나．「장애인복지법」 제 49 조제 1 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및 같은 법 제 50 조제 1 항에 따른 장애아 동수당 수급자 <br> 다．「장애인연금법」제 5 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br> 라．「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 표 2 제 3 호라목의 경우에 해당 하는 사람 <br> 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 른 보호대상자 <br> 4．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 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 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사람 | 3 |
| 9 | 9．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이용권의 지급 | 该 |

표기 ：평가대상 선정／초 표기 ：（국민에 대한 효력에 한해）평가대상 준용／X ：평가대상 제외

## 제 2 절 평가 대상의 문제

## 1．국민의 문화예술복지에 대한 적극적 수요증가

입법평가의 동기는 법규정의 효과 내지 결과를 평가할 필요성을 인 식하고 있는 정치•행정 체계에서 직접적으로도 제기될 수 있다．나아 가 특정한 법규정과 조치에 대한 입법평가의 동기는 사회적 그룹 속에 서 법규정의 개정필요성을 주장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다．${ }^{1)}$

이 점에서 문화예술진흥법은 학계와 정계는 물론 실무분야에서도 법 규정의 개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했으며2），문화예술에 관한 기본법 역할을 해온 이법에 대한 법체계적 정비에 관한 주장도 있어왔다．3）따 라서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복지의 증진에 관한 규정과 조치들은 이미 충분한 사후적 입법평가의 동기가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1）박영도，「입법평가 이론과 실제」，한국법제연구원，2007， 183 면．
2）최근의 법안 제안들이 의원발의가 주된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학계의 논의와 정 부 및 부처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무적 논의가 계속되어 오고 있다고 파악된다； 문화관광부，예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기본연구， 2006 ；한국문화예술위원회，지역 문 화예술 진흥을 위한 법제 연구，2008；현택수•윤동은•김광병，＂문화복지의 법적 권 리화에 대한 탐색적 연구＂，한국사회복지학 Vol． 60 ，No．4， 2008 등
3）최근 의안발의된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뮤지컬＇을＇문 화예술＇의 정의 개념에 포함하여 문화예술의 시대적 변화를 법률에 반영하는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2013．9．5．），현행 문화예술의 범위에 다원예술을 추가하고，다원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기구를 마련하자는 김기현의원 대표발의（2013．7．26．）， 기존＇표준영정＇이란 용어를＇국가공인영정＇으로 하여＇표준＇이란 말뜻에 따른 불필 요한 오해를 불식하며，필요에 따라 정부가 10 년마다 공모를 통하여 국가공인영정 을 새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배재정의원 대표발의（2013．7．22．），문화지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김장실의원 대표발의안（2012．11．27．），문화복지사 제도를 신 설하는 윤관석의원 대표발의안（2012．11．15．），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이상 일의원 대표발의안（2013．3．12．）는 물론，기본법으로 「문화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문화적 기본권 등 선언적 의미의 조항을 규정하고「문화예술진흥법，에는 구체적인 문화예술 진흥책을，「지역문화진흥법，에는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진흥책을 규정하 는 등 문화예술 분야의 법체계를 정비하는 한편，예술인의 창작 활성화를 위한 지 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전부개정을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전부 개정법률안 이군현의원 대표발의（2013．5．30）이 회부되어 있음．

사후적으로 특정 법규정의 제•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전 문가 워크샵과 수범자 워크샵을 내부에서 실시하여 문제점을 발견하 고 분석하는 것으로도 적정한 방법론이 된다.

따라서 문화예술진흥법상의 조치에 대한 현황과 이에 관한 문제의 분석 자체는 사후적 입법평가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4)

국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향유에 대한 적극성은 꾸준한 문화 예술에 관한 참여와 활동의 통계자료로서 입증되고 있다. 이 점은 사 회•경제적 성장에 비견할 때 상대적으로 꾸준하고도 지속적인 증가 로서 고무적인 현상이다.

실제로 국민의 문화향수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2년 예술행사 관람 률은 $69.6 \%$ 를 기록했으며, 관람률 변화추이가 2010 년 조사 결과 (67.2\%) 에 비해 $2.4 \%$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국민 일반의 예술행사관람률이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5)

특히 문화예술에 대한 관람 등의 기회의 증가는 물론이고, 적극적인 형 태로 문화예술에 참여와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요소이다.

실제 문화 동호회 참여율을 살펴보면, ‘참여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3.9 \%$ 로 2010 년 조사 결과( $3.1 \%$ )에 비해 $0.8 \%$ 상승하였다. ${ }^{6}$ )
4) 사후적 입법평가의 동기와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박영도, 「입법평가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2007,183 면 이하 참조.
5) <그림 II-1-1> 예술행사 관람률 변화추이


출처 : 2012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6) <그림 П-1-2> 문화관련 동호회 참여율 변화추이


출처 : 2012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예술행사 직접 참여 의향은 $5.6 \%$ 로 2010년 조사 결과(3.7\%) 비 해 $1.9 \%$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적극적인 문화예술에 대한 참여와 활동의 동기가 증가하였다.
<그림 П-1> 예술행사 직접 참여 의향 변화추이
[Base:전처, 단위:\%]


출처 : 2012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이러한 문화예술에 대한 적극적 수요의 변화는 지역기반의 주민들 을 중심으로도 볼 수 있다. 예컨대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내 주민의 문화예술의 교육에서 참여와 활동의 정책으로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의 참여활동도 증가하고 있다. 즉 지 역내 문화센터를 통한 예술교육의 참여로 고무된 동기로 지역의 문화 재단의 지원에 따른 문화동아리 활동 등이 국민의 문화예술에 대하 수요가 적극성을 띠고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집중면접 사례 1) 지자체내 각 동이나 구립 평생학습센터 등에서 문화예술의 교육을 통해 참여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러한 문화적 소양을 배경으로 참여와 활동 동기가 부여된 주민들이 자발적인 문화 참여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성남문화재단의 경우 "사랑방문화 클럽"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문화참여 및 활동을 지원하며 200 여 클럽(2013년 1 월 기준 총 회원 178 개 클럽)에 대해 각 단체들의 활동 을 위한 연습과 공연의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

인 참여욕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 전문적인 연습과 공연 등의 활동을 위해 전문예술인과의 교류도 활발해짐으로써 지역과 문 화간의 지역기반이 마련되는 경험도 하고 있다.7)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복지에 관한 규정에 대한 입법평가는 정 치나 행정체계 내에서 요구되기도 하지만, 이처럼 조치에 관한 수범자 그룹이 체감하고 경험하는 문제의 제기 또한 주요한 입법평가의 절차 라 하겠다.
이점에서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복지의 증진에 관한 규정과 조 치들에 대한 입법평가의 동기와 대상을 확인하는 방법으로써, 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분석하는 것이 적정한 방법론이 된다. 즉 평 가대상의 현황과 문제의 분석 그 자체가 사후적 입법평가의 한 부분 이 되는 것이다.8)

## 2. 접근 문화장르와 정보획득 경로의 편향

(1) 문화예술 분야별 접근의 편향

본고 설문조사에 따른 국민의 문화예술 분야 - 장르별 경험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장르 - 분야별 경험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부각된다.

최근 1 년간 이용경험을 비교할 때 영화/미디어는 $95.2 \%$ 로 국민의 대다수가 경험한 데 반해, 그 외 장르의 경우 $40 \sim 50 \%$ 내외의 응답을 보였고 무용과 복합장르의 경우 $10 \%$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 문조사의 지역표본이 문화경험이 용이한 서울과 수도권에 상당수 있 었음을 감안할 때 실제 장르적 경험의 편향은 더욱 클 것이다.9)

[^0]<표 П-2> 최근 1년간 문화예술 분야별 경험
(단위: \%)

| 구 분 | 1~2회 | 3~4회 | 5~6회 | 7 회 <br> 이 상 | 한 번도 없 음 |
| :---: | :---: | :---: | :---: | :---: | :---: |
| 문학작품 <br> (소설, 시, 아동문학, 희곡, 평론 등) | 12.4 | 11.5 | 7.1 | 18.1 | 50.9 |
| 음 악 <br> (오페라, 성악, 대중음악, 관현악, 국악 등) | 21.9 | 9.5 | 3.5 | 4.5 | 60.6 |
| 무 용 <br>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 6.0 | 1.4 | 0.4 | 0.1 | 92.1 |
| $\begin{gathered} \text { 연극, 뮤지컬 } \\ \text { (연극, 마당극, 뮤지컬 등) } \end{gathered}$ | 21.5 | 14.3 | 3.7 | 1.9 | 58.6 |
| 영화, 미디어 <br> (영화, DVD , 미디어 콘텐츠 등) | 8.1 | $\underline{20.1}$ | 23.9 | 43.1 | 4.8 |
| 전 시 <br> (회화, 전시회, 건축, 사진, 공예, 디자인 등) | 21.5 | 15.0 | 3.6 | 2.7 | 57.2 |
| 복합장르 <br> (비보이 등) | 6.2 | 1.6 | 0.6 | 0.2 | 91.4 |

이러한 특징은 분야별 예술행사 관람횟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년 간 분야별 예술행사 관람횟수는 영화가 3.6 회로 다른 분야에 비해 높 게 나타났다. 이는 2010년 조사 결과에 비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 야별 관람횟수의 편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П-3> 분야별 예술행사 관람횟수 변화추이

| 예술행사 | 연평균 관람횟수 |  |  |  |  |  | 관람자 대상 관람횟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3 | 2006 | 2008 | 2010 | 2012 | 2003 | 2006 | 2008 | 2010 | 2012 |  |
| 문학행사 | 0.1 | 0.1 | 0.1 | 0.1 | 0.1 | 2.71 | 2.48 | 2.07 | 2.16 | 1.96 |  |
| 미술전시회 | 0.2 | 0.2 | 0.2 | 0.2 | 0.2 | 2.26 | 2.15 | 2.30 | 2.16 | 1.98 |  |
| 서양음악 | 0.1 | 0.1 | 0.1 | 0.1 | 0.1 | 2.06 | 2.39 | 2.47 | 1.98 | 2.16 |  |
| 전통예술 | 0.1 | 0.1 | 0.1 | 0.1 | 0.1 | 1.42 | 1.97 | 1.82 | 1.86 | 0.11 |  |
| 연극 | 0.2 | 0.2 | 0.2 | 0.2 | 0.2 | 1.88 | 2.10 | 2.09 | 2.02 | 2.09 |  |
| 뮤지컬 | - | - | - | - | 0.2 | - | - | - | - | 1.85 |  |
| 무용 | 0.01 | 0.01 | 0.03 | 0.04 | 0.04 | 1.24 | 1.45 | 2.70 | 3.03 | 1.97 |  |
| 영화 | 3.5 | 3.9 | 4.0 | 3.3 | 3.6 | 6.58 | 6.59 | 6.52 | 5.46 | 5.54 |  |
| 대중음악/연예 | 0.2 | 0.2 | 0.1 | 0.1 | 0.3 | 1.85 | 1.69 | 1.67 | 1.62 | 1.98 |  |

출처 : 2012 문화향수실 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 문화예술 정보 획득의 편향

본고 설문을 통해 일반국민들의 편향적 데이터가 큰 부분의 하나로 문화예술 관련 정보의 획득경로로 드러났다. 세대 내지 연령에 따른 문화예술의 관람 내지 참여의 편차가 큰데도 이러한 요소가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문화예술 관련 정보를 얻는 경로로는 ‘자발적인 인터넷 사이 트(포털사이트, 티켓예매, 블로그 등) 검색’이 $59.7 \%$ 로 절반을 넘었으 며, 그 다음으로 '신문, 잡지, 공연포스터 등' $17.9 \%$, '주위 지인이나 동호회 등의 추천이나 권유' $16.1 \%$, '공공기관의 알림서비스' $5.8 \%$, 'TV 등 방송, $0.4 \%$ 등으로 응답되었다. 응답자 특성을 감안하여 세부적으 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계층에서 ‘인터넷 사이트 검색’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중졸이하 학력층과 전업주부, 자영업 등의 경우 '신문, 잡지, 공연포스터 등’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Pi-2>$ 문화예술 관련 정보 획득경로
(단위: \%)

<표 П-4> 문화예술 관련 정보 획득경로(인구통계적 특성별)
(단위: \%)

|  | 분 | 자발적 인터넷 사이트검색 | 신문, 잡지, 공연, 포스터 등 | 지인•동호 회의 추천 | 공공기관 홍보 알림서비스 |
| :---: | :---: | :---: | :---: | :---: | :---: |
|  | 체 | 59.7 | 17.9 | 16.1 | 5.8 |
| 성 별 | 남 자 | 62.5 | 17.1 | 12.5 | 7.4 |
|  | 여 자 | 56.8 | 18.7 | 20.0 | 4.1 |
| 연령별 | 19~29세 | 69.5 | 12.2 | 15.0 | 3.3 |
|  | 30~39세 | 73.0 | 11.2 | 10.3 | 5.2 |
|  | 40~49세 | 58.6 | 22.7 | 12.1 | 6.3 |
|  | 50세 이상 | 43.3 | 23.2 | 24.8 | 7.7 |
| $\begin{aligned} & \text { 거주지 } \\ & \text { 특성별 } \end{aligned}$ | 서울 거주 | 61.5 | 18.3 | 15.4 | 4.8 |
|  | 6대 광역시 | 58.0 | 19.8 | 15.6 | 5.4 |
|  | 시 단위 | 59.5 | 17.4 | 16.3 | 6.6 |
|  | 군/면/읍 | 63.3 | 11.4 | 19.0 | 6.3 |

제 2 장 입법평가의 대상과 기준의 선정
<표 П-5> 문화예술 관련 정보 획득경로(사회적 특성별)
(단위: \%)


한편 문화예술 관람률을 응답 특성별로 살펴보면 10대와 20대가 각 $92.2 \%$ 와 $91.5 \%$ 인 반면 60 대 이상은 $30.4 \%$ 로 20 대 미만세대에 비해 무려 $60 \%$ 이상이 낮은 낮게 나타났다. 10 ) 이러한 연령별 세대별 차이는 지역규모에 따른 편차(대도시 대비 읍면지역) $19.8 \%$ 가구 월평균 소 득에 따른 편차(월 500 만원 이상 대비 100 만원 미만) $55.2 \%$ 보다도 높 은 것이다.

즉 연령과 세대라는 요소가 문화예술 관람률의 편차에 가장 큰 역 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문화예술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방법의 편향 즉 인터넷등의 매체가 주된 방법인데 따른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분 석된다.

## 3. 상대적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소외

(1) 문화예술교육의 상대적 경험

법의 적용대상이자 수요자인 국민에 대한 문화예술복지 관련 규정 조치의 하나인 문화교육에 관한 현황과 특성을 살펴본다.

본고 설문의 문화예술에 관한 교육의 경험의 경로에 관하여 '대학 이상 전공 내지 교양과목(22.0\%)', '초중고 정규교과목(16.1\%)', '공공기 관(주민센터, 구청, 시청 등) 제공의 교육(9.7\%)', ‘사설학원, 과외 내지 문화센터 등의 사교육(5.3\%),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다.11)

즉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이 여전히 높은 비율이며 공공기관이나 사설학원 등 적극적인 경로를 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이에 관 한 분석은 향후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조치의 방안에 필요할 것이다.
10) 문화체육관광부, '응답 특성별 예술행사 관람률 변화추이', 2012 문화향수실태조 사, 참고.
11) 본고의 이러한 문화예술경험률은 오히려 낮지 않은 비율이다. 2012년 문화체육관 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예술교육 경험 비율'의 추이에 따르면 2012년 8.7\%로, 2010년 조사 결과(9.2\%)에 비해 낮아졌다.

예컨대 장기간의 사교육은 다른 여가활동의 가능성이 큰 청년기의 문화예술 경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반해, 상대적으로 시간재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년기의 경우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적극적으로 참 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관적 내지 상대적 요소의 변수를 주의하게 한다. 한편 공공기관제공의 문화예술교육은 50 세 이상에서 대체로 상 대적으로 장기교육의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결국 문화예술이 경험재로서의 특성이라는 점12) 그리고 문화예술 교 육에 대한 참여 동기 또한 이러한 경험여부에 비례한다는 점을13) 고 려한다면 상대적 요건에 대한 분석을 간과할 수 없다.

즉 문화예술의 교육에 있어서도 주관적 요건에 따른 관심과 경험이 문화예술교육에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점은 나아가 문화 경험에 있어서의 상대적 내지 주관적 원인이 문화소외에 있어서 주관 적 요건이 상대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인식될 수 있다는 순환적 인 과관계를 추론하게 한다.

따라서 문화예술의 경험, 교육, 소외에 대한 조치로서의 규정은 이 러한 상대적 원인에 대한 검토결과를 반영할 때에 긍정적 효과성이 기대될 수 있을 것이다.
12) 문화예술재화의 특성으로 경험재(experience goods)적 성격을 들 수 있다.
13) [문화예술교육 참여 의향 변화추이]
[Base:전제, 단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2 문화향수실태조사, 참고.
<표 П-6> 교육 수강기간 : 사설학원, 과외 내지 문화센터 등의 사교육
(단위: 명, \%)

|  | 분 | 사례수 <br> (명) | 1주 미만 | 1주 이상 - <br> 1 개월 미만 | 1개월 이상 - <br> 3개월 미만 | 6 개월 이상 |
| :---: | :---: | :---: | :---: | :---: | :---: | :---: |
| 전 | 체 | (53) | 3.8 | 32.1 | 34.0 | 30.2 |
| 성 별 | 남 자 | (26) | 7.7 | 38.5 | 30.8 | 23.1 |
|  | 여 자 | (27) | - | 25.9 | 37.0 | 37.0 |
| 연령별 | 19~29세 | (11) | - | 45.5 | 36.4 | 18.2 |
|  | 30~39세 | (7) | - | 28.6 | 28.6 | 42.9 |
|  | 40~49세 | (20) | 5.0 | 45.0 | 35.0 | 15.0 |
|  | 50세 이상 | (15) | 6.7 | 6.7 | 33.3 | 53.3 |
| 직업별 | 전문직/ <br> 관리직 | (11) | 9.1 | 45.5 | - | 45.5 |
|  | 사무직 | (16) | - | 31.3 | 43.8 | 25.0 |
|  | 서비스/ <br> 판매직 | (4) | - | 25.0 | 25.0 | 50.0 |
|  | 생산/기능/ 단순노무 | (3) | - | - | 66.7 | 33.3 |
|  | 전업주부 | (7) | - | 42.9 | 28.6 | 28.6 |
|  | 자영업 | (5) | 20.0 | 20.0 | 40.0 | 20.0 |
|  | 농업, 임업 | (1) | - | - | 100.0 | - |
|  | 기 타 | (6) | - | 33.3 | 50.0 | 16.7 |

<표 П-7> 전문교육 수강기간 : 공공기관(주민센터, 구청, 시청 등)의 교육
(단위: 명, \%)

|  |  | 사례수 <br> (명) | 1주 미만 | 1 주 이상 - <br> 1 개월 미만 | 1개월 이상 - <br> 3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 :---: | :---: | :---: | :---: | :---: | :---: | :---: |
| 전 | 체 | (97) | 22.7 | 36.1 | 28.9 | 12.4 |
| 성 별 | 남 자 | (50) | 24.0 | 42.0 | 24.0 | 10.0 |
|  | 여 자 | (47) | 21.3 | 29.8 | 34.0 | 14.9 |
| 연렁별 | 19~29세 | (18) | 22.2 | 38.9 | 27.8 | 11.1 |
|  | 30~39세 | (13) | 7.7 | 53.8 | 23.1 | 15.4 |
|  | 40~49세 | (30) | 26.7 | 40.0 | 23.3 | 10.0 |
|  | 50세 이상 | (36) | 25.0 | 25.0 | 36.1 | 13.9 |
| 직업별 | 전문직/ <br> 관리직 | (9) | 44.4 | 44.4 | 11.1 | - |
|  | 사무직 | (27) | 18.5 | 40.7 | 29.6 | 11.1 |
|  | 서비스/ 판매직 | (13) | 23.1 | 30.8 | 23.1 | 23.1 |
|  | 생산/기능/ <br> 단순노무 | (4) | - | 75.0 | 25.0 | - |
|  | 전업주부 | (21) | 28.6 | 23.8 | 33.3 | 14.3 |
|  | 자영업 | (12) | 8.3 | 41.7 | 25.0 | 25.0 |
|  | 농업, 임업 | (1) | - | - | 100.0 | - |
|  | 기 타 | (10) | 30.0 | 30.0 | 40.0 | - |

(2) 문화예술 향유의 상대적 인식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의 전반적인 향유의 정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 이고 있다. 따라서 소위 문화빈곤층도 절대적인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예술 관람층도 전반적으로 확산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록 문화빈곤층의 절대적 수치가 감소한다고 해서 상 대적인 차원의 문화격차가 감소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여전히 교육, 연령, 지역에 따른 문화에 대한 소비나 향유의 정 도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14)}$

본고의 설문에서도 일반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에 장애요인으로 '생 활이 바빠 여가시간이 부족하다'(39.9\%) > '경제적 여유가 없다'(25.9\%) $>$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 공연시설이 없다' $(14.0 \%)>$ '문화예술 공연 및 관람을 위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11.4\%)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응답 자 특성별 특징을 살펴보면, 서울 거주자의 경우 ‘경제적 여유가 없다' 는 응답이, 군/면/읍 지역 거주자의 경우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 공연 시설이 없다'는 응답이 각각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특히 계층간 문화소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문화예술 향유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응답이 $78.2 \%$ (매우 큰 차이 $32.4 \%+$ 어느 정도 차이 $45.8 \%$ )로 나타나, ‘차이가 없다'는 응답 $3.7 \%$ (별로 차이 없 는 편 $3.6 \%+$ 전혀 차이 없음 $0.1 \%$ )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한편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경제력과 학력’이라는 응답이 $54.5 \%$ 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개개인의 관심과 성향' $33.3 \%$, '지역, $7.7 \%$ 의 순이었다.
<표 П-8> 국민들 간의 문화예술 향유의 차이
(단위: \%)

| 차이가 있다 |  | 보통이다 | 차이가 없다 |  |
| :---: | :---: | :---: | :---: | :---: |
| $\begin{gathered} \text { 매우 큰 } \\ \text { 차이가 있다 } \end{gathered}$ | 어느 정도 차이가 <br> 있는 편이다 |  | 별로 차이가 <br> 없는 편이다 | $\begin{gathered} \text { 전 혀 } \\ \text { 차이가 없다 } \end{gathered}$ |
| 78.2 |  | 18.1 | 3.7 |  |
| 32.4 | 45.8 |  | 3.6 | 0.1 |

14) 자세한 것은 서우석•김정은, "문화격차 해소에 대한 평가와 전망", 한국문화경 제학회 「문화경제연구」 제 13 권 제 2 호, 2010, 3-20면 참조.

결국 국민의 대다수는 문화예술의 향유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인식 하고, 이러한 향유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다시 문화예술에 접 근하는 장애라고 인식하는 요소로도 인식될 수 있다고 파악된다.
즉 문화예술 접근의 장애요소로 인식하는 원인이 문화예술의 향유 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도 인식할 가능성이 크게 보인다. 이 는 문화적 박탈의 원인이 실질적인 문화 결핍의 원인이 될 뿐 아니 라, 상대적인 문화 불평등 내지 소외의 인식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 서 문제의 심층적 분석을 요한다.

문화적 박탈의 원인을 기준으로 외부조건들로 인한 객관적 요인뿐 아니라, 문화예술을 이해하는 해득력부족으로 자체에 대한 욕구나 충 분히 누릴 역량이 부족한데 따른 주관적 요인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견해 또한 이러한 점을 지적한다.15) 특히 경제적 빈곤과 문화적 빈곤 그리고 정보 빈곤으로 순환되어 사회적 배제라는 부정적 결과를 반복 은 문화적 소외에 있어서 주관적 내지 상대적 요건 그리고 문화예술 재화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동시에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 4. 문화예술복지 전달체계의 과제

행정 체계에서부터 법의 시행과 집행과 관련된 법규정과 조치의 분 석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고 직접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 이런 점에 서 평가대상의 문제에 있어서 법의 집행가 내지 행정 실무가의 의견 과 인식이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이 건 입법평가의 대상 조치에 대한 전달체계를 두고 행정실 무가의 인식 및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한다.

행정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관련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을 질문한 결과, '예산/인력의 부족' $61.2 \%>$ '관련 법률과 실 제 문제 간의 차이' $36.6 \%>$ '업무관련 기관간의 어려움' $27.9 \%>$ '관
15) 이호영•서우석, "디지털 시대의 문화자본과 불평등", 문화정책논총 23 집, 한국문 화관광연구원, 2010, 73-91면 참조.

련 민원의 혼선' $19.1 \%$, '관련 법률의 산재로 인한 어려움' $10.9 \%$ 등 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지자체/산하기관에서는 ‘관련 법률과 실제 문 제 간의 차이'와 '관련 민원의 혼선'라는 응답이, 문화공공기관에서는 '관련 법률과 실제 문제 간의 차이'와 '업무관련 기관 간의 어려움'이 라는 응답이 각각 전체평균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되었다.16)
문화복지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과 기금의 확 보' $53.0 \%>$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일선의 전문인력 확충' $28.4 \%>$ '구 체적인 문화복지 서비스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 $15.3 \%$ 등의 순으로 응 답(1순위 기준)되었다.
<그림 П-3>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사항
(단위: 명, \%)

16) <표 ㅍ-1-6> 문화복지 행정의 업무수행 장애요인(구분/소속기관별)
(단위: \%)

|  |  | 예 산/ 인력의 부 족 | 관련 법률과 실제간 차이 | $\begin{gathered} \text { 업무관련 } \\ \text { 기관 간의 } \\ \text { 어려움 } \end{gathered}$ |  | 관련 법률의 산재로 인한 어려움 | $\begin{aligned} & \text { 전 혀 } \\ & \text { 문제가 } \end{aligned}$ <br> 없었음 |
| :---: | :---: | :---: | :---: | :---: | :---: | :---: | :---: |
| 구 분 | 중앙정부/부처 | 53.7 | 24.1 | 27.8 | 13.0 | 3.7 | 7.4 |
|  | 지자체/산하기관 | 60.8 | 41.8 | 21.5 | $\underline{22.8}$ | 16.5 | 3.8 |
|  | 문화 공공기관 | 70.0 | $\underline{42.0}$ | 38.0 | 20.0 | 10.0 | 8.0 |
| $\begin{aligned} & \text { 소 속 } \\ & \text { 기관별 } \end{aligned}$ | 문화부 | 56.5 | 28.3 | 23.9 | 15.2 | 2.2 | 6.5 |
|  | 복지부 | 37.5 | - | 50.0 | - | 12.5 | 12.5 |
|  | 지자체 | 63.3 | 51.0 | 16.3 | 22.4 | 24.5 | 2.0 |
|  | 문화복지인력 | 56.3 | 25.0 | 25.0 | 31.3 | - | 12.5 |
|  | 지역문화재단 | 57.1 | 28.6 | 35.7 | 14.3 | 7.1 | - |
|  | ARKO | 42.9 | 28.6 | 42.9 | 28.6 | - | 14.3 |
|  | KOCACA | 60.0 | 70.0 | $\underline{40.0}$ | 30.0 | 10.0 | 10.0 |
|  | 예술의전당 | 78.8 | 36.4 | 36.4 | 15.2 | 12.1 | 6.1 |

통상 행정 및 정책의 집행과 시행에 있어서 재원의 확보는 예상되 는 과제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특징적인 과제의 하나라 할 전 문인력과 법적 근거의 문제는 행정실무가의 개별적 역량의 문제로만 파악되기 어려울 것이다. 즉 소관업무의 일선 전문가로서도 재원과 인 력의 확보를 필요로 인식할 만큼의 목표와 업무량으로 인식한다. 반 면 업무의 시행에 있어 주체와 전달체계의 과정은 네트워크 내지 통 합적 시너지 보다는 개별적 대상의 특성에 중점을 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업무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전달체계야말로 전문성이 확보 된 행정실무라 하겠다.

다만, 관련 업무의 소관과 체계의 복잡한 분장과 구조는 문화예술을 다루는 행정이라는 특성에 비추어서도 개별적이되 동시에 통합적 체 계도 갖추어야 하는 이중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 }^{17)}$

특히 평가대상인 문화예술복지의 조치들은 복지급여적 성격으로 인 하여 체계적 기준 및 방식의 선정과 사후 평가 및 조정 등 관리•운 영에 있어서 서비스 전달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그 주체와 전달체 계가 명확해야한다. 이 점에서 현재 특별부조적인 성격의 문화예술급 부가 향후 그 범위나 내용이 확대되거나 일반부조적 성격의 급부가
17) 양혜원, 한국문화복지의 현황과 과제, 2012. 10. 10 워크솝 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회의자료집 (9), 한국 문화복지정책의 향후 과제 중, '문화여가서비스의 전달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참조.


증가할 경우, 그 관리•운영 주체 및 전달체계의 구축은 필요불가결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현재 다른 주무부처의 필요성 조사 에 근거한 소득요건으로 특별부조적 성격의 문화예술복지 급부를 일 부 한정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행정실무가의 관리운영주체 및 전달 체계의 과제는 제한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소외를 급여요건으로 필요성 조사를 하거나 인적 서비 스를 내용으로 하는 용역급여 또는 국민에 대한 문화복지적 서비스를 전달할 경우, 그 관리운영주체와 전달체계의 과제는 인식뿐 아니라 급 부의 실효성에 직결될 것이다.

## 제 3 절 평가 기준의 선정

입법평가의 기준은 구체적인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결과를 계량하 고 판단하는 요소이다. 즉 입법평가가 측정하고자 하는 지수이다.

본 평가는 입법평가의 3가지 평가기준에 맞추어 문제를 제기하고 이 에 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세한 문제들에 대한 내용과 평가기준은 다음의 장에서 실 시되는 입법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분석에서 더욱 상세히 서술될 것 이다. 본 입법평가가 우선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와 그에 따른 평가 기 준은 다음과 같다.

I . 문화복지의 증진을 위한 조치들은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1. 문예진흥법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체계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2. 문예진흥법의 입법목적과 문화복지의 개념 등 법률 내 법률 용어 는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규정되었는가?

문화복지의 조치에 관한 효과에 관하여서는 다음 III의 기본적인 질 의 내지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그리고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효과성 의 평가는 $1-5$ 의 구체적 질문으로 평가 기준을 선정할 수 있다.
III. 9 가지의 조치들은 국민의 문화복지의 양과 질을 증가 내지 향 상 시켰는가?

1. 문화복지의 조치에 관한 규정은 영향이 있었는가?
2. 문화복지급여 규정에 대한 수범자의 만족도가 높은가?
3. 문화복지 전달체계의 실효성이 확보되어 있는가?
4. 문화복지 조치에 관한 규정들은 문화복지의 증진에 기여하였는가?
5. 문화복지 조치에 대한 수요자와 집행자의 현실은 무엇인가?

문화복지 관련 규정과 조치들에 대한 수범자의 이해 정도와 규제 순 응의 정도는 $\Pi$ 의 거시적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수범 자인 국민과 집행자인 행정실무가의 2 개 대상에 집중하여 1-3정도의 구체적 평가 기준을 선정 할 수 있다.
I.-1 수범자중 국민은 적용되는 조치와 이에 관한 규정들에 대하 여 인식하고 만족하는가?
I.-2 수범자중 행정실무가는 시행되는 조치와 이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이해하고 집행하는가?

1. 문예법의 규정들은 수범자의 이해가 용이한가?
2. 문화복지 관련 법체계에 대하여 수범자의 이해가 용이한가?
3. 문화복지 규정에 대하여 행정실무가의 집행가능성은 높은가?

이상 문예법의 목표와 문제 제기에 따른 구체적 평가 기준을 설정 하였다. 이는 1. 규범체계 2. 문화복지 조치 3. 수범자 이해라는 범주 에서 평가대상의 체계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겠다.
<표 П-9> 평가대상의 선정 : 목표 및 평가기준별 문제

| 평가 대상 |  |  |
| :---: | :---: | :---: |
| 목 표 | 평가 기준 | 문제 분석 |
| I . 국민 <br> 문화예술복지의 <br> "체계적 규범화" | 1. 법체계성 분석 | 1. 문예진흥법은 다른 법률과의 관 계가 체계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
|  | 2. 규범의 명확성 분석 | 2. 문예진흥법의 입법목적과 문 화복지의 개념 등 법률 내 법률 용어는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규 정되었는가? |
| II. <br> 국민 <br> 문화예술복지 <br> 규범에 대한 <br> "수범자의 이해" | 1.「문예진흥법」에 대한 수 범자의 이해가능성 분석 | 1. 문예법의 규정들은 수범자의 이해가 용이한가? |
|  | 2. 문화복지 관련 법체계에 대한 이해가능성 분석 | 2. 문화복지 관련 법체계에 대하 여 수범자의 이해가 용이한가? |
|  | 3. 문화복지 규정의 규제 순응도 분석 | 3. 문화복지 규정에 대하여 행정 실무가의 집행가능성은 높은가? |
| III. <br> 국민 <br> 문화예술복지 <br> "효과적인 <br> 증진조치" | 1. 문화복지서비스 규정의 효과성 분석 | 1. 문화복지의 조치에 관한 규정 은 영향이 있었는가? |
|  | 2. 문화복지서비스 규정에 대한 수요 분석 | 2. 문화복지급여 규정에 대한 수 범자의 만족도가 높은가? |
|  | 3. 문화복지 전달체계의 실 효성 분석 | 3. 문화복지 전달체계의 실효성 이 확보되어 있는가? |
|  | 4. 문화복지에 대한 규범 방안 인식 분석 | 4. 문화복지 조치에 관한 규정들 은 문화복지의 증진에 기여하 였는가? |
|  | 5. 문화복지에 대한 접근 및 시행 현황분석 | 5. 문화복지 조치에 대한 수요자 와 집행자의 현실은 무엇인가? |

## 제 3 장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규범 분석

## 제 1 절 규범 분석의 개요

소위 문화를 규범체계내의 대상과 목표로 설정한다는 것은 법적 목 적과 개인과 국가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을 요구받는 것이다. 즉 법률도 문화예술복지를 위한 기능을 법적 목표로서 설정하고 국민에 대한 국가 역할을 규정하게 된 것이다.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이념을 규 범으로 포섭하는 동시에 입법의 범위와 기능이 실천적 역할을 요구받 는 것이다.
규범분석은 실천적 차원의 평가를 위한 방법론의 하나이다. 규범분 석은 규범체계내의 구조적 관계와 법적 논리의 실질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다. 따라서 법체계성 평가의 목표는 법규범의 내부적인 구 조와 법적인 논증의 실제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 한다.18)

따라서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규범체계성의 분석은 다른 법률 내 지 동일 법률체계내의 구조적 관계를 살피고, 법의 목표와 범주의 실 질을 확인하는 것이다. 단지 규범은 정책의 적격성과 정당성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법이 자리해야하는 법체계내의 위치와 다른 법령들과의 관계에서 충돌과 모순이 없어야 한다. 즉 법률은 고립적•독립적 규정 이 아니라 상호간 유기적 결부로서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서의 검토와 평가가 법체계성 검토인 것이다.

한편 규범의 형식성을 기준으로 규정형식의 체계성과 논리성뿐 아 니라, 실질적인 내용의 적용 가능성까지 살필 필요가 있다. 즉 동일범주 내지 사실의 개념군에 따라 법의 내부적 상호관계로 자기 확인을 하는 것이 법적 합치성이라 할 수 있다.
18) 박영도, 「입법학 입문」, 한국법제연구원, 208, 6 면 참조.

예컨대 앞서 평가대상과 평가기준의 선정에서 살핀 바와 같이, '문 화예술복지의 증진'은 규범목적과 규정형식의 모두에 있어서 규범의 역할이자 대상이다. 그러나 ‘장’내의 구체적 규정들은 문화예술 복지 의 개념은 물론 복지의 범위와 대상까지 명확하지만은 않다.

문화예술복지에 관한 규정들의 '적용 기준'을 통해서 통일적인 개념 을 유추하기에도 충분하지 않다. 즉 문화예술복지 증진의 규범체계는 법 적용의 기준으로 '문화복지 급여'를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규범의 ‘인적 적용 대상’을 기준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이 같은 기준의 분석 과 평가가 법합치성을 기준으로 한 규범분석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규범목적 판단에서 간과할 수 없는 입법목적과 배경은 이법 이 문화예술에 관한 가장 오래된 법사를 지니고, 문화예술의 정책과 관련 복지의 기본적인 규범으로서 역할 해 왔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 법에 규정된 조치와 이에 관한 시행체계 또한 상대적인 안정성을 갖 추고 있다. 이 점에서 이법에 관한 분석과 이를 근거한 정비로써 그 효과성을 재고하려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복지의 체계적 규범화라는 목표에 비추어, 다른 법률 들과의 체계성과 규범의 명확성을 평가기준으로 체계성 분석을 실시 할 필요성이 있다. 적어도 규범의 효과성 검토에 앞서 효과를 발휘하 여야 할 주체인 법률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도 규범분석이 선재되어 야 할 것이다.

## 제 2 절 문화예술진흥법의 규범체계성 분석

## 1. 문화예술진흥법의 법체계성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관련 법률 가운데 비교적 이른 1972년 제 정되었다. 이로써 문화예술이 규범의 대상으로 정해지고 국가적 차원 의 정책수립과 시행의 대상이 된 것이다. 또한 상대적 이른 제정역사

로 인하여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에 관한 규범체계내의 기본법적 성격까지 지니고 역할하게 되었다. 입법목적은 헌법적 차원의 이념을 수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문화예술정책의 반영으로 개정이 빈번히 이 루어졌다. 이로 인해 법률 내부의 규정간 체계는 물론 법의 성격 내 지 역할까지도 명확성이 저하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법률 제정이후 계속해서 기존의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대처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지 논란이 되었 다. 이는 본고의 입법평가대상의 문제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문화예 술에 관한 여러 법령들에 관련 규정들이 산재해 있었기 때문이다. 따 라서 예술인복지법의 제정과 문화예술기본법의 제정이 제안된 상황에 서도 법체계 간에 중복이나 혼란의 가능성이 전혀 배제되는 것은 아 니다. 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기본권에 대한 법적 인식이 제고되고 향후 국민에 관한 문화적 복지에 관한 계획과 법적 목표에 관한 지침 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법이 동일범주의 법률들에 대한 실질적인 최상위 법원칙 역할보다는 입법대상에 대한 형식적 법명에 해당하거나, 결국 구체적 사안의 적용에 있어서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법적 위계를 간과할 수 없다. 결국 각 법률의 입법 목적과 적용 범위의 체계가 구체적 법 적 효과의 체계로 직결되고 있는지는 실증적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문화예술진흥법이 자리해야 할 법체계 내에서의 위치를 설정하고 다른 법령 내지 법체계와의 관계에서 저촉이나 모순이 없는지를 분석 하는 것이 법체계성분석의 기본이라 하겠다. 즉 문화예술진흥법과 규 정들은 법적 질서 내에서 편입될 수 있어야 하며, 문화예술진흥법과 다른 법률들 간에 그리고 법 자체와 규정들도 상호 저촉과 모순이 없 어야 한다.

특히, 문화예술의 복지는 규범대상 영역이 문화예술이자 복지로 중 첩되는 바, 이는 법체계적인 정립이 필요하다. 굳이 법체계가 크로스오

버 되는 현상을 두고 그 체계정립이 필요한지를 의문시 한다면，법률 의 시행주체 적어도 분쟁발생시 소관 법원의 관할 판단에 있어서라도 법체계 확인의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평가 대상인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예술복지 증진의 규정들의 법원 은 국내 실정법상 우선 헌법에서 찾을 수 있어야겠다．헌법은 총강에 서 국가로 하여금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 （헌법 제9조）을 명시하고 있다．즉 문화국가 구성원리로서 국가의 역할 내지 국가적 의무의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다만 국가적 의무 의 범위가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에 제한되는지 문화에 있어서 전통과 민족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등의 해석은 가능할 것이다．또한 국민 에 대한 인간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의 기본권（헌법 제 10 조） 그리고 국민이 문화적 생활의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제11조 1 항），국민의 예술의 자유（제22조 1 항），인간다운 생활의 권리와 생활능력 이 없는 국민의 국가로부터의 보호（제34조）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본다． 여기에서 국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권리와 이를 위한 국가적 의무에 관한 법적 원리의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동시에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목표의 상위－목표이자 상위의 법원칙으로 볼 수 있다．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법적 역할을 해온 것은 법사적（法史的）으로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법원으로서 헌법상 문화권에 대한 법합치성을 충분히 갖추 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즉 헌법상의 문화에 대 한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적 의무에 관한 목표의 일부를 문화예술진흥 법이 법체계상 목표로서 포섭해야 한다는 견해나 일부 문화예술복지 증진의 장으로 하위목표로서 일부 포섭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았으나， 과연 헌법상의 문화관련 목표 내지 법원칙이 하위 법체계 내에서 어떻 게 포섭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데 한계를 드러낸다고 하겠다．
<표 III-1> 문화예술진흥법의 다른 법제 • 법원칙 간의 법체계성

| 법 원 | 헌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사법 <br> 체 계 | 공 법 |  | 사회(보장)법 |  |  |  | 사 법 |
| 법률관계 주된주체 | 국가/지자체 |  | 국 가 |  |  |  | 사 인 |
| 관할법원 | 행정법원 |  | 행정법원 |  |  |  | 민사법원 |
| 법체계 | 문화예술진흥법 |  | 사회보장기본법 |  |  |  | 민사법 |
|  | 기본법 | 진흥법 | 사회보험법 | 사회원호법 |  | 사회보상법 | 민 법 |
| 법원칙 | 적용대상. 산업 등 | 적용대상: <br> 장르,시설, <br> 산업 등 | 보험의 <br> 원 리 | 특 별 <br> 사회부조 | 일 반 <br> 사회부조 | 報償원리\& 원호원리 | 계 약 자유등 |
| 법 률 | 문화산 <br> 업진흥 <br> 기본법 | 문화예술 진흥법 | 건강보험법 <br> 국민연금법 <br> ... | 국 민 <br> 기초생활 <br> 보장법 | 아 동 <br> 복지법 | 국가 <br> 유공자 둥 <br> 예우 및 <br> 지원에 <br> 관한 법률 | 민 법 |
| 시 행 령 시행규칙 | 법시행령 <br> 시행규칙 | 법시행령 시행규칙 | 각 보험법 <br> 시행령 <br> 시행규칙 | 시행령 <br> 시행규칙 | 시행령 <br> 시행규칙 | 시행령 시행규칙 |  |
| 자치법규 | 조 례 | 조 례 | 조 례 | 조 례 | 조 례 | 조 례 |  |

예컨대 동일 주관부처내의 문화예술범주의 법률들도 적용범위•대 상의 기준이 문화예술의 장르를 요건으로 하면서도 이를 세분화하는 법령들은 산업•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진흥법, 지원법, 기본법 등의 법명들도 법률들 간의 체계 내지 위계라기보다는 대상이나 목적 에 관한 분류에 지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문예진흥법 내에 목적 규정으로 정립방안 또는 상위 기본법을 제정 방안 등도 논의되어 왔다．이들에 관한 자세한 분 석은 본고 대안의 분석 장에서 계속한다．
＜표 III－2＞문화예술 관련 법률의 적용범위와 소관부처

| 법 명 | 제 정 | 적용 대상／범위 | 관리－운영주체 |
| :---: | :---: | :---: | :---: |
| 공연법 | $\begin{aligned} & 1961 . \\ & 12.30 \end{aligned}$ | －공연 ：음악 • 무용•연극•연예• 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 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상 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 연은 제외 | 문화체육관광부 <br> 특별자치도지사 <br> －시장－군수 • <br> 구청장 <br> 영상물등급위원회 |
| 문화예술 진흥법 | $\begin{gathered} 1972 . \\ 8.14 \end{gathered}$ | －문화예술 ：문학，미술（응용미술 포함），음악，무용，연극，영화，연 예（演藝），국악，사진，건축，어문 （語文）및 출판 <br> －문화산업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 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 판매하는 업（業） <br> －문화시설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 적으로 이용되는 공연시，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도서시 설，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시설 | 문화체육관광부 <br> 한국문화 <br> 예술위원회 <br> 지방문화 <br> 예술위원회 문화예술회관 연합회 |
| 박물관 및 <br> 미술관 <br> 진흥법 | $\begin{aligned} & 1991 . \\ & 11.30 \end{aligned}$ | －박물관 ：문화•예술•학문의 발 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 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 （考古）• 인류•민속 • 예술 • 동 물－식물－광물－과학 • 기술－산 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 | 문화체육관광부 <br> 시－도지사 <br> 문화재위원회 <br> 미술관협회 <br> 국립박물관 <br> 문화재단 |


| 법 명 | 제 정 | 적용 대상/범위 | 관리 - 운영주체 |
| :---: | :---: | :---: | :---: |
|  |  | 리 • 보존 • 조사 • 연구 • 전시 • 교 육하는 시설 <br> - 미술관 :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 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 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 히 서화•조각•공예•건축 • 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 리 • 보존 • 조사 • 연구 • 전시 • 교 육하는 시설 |  |
| 문화산업진흥 <br> 기본법 | $\begin{gathered} 1999 . \\ 2.8 \end{gathered}$ | - 영화•비디오물, 음악•게임, 출판• 인쇄•정기간행물, 방송영상물, 문 화재,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 에 듀테인 먼트 • 모 바일 문 화 콘 텐 츠 - 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 광고 • 공연 • 미술품 • 공 예품 과 관련된 산업 <br> -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 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 의 수집•가공•개발•제작 - 생산 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 된 서비스 산업 <br> -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 는 산업으로 의상, 조형물, 장식 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 련된 산업 <br> -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 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 과 관련된 산업 | 문화체육관광부 <br> 금융위원회 <br> 방송통신위원회 |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2002. <br> 8.26 <br> (출판및 인 쇄 진흥법) | - 출판문화산업 : 간행물의 출판•유 통산업 및 그에 밀접히 연관된 산업 <br> - 간행물 :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 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 | 문화체육관광부 <br> 한국출판문화 <br> 산업진흥원 |


| 법 명 | 제 정 | 적용 대상／범위 | 관리－운영주체 |
| :---: | :---: | :---: | :---: |
|  |  | 일，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 <br> －출판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복제하여 간행 물（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발행 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만 해당 한다）을 발행하는 행위 |  |
| 문화예술교육 <br> 지원법 | $\begin{aligned} & 2005 . \\ & 12.29 \end{aligned}$ | －학교문화예술교육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 제 2 조의 규정에 따 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 2 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 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 화예술교육 <br> －사회문화예술교육 ：제 2 조제 3 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 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제 24 조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 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 문화체육관광부 <br> 국가인적자원 <br> 위원회 운영위원회 <br> 내，문화예술교육 <br> 전문위원회 |
| $\begin{aligned} & \text { 독서문화 } \\ & \text { 진흥법 } \end{aligned}$ | $\begin{aligned} & 2006 \\ & 12.28 \end{aligned}$ | 독서 문화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 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 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 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 독서 자료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 된 도서•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 료，시청각 자료，전자 자료 및 장 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 <br> 독서장애인 ：시각 장애，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 용할 수 없는 자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


| 법 명 | 제 정 | 적용 대상／범위 | 관리－운영주체 |
| :---: | :---: | :---: | :---: |
| 인쇄문화산업 <br> 진흥법 | $\begin{gathered} 2007 . \\ 7.19 . \end{gathered}$ | －인쇄문화산업 ：인쇄산업 및 이와 밀접히 연관된 산업 <br> －인쇄 ：인쇄기 또는 컴퓨터 등 전 자장치를 이용하여 문자•사진• 그림 등의 정보를 종이•천•합 성수지 또는 전자적 매체（유형물 인 매체에 한한다）등에 실어 복 제－생산하는 것 <br> －인쇄문화산업단지 ：인쇄사，대학， 연구소，단체，개인 등이 공동으 로 인쇄문화의 향상•발전을 위 하여 인쇄물의 공동제작，정보교 환，기술훈련 및 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건물•시 설의 집합체로서 「문화산업진흥 기 본법」제24조에 따라 조성된 문화 산업단지 | 문화체육관광부 |
| $\begin{aligned} & \text { 예술인 } \\ & \text { 복지법 } \end{aligned}$ | $\begin{gathered} 2011 . \\ 11.17 \\ (2012 . \\ 11.18 \\ \text { 시행 }) \end{gathered}$ | －예술인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사회적，경 제적，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 는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 진흥법，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실연（實演），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 할 수 있는 자 | 문화체육관광부 <br> 지자체 <br> 한국예술인 <br> 복지재단 |

## 2．문화복지 관련 규정들의 법합치성

법합치성이란 동일한 범주의 대상을 같은 범주의 규정으로 동일한 원칙에 따라 모순없이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성을 의미한다．평 가대상 법률의 내부적 체계성 판단은 상위법의 원칙에 따르는지，동

일 범주 대상에 대한 법률의 원칙과 상호 모순없이 부합하는지，법 내부의 규정간의 모순이 없는지 등을 판단한다．즉 법합치성이란 동 등한 사실과 법적 개념군이 상호 합리적 연관성을 갖고 배열되어 있 는지에 대한 평가이다．

왜냐하면 규정 내용이 이해되기 위해서는 일정 연관성과 체계성 내 에서 대상인 사실과 규정의 내용이 배열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19）

따라서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법합치성 평가는 각 법령 내용은 적 용이 가능한 체계 내에서 논리적 구성을 갖추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다．이는 규정 대상에 관한 법률이 다수인 경우，평가대상 법률의 개 정이 빈번한 경우에는 법합치성은 평가가 더욱 필요한 경우라 하겠 다．즉 법합치성은 법률과 규정들 간의 관계를 명확히 체계화한다．즉 법의 적용범위，적용기준，서열 등의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분명히 판단하는 법률의 독립적인 규범성을 판단한다．${ }^{20)}$

또한 이 법의 문화예술복지에 관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규범체계내 에서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것이다．즉 복지의 사실인 대상과 규율하고 있는 각 규정의 내용이 합리적 연관성을 갖춘 동일군으로 논리적 배 열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복지의 증진의 별도의 장으로 규정함으로써， 법형식적으로 독립적인 동시에 동일한 장의 규정들은 합리적 연관성 을 요구받는다．

즉 문화예술복지의 증진이라는 동일한 장（이하 ‘이 장＇）내의 규정들 은 적용 대상 또는 적용 기준의 범주에 있어서의 연관성을 요구 받는 다．적어도 규정의 형식적 배열에 있어서의 동일군일 것이 필요하다．

19）Gerda Thieler－Mevissen，Automationsgerechtheit，in ：Bundesakademie für öffentliche Verwaltung（Hrsg．），Praxis der Gesetzgebung，aaO．，S．115f．；박영도，「입법평가 이론과 실제」，한국법제연구원，2007，66면 각주 134 재인용．
20）P．Noll，Gesetzgebungslehre，aaO．，S．206f．；Hans Schneider，Gesetzgebung， 2 Aufl．， Heidelberg 1999，S．58ff．；박영도，「입법평가 이론과 실제」，한국법제연구원，2007， 66 면 각주 135 재인용．

이장의 법률은 법 형식적으로는 문화예술복지의 조치 내지 급여를 기준으로 조항을 배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의 형식적 배 열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될 수 있다.

그러나 규정들의 적용 대상과 적용 기준이라는 측면에서의 합리적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다.

규정들의 '인적 적용 대상 내지 기준'은 국민 전부에서부터 학생, 직장인, 장애인, 문화소외계층을 아우르고 있는가 하면, 문화예술공헌 자, 상품권 발행자와 문화산업을 대상하고 있다.

또한 규정들이 마치 문화예술복지의 급여를 배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규정의 내용은 조치들의 '이행주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예 컨대 문화강좌라는 복지적 급여의 지급 대상이나 수급 기준으로 규정 하기보다는 강좌를 설치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장의 목표는 문화예술복지의 증진으로 명시하고 관련 조치를 형식 적으로 배열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즉 '문화예술복지'의 조치를 형식적 으로 배열함으로써 이장의 법합치성을 유지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규정들의 형식적 배열만으로 내용적 연관성 즉 실질적인 법 합치성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법의 최상위 목표인 문화예술의 '진흥'법체계에서 진흥의 대상 내지 객체를 배열하고 그 시행주체 내지 절차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규정방식을 유지하다가, 세부목표가 문화예술‘복지'로 선정된 장에서는 이에 복지적 조치를 규정하는데서 형식적 배열로 제한된 것으로 이해 된다. 입법 실무가로서도 형식적 규정배열을 넘어서 세부목표에 내용 적 합치성을 완성하기에는 목표간의 차이로 인한 규범체계형식의 간 극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상위-하위 목표들 간의 정치한 조화를 통해서 세부목표의 타당성을 법률 자체에서 인정받을 근거를 주고, 세부규정들이 세부목

표의 실현이라는 법적 합치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은 헌법적 법원과 상위목표와의 체계성에 부합하는＇문 화예술복지의 증진＇의 장을 규정하고 있다．다만 이 범주의 규정과 조치 들이 문화예술복지의 범주에 포섭되는가 라는 법합치성 평가는 별건이 다．즉 상품권 인증，장려금 지급，문화산업 육성 지원 등 구체적 규정조 치들은 문화예술복지의 범주에 포섭되기 어렵다고 평가된 바 있다．그러 나 한편 헌법적 이념체계에 부합하는 문화국가의 목표이념에 근거한 구 체적 조치를 규정한 법체계는 과연 어디로 볼 것인가？라는 궁극의 문제 에 대해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상 조치들의 의의를 찾지 않을 수 없다．21）
＜표 III－3＞문예법상 문화예술복지증진 조치의 대상과 범위

| 수급대상 | 조 치 | 적용범위 | 수권방향 |
| :---: | :---: | :---: | :---: |
| 국 민 | 1．문화의 날，달 설정 | －문화의 날은 매년 10 월 셋째주 토요일 <br> －문화의 달은 매년 10 월 <br> －공연•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br> －강연회나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 $\begin{aligned} & \text { 국 가 } \\ & \text { 지자체 } \end{aligned}$ |
| 국 민 | 2．문화강좌 설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br>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 <br> －「지방문화원진흥법」상 설립이 인가된 지방문화원 <br>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 <br>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begin{aligned} & \text { 국 가 } \\ & \text { 지자체 } \end{aligned}$ |

21）동지（同志），정갑영，문화복지법제화 방안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7，21면 참조．

제 2 절 문화예술진흥법의 규범체계성 분석

| 수급대상 | 조 치 | 적용범위 | 수권 방향 |
| :---: | :---: | :---: | :---: |
| 학 생／ 직장인 | 3．학교 등의 문화 예술 활동 단체 권장，활동비 일부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br>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이 100 명 이상인 직장 | $\begin{aligned} & \text { 국 가 } \\ & \text { 지자체 } \end{aligned}$ |
| 상품권 <br> 발행자 | 4．도서－문화 전용상품권 인증제도 | －고시기준에 따른 상품권 발행자 | 국 가 |
| 문화산업 | 5．문화산업의 육성•지원 | －국가와 지자체의 문화산업 육성시책과 융자알선， 기술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조치 | $\begin{aligned} & \text { 국 가 } \\ & \text { 지자체 } \end{aligned}$ |
| 문화예술 공헌자 | 6．장려금 지급 |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시상 <br> －대통령령에 정한 국제경연대회 입상 | 국 가 |
| 장애인 | 7．장애인 문화 예술활동의 지원 | －국가와 지자체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과 교육에 관한 시책 <br>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위한 지원 | $\begin{aligned} & \text { 국 가 } \\ & \text { 지자체 } \end{aligned}$ |
| 문화소외 <br> 계 층 | 8．문화소외계층의 <br> 문화예술복지 <br> 증진시책강구 |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 회의 확대와 문화예술 활동의 장 려를 위한 시책 강구 | $\begin{aligned} & \text { 국 가 } \\ & \text { 지자체 } \end{aligned}$ |
| 문화소외 <br> 계 층 | 9．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 문화소외계층에 문화이용권 지급 ＜법 시행령＞＂문화소외계층＂이란 <br>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 2호에 따른 수급자 <br>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 조제 11 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 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begin{aligned} & \text { 국 가 } \\ & \text { 지자체 } \end{aligned}$ |


| 수급대상 | 조 치 | 적용범위 | 수권방향 |
| :---: | :---: | :---: | :---: |
|  |  |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 조제 1 항제 7 호에 따른 자활급 여 수급자 <br> 나．「장애인복지법」제 49 조제 1 항 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br> 다．「장애인연금법」제 5 조에 따 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br> 라．「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 표 2 제 3 호라목의 경우에 해 당하는 사람 <br> 3．「한부모가족지원법」제 5 조에 따 른 보호대상자 <br> 4．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지리 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문화예 술을 향유하기 위한 지원이 필 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한편 문화예술의 복지에 관한 조치들 또한 다수의 법률에서 규정되 고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다．다양한 법률에서 규정된 조치들은 그 법 적 체계와 그로 인한 시행주체 또한 달리하고 있다．
과연 문화예술의 분야에서 복지적 조치를 규정한다고 하면，이러한 다양한 조치들 간의 통일적 내지 적어도 합리적 범주 내에서 법적 합 치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나아가 복지적 차원에서 기존 사회보장법체계의 규정 및 시행체계와 구별되는 문화예술 분야의 조치와 규범체계의 수립이 필요한가？이에 대한 실증적이고 실질적인 판단과 대안은 우선 문화복지 관련 조치 및 규정들에 대하여 법합치성을 판단기준으로 입법평가가 선행될 때 가능할 것이다．

## <표 III-4> 문화복지 관련 조치 및 규정

| 조 치 | 문화복지 관련 규정 내용 | 법 명 | 체 계 | 소관부처 |
| :---: | :---: | :---: | :---: | :---: |
| - 문화의 날 | - ‘문화’ ‘문화적 권리’의 정 의 및 ‘국가와 지자체의 책 무'를 규정 <br> - 문화의 날 설정 | $\begin{gathered} \text { 문 화 } \\ \text { 기본법(안) } \end{gathered}$ | 기본법 | 문화예술 <br> 체육부 |
| - 문화의 날/달의 설정 <br> - 문화강좌 <br> - 학교 등 문화 예술 진흥 <br> - 도서 - 문화 전용 상품권 <br>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br> - 문화소외 계층에 대한 시책과 문화이용권 지급 - 문예진흥기금 사용 | 제 3 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제 10 조(문화의 날 설정 등) 제 12 조 (문화강좌 설치) <br> 제 13 조(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제 15 조(도서•문화 전용 상품 권 인증제도) <br> 제 15 조의 2 (장애인 문화예술 활 동의 지원) <br> 제 15 조의 3 (문화소외계층의 문 <br> 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br> 제 15 조의 4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br> 제 18 조(문화 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문화예술 진흥법 | 법 률 | 문화예술 체육부 |
| - 학교문화예술교 육 - 활동의 지원 - 사회문화예술교 육의 지원 <br> - 문화예술교육사 배치•교육기회 제공 <br> -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 | 제 15 조 (학교문화 예술교육의 지원) <br> 제17조(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br> 행사의 지원) <br> 제 21 조(사회문화 예술교육의 <br> 지원) <br> 제22조(민간 교육시설 등의 지원) 제 23 조(지역 사회문화예술 활 <br> 동 및 행사의 지원) <br> 제24조(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 <br> 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 25 조 (사회문화 예술교육을 <br> 위한 학교시설의 이용) | 문화예술 <br> 교 육 <br> 지원법 | 법 률 | 문화체육 <br> 관광부 |

제 3 장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규범 분석

| 조 치 | 문화복지 관련 규정 내용 | 법 명 | 체 계 | 소관부처 |
| :---: | :--- | :--- | :--- | :--- |
|  | 제26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br> 제 5 장 문화예술교육사 <br> 제27조(국가 등의 의무) <br> 제30조(문화예술교육사의 교 <br> 육기회제공 등) <br> 제31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br> 제32조(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 <br> 문화예술교육 지원) |  |  |  |


| 조 치 | 문화복지 관련 규정 내용 | 법 명 | 체 계 | 소관부처 |
| :---: | :---: | :---: | :---: | :---: |
|  | 제 10 조의 2 (장애인정책종합계획) <br> 2. 장애인의 교육문화에 관 한 사항 <br> 제 28 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 을 늘리기 위하여 관련 시 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 을 정비하고 문화생활과 체 육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  |  |  |
| - 문화정보화기본 계획 <br> - 문화정보화추진 | 제 6 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의 수립) (1) 정부는 국가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 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 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하여야 한다. <br> (2) 기본계획은 미래창조과 학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 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3. 3.23> <br> (3)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5.22> <br> 1. 국가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br> 2.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 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등 공공 분야의 정보화 <br> 제 15 조(공공정보화의 추진) (1) 국가기관등은 행정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 | 국 가 <br> 정보화 <br> 기본법 | 법 률 | 미래창조 <br> 과학부 |

제 3 장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규범 분석

| 조 치 | 문화복지 관련 규정 내용 | 법 명 | 체 계 | 소관부처 |
| :---: | :---: | :---: | :---: | :---: |
|  | 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등 소관 업 무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 하여야 한다. |  |  |  |
| - 근로복지진흥 기금 사용 <br> -선택적 복지제도 설계 포함 노력 | 제82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설 계•운영 등) (1)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설계하 는 경우 ..건전한 여가•문 화 - 체육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개인별 추가선택항 목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br>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 한다. <br> 9. 근로자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 • 체육활동 지원 | 근로복지 <br> 기본법 | 법 률 <br> 기본법 | 고 용 노동부 |
| - 사회적 기업육성 문화부문 포함 |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1) 국 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 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 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 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법 인 - 단체가 일자리를 창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정책 기본법 |  | $\begin{aligned} & \text { 고 용 } \\ & \text { 노동부 } \end{aligned}$ |
| - 농어촌주민 <br> 문화생활의 증진 정책과 시행의무 | 제54조(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 어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 의 증진, 영세 농어업인 등 | 농어업 • <br> 농어촌및 <br> 식품산업 <br> 기본법 | $\begin{aligned} & \text { 법 률 } \\ & \text { 기본법 } \end{aligned}$ | 농림축산 <br> 식품부 <br> 해 양 <br> 수산부 |


| 조 치 | 문화복지 관련 규정 내용 | 법 명 | 체 계 | 소관부처 |
| :---: | :--- | :--- | :--- | :--- |
|  | 에 대한 소득 안정화，다문 <br> 화（多文化）가족의 정착，고 <br> 령 농어업인의 영농•영어 <br> 활동 및 복지증진 등에 필 <br> 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 <br> 하여야 한다． |  |  |  |

제 3 장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규범 분석

| 조 치 | 문화복지 관련 규정 내용 | 법 명 | 체 계 | 소관부처 |
| :---: | :---: | :---: | :---: | :---: |
|  |  |  |  | 부•국토 교 통 부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중앙 행정기관 |
| - 주민문화시설설 치계획의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포함 | 제 3 조 (도시 • 주거환경정 비 <br> 기본계획의 수립) (1) 특별 <br> 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 <br> 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 <br> 함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 <br> 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br> 한다)을 10 년 단위로 수립 <br> 하여야 한다. 다만, 대도시 <br> 가 아닌 경우 도지사가 기 <br> 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br> 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 <br>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 <br> 할 수 있다. <개정 2006. <br> 5.24, 2009.2.6, 2012.2.1> <br> 7.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 <br> 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법 률 | $\begin{aligned} & \text { 국 토 } \\ & \text { 교통부 } \end{aligned}$ |
| - 문화시설의 <br> 재정비촉진계획 포함 | 제 9 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 립) (1) 시장•군수•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 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 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 정비촉진지구가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지역에 걸 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 | 도 시 재정비 촉진을 위 한 특별법 |  | $\begin{aligned} & \text { 국 토 } \\ & \text { 교통부 } \end{aligned}$ |


| 조 치 | 문화복지 관련 규정 내용 | 법 명 | 체 계 | 소관부처 |
| :---: | :---: | :---: | :---: | :---: |
|  | 장 • 군수 • 구청장이 공동으 로 이를 수립한다． <br> 4．교육시설，문화시설，복지 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  |  |
| －융•복합 <br> 공간정보체계 <br> 목적에 문화포함 | 제 9 조（융 • 복합 공간정보산 업 지원）（1）정부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안 전 • 환경 • 복지 • 교육－문 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융•복합 공간정보체계를 구 축할 수 있다． <br> （2）국토교통부장관은 융• 복합 공간정보산업의 육성 을 위하여 교통，물류，실 내공간 측위체계，유비쿼터 스 도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공간정보 산 업 진흥 법 |  | 국 토 교통부 |
| －문화복지의 실현 <br> －시민의 자율적 <br> 창의적 문화역량 <br> 발휘，시민의 <br> 문화적인 삶 <br> 향유 <br> －문화복지의 증진 | 제 1 조（목적）이 조례는 서울 을 인간중심적인 문화도시 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 한 기본적인 사항과 「문화 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 행령，「지방문화원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 위할 수 있는 문화복지를 실현하고 국제경쟁력을 가 진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br> 제 2 조（기본이념）이 조례는 시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 | 서 울 <br> 특별시 <br> 문화도시 <br> 기본조례 | 조 례 | 서 울 특별시 |

제 3 장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규범 분석

| 조 치 | 문화복지 관련 규정 내용 | 법 명 | 체 계 | 소관부처 |
| :---: | :---: | :---: | :---: | :---: |
|  | 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자율적으로 문화적 인 삶을 향유할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 3 조(정의) <br> 1. "문화도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실현하여 시민들이 일상의 삶 속에 서 문화적 정체감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br> 가.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예술의 구현 <br> 나. 인간중심의 쾌적한 도 시공간의 조성 <br> 다. 기본적인 문화향유가 보장되는 문화복지의 실현 <br> 라. 지식과 창의를 바탕 으로 하는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진흥 <br> 마. 더불어 함께 사는 시 민문화의 정착 <br> 제 8 조(문화복지의 증진) 시장 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없이 문화 를 향유하고 문화활동의 주 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 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시 책을 강구한다. |  |  |  |

## 제 3 절 문화예술진흥법의 명확성 분석

## 1. 입법목적의 명확성

입법의 목적은 법의 최고 상위 목표이자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려는 궁극의 내용이다. 입법 목적은 법의 제정 당시에는 그 명확성이 대체 로 확인되나, 법 외연적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개정이 잦을수 록 최상위 법적 목표를 확인 받을 필요성이 크다 하겠다.
문화예술진흥법의 경우 문화예술 정책분야의 법률로서 법사학적으로 기본법 역할을 해왔으나 제정 이후 개정이 22 차례나 계속됨으로써, 법 제정당시의 입법목적이 개정 규정들과의 합치성 문제로 지속적 확인 이 필요하게 된 드문 경우라 하겠다.

문화예술진흥법은 제정 당시 문화정책 내지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법 적 지위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법적 의의를 크게 갖고 있음을 인정 해야 한다. 또한 기본법적 성격에 부합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분야에서 요구된 복지적 조치들 또한 선재적으로 세부-목표에 수용한 점도 인 정할 부분이다.

그러나 점차 문화예술의 복지적 요구에 대응한 법적 기능과 역할 특 히 법적 목표 내지 이념에 있어서의 복지개념의 미비는 기본법으로서 의 역할에 부족함을 지적받아 온 것도 사실이다.22)

이는 법명에서 보듯 ‘진흥’에 관한 법체계로 시작한 최고 상위 목표 가 '복지’의 세부목표로 수용하고 관련 조치를 포섭하면서 제정목적이 확대 내지 변천된데 따른 것이다. 즉 상위 목표에서 세부 목표들이 도 출되는 방향보다는 오히려 세부 목표들이 상위 목포에 포섭되지 않는
22) 문화예술진흥법의 법의 목적과 정의 개념의 미비를 지적한 견해들로는 정갑영, 문 화복지법제화 방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서순복, "문화예술진흥법의 내 용분석과 환경변화에 따른 입법방향", 문화정책논총, 74-75면 참조.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에 대응한 방안으로 문화와 복지의 포괄적 선 언이 가능한 기본법의 제정이 논의된 배경이기도 하다. 이에 관하여 서는 본고 대안의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그렇다면 하위-세부 목표들은 어떠한 법체계 내지 규정들로 명확성 을 확보할 수 있는가. 구체적 조치들은 어떠한 범주의 하위 목표에서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오늘날 법적 목표는 단순히 규범화 그 자 체로 절대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법적 목표는 구 체적 규범의 기능과 역할의 범주를 정하고, 수범자들의 실질적 합의와 인식을 통해서 비로소 상대적 합리성과 법적 타당성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최상위 목표와의 부합 여부만을 요건으로 문화예술진흥법상 규정들의 범주가 수동적으로 정해질 것만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문화예술진흥법상 입법목적의 명확성은 목표규정과 정의규정이 제• 개정되는 방안, 또는 목표의 제한적 요소가 된 진흥법 체계 내에서의 법적 변천도 재고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분석결과에 대응한 대 안에 관하여서는 보고 대안분석의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 2. 법상 개념의 명확성

(1) 적용대상 개념의 명확성

문화예술진흥법은 법사학적으로 문화예술분야의 오랜 규정인 만큼 법적 개념으로 포섭해온 대상이 매우 포괄적이다.
정의 규정의 ‘문화예술’, ‘문화산업’(법 제 2 조) 등의 개념은 물론 ‘문 화복지'(제 3 장)와 '문화적 권리'(법 제15조의 2 제 1 항) 개념까지 그 명 확성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법 제 2 조의 정의규정 중, 문화와 예술 내지 문화예술을 '개념 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법형식적으로 포지티브방식의 열

거적 규정방식을 취하고 있다. 심지어 입법 기술적으로 흔하지 않게 정의 개념에 괄호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문화와 예술에 대한 고찰을 반영한 실질적 개념의 정의라기보 다는, 이법의 적용대상으로서의 형식적 정의개념을 사용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로써 법적용의 형식적 범위와 문화와 예술의 실질적 개 념 간의 모순은 이미 내재된 것이다.23) 다만 법 기술적으로라도 법적 용범위 내지 대상의 정의는 명확성을 확보해야만 한다.24) 따라서 이 법은 그 적용대상이자 정의규정부터 개정 내지 변천이 계속될 것이 며, 이로 인한 규범 안정성은 문제의 소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진흥’의 법제로서의 대상의 전부를 법률단계에서 정확히 포 섭•규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적어도 하위 법령에서 적용대상을 판단 하는 기준•요건을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즉 진흥의 대상으로서의 문 화예술의 범위를 정하는 구체적인 법적 기준 내지 합리적 요건이 필요 하다. 이러한 요건규정은 적어도 법률 개정으로 대상 정의 개념을 추 가 내지 변경하더라도 그 법적 타당성이나마 명확히 하는 것이다.

문화예술진흥법상 법적 개념 내지 정의의 명확성이 계속적으로 지 적된 데는 단순히 법률용어의 부재로만 원인을 평가할 수 없다. 이는 법적 역할과 기능의 확대•변화 그리고 법적 대상의 변화•확대를 원 인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욱 인과적 추론에 가깝다.
23) 2019.9.5. 최근까지도 의원발의안(최민희의원 대표발의)은 제 2 조 '문화예술'의 정의 규정에 국내공연시장 매출액 $60 \%$ 에 이르고 공연시장 평균성장률의 2 배가 넘는 성 장세의 ‘뮤지컬(musical)'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계속 포함시킬 문화예술 장르가 제안되고 있으며, 규범체계적 명확성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이러 한 제안도 계속될 것이다.
24) 소극적인 입법기술방법으로는 '문화예술의 복지'는 각 조항에 규정된 조치의 목 적에서 도출할 수 있으며('국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법 제 10 조 제 1 항), '국민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법 제 12 조 제1항)), 헌법이나 문화기본법(안)과 같은 상위법의 '문화'와 '문화적 권리, 등의 개념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문 예진흥법의 조치•적용 대상으로서 ‘문화예술’과 ‘복지’를 선정하는 법적 기준 내 지 요건은 이 법의 체계 내에서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 （2）적용기준의 명확성

한편 문화복지 관련 조치들은 규정형식이 인적 적용 대상별로 적용 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이는 인적 대상을 다양하게 파악하고 그 대 상별 수요에 따른 급여를 다양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된다．
그러나 문화예술관련 급부의 대상과 산정기준 그리고 지급기준•방 식•절차에 관한 규정의 명확성에 있어서 분석여지가 있다．
예컨대 문화이용권의 지급대상으로 규정한 ‘문화소외계층＇의 경우에 도 상위 내지 당해 법률에서 명확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즉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 는 문화소외계층＇（법제 15 조의 3）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는 문화소외계 층의 정의규정이기 보다는 문화소외의 객관적 원인들 중의 일부를 예 시한 것이다．25）다만 하위 법령으로 지급대상의 범위로서 다른 법률 의 인적 적용대상 개념을 차용하고 있다．26）그러나 시행령이하의 규 정은 시행주체의 내부적 효력을 위한 규율체계로서 수급대상자에 대 한 대외적 효력을 위한 규범체계라 하기 어렵다．
‘이용권’이라는 구체적 조치는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 내지 적어도 이 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법적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즉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법적 요건인 소득조사 요건을 문화소외의 원 인으로 보고 이를 개념에 포함한 규정취지라면，문화소외의 개념에 소 득을 포함하여 정의하고，문화소외의 판단기준으로서 소득요건을 다

25）문화적 박탈과 소외의 원인은 외부조건으로 인한 객관적 요인뿐 아니라，문화예 술의 경험재적 특성으로 인한 욕과나 해득력 부족 등 주관적 요인을 간과할 수 없 다，자세한 것은 본고 제 2 장 제 2 절 평가대상의 문제（2）문화예술 향유의 상대적 인 식을 참조．
26）법 시행령 제 23 조의 2 ．．．문화소외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을 말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수급자．．．2．「국민기초생 활 보장법」제 2 조제 11 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 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4．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지원 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른 법률의 필요성조사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성과 명 확성에 부합할 것이다.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이용권 지급조치의 인적 적용대상인 '문화소 외계층'은 법률상 정의 내지 적어도 판단기준의 요건이 하위 법령에서 라도 판단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명확성을 높이는 것이다. 더욱이 산정 기준과 지급기준이 법률로는 규정되지 않은 채, 지급기준이 가구와 청 소년 기준이외에 선착순이 요건이 되고 있다. 이는 기금부족의 사실 상 제한은 차지하고, 필요성 조사를 산정•지급요건으로 하는 특별부 조적 조치의 체계정당성에 위배된다. 조치의 제한은 선착순 등의 사 실상의 이유가 아니라, 필요성 조사에 근거한 요건으로27) 사전에 규 정될 때 타당성과 특별부조적 조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문화예술 관련 조치와 지급이 인적 적용대상을 기준 으로 규정되는데 따른 과제가 계속될 것이다. 예컨대 수급대상의 다양 한 기준이 고령자라는 동일 인적 대상에 각 법률별로 연령기준이 다 르거나 다양한 경로와 급여가 이뤄짐으로써 이중급여가 이뤄질 수 있 다. 동시에 임부나28) 자영업자 등 특정 인적 대상자는 문화복지의 사 각지대에 놓일 가능성도 크다.

결국 법기술적으로 정의규정을 계속적 개정해야하는 열거형식을 채 택하였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법 적용대상으로의 인정 기준•요건은 법 적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개정의 타당성 내지 기준 조차 법적 명확성이 없게 된다. 비록 법적 대상이 법외연적 변화와 사 실적 요건들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상대적 합리와 인식들에 근거한 요 건들도, 법적 요건으로 명확히 규범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입법학 의 방법론이 입법평가를 통해서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27) 기금부족으로 인한 조치의 사실상 제한으로 비록 '신청주의’에 따르더라도, 결국 판단기준으로서 ‘필요성 조사'에 근거한 요건이 사전에 규정되어야 한다.
28) 의원발의에 따른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에서도 '임부'가 문화예술복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이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 제 4 장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사회적 분석 

## 제 1 절 사회적 분석의 개요 및 설계

## 1. 설문의 배경 및 목적

문화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 를 구체화하는 국가의 문화정책상의 문제들을 이제는 법적 측면에서 도 조치와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국민에 대한 문화복지에 관 한 정책과 관련 조치에 관한 규범화가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관련 법령은 문화예술분야의 오랜 법사를 지닌 문화예술진흥법에서부 터 그 외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근로복지기본법, 장애인복지법 등 문화 복지 관련 규정들이 산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복지정책 또한 문화복 지 개념을 정책상 제도로 시행하는 동시에 관련 법률의 제•개정까지 예정하고 있다. 이 경우 지역간 문화격차의 축소와 소외계층의 참여 기회의 확보가 정책과 법률의 목적에 포함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에 대해서는 주로 사회복지학적 접근이 이루어져왔 으며, 법학적 관점의 연구는 주로 이론적 연구(예컨대 문화국가 또는 문화복지의 개념 등) 또는 비교법적 연구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제는 정량적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한 실증적인 규범평가가 필요한 시 점이다.

본 조사는 문화복지증진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점 검하기 위해 평가대상을 조치•규정의 집행자 및 대상자인 수범자로 선 정하였다. 즉 규정의 시행자인 행정기관의 담당자(본고 분석 중 '행정 실무가'로 함)와 보편적 문화복지의 대상자인 일반국민의 두 부문에 걸쳐 각각 설문조사와 결과분석을 실시하였다. 행정기관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는 현재 문화예술 업무수행 실태와 문화예술진흥법 관련 인

식 및 태도, 그리고 문화예술복지 관련 법제화에 대한 의견 등을 질 문하여 그 결과를 분석, 향후 관련 법제도의 개정에 참조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의 도출을 목표로 하였다. 한편 일반국민 설문조사에서 는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계층간 인식차이,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제시 하는 문화복지에 대한 반응, 그리고 향후 문화예술복지관련 법제화에 대한 공감정도 등을 살펴봄으로써 모집단인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 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단 이러한 설문방법은 입법평가의 방법론 으로서의 사회적 분석인바, 평가대상인 규범과 법적 조치의 효과성 평 가를 위한 실증적 근거를 확보하는데서 기존의 문화분야 통계 내지 여 론조사들과는 구별된다.

## 2. 설문의 표본 및 방법

본 조사는 2013년 8월 4일부터 8월 29일까지 총 25 일(주말, 공휴일 제외)간 온라인 조사 방식과 전문면접원에 의한 전화 및 자기기입식 면 접조사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의 대상은 행정기관 실무담당자와 만 19 세 이상 일반국민으로, 총 유효응답 부수는 행정기관 담당자 183 명 과 일반국민 1,000 명으로 총 1,183 명이었다. 회수된 설문지는 검증과정 을 거쳐 코딩 및 전산입력 처리되었으며, 최종 완료된 문항들은 통계 프로그램 SPSS Window(ver. 12.0)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 <표 IV-1> 설문 표본 및 방법

| 구 분 | 내 용 |  |
| :---: | :---: | :---: |
| 설문대상 | 행정기관 담당자 | 만 19세 이상 일 반국민 |
| 설문 표본 수 | 183 명 | 1,000 명 |
| 신뢰수준 및 <br> 오차범위 | 해당없음 | $95 \%$ 신뢰수준에서 <br> 오차범위 $\pm 3.1 \% \mathrm{P}$ |


| 구 분 | 내 |  |
| :---: | :---: | :---: |
| 용 |  |  |
| 설문방법 | 면접원에 의한 대면 면접 <br> (Face to face Interview) <br> 및 자기기입식 면접조사 병행 | 구조화된 설문지 <br> (Structured Questionnaire)에 <br> 의한 온라인 조사 |
| 표본선정 <br> (추출방식) | Random Sampling | 지역/성/연령을 고려한 <br> 층화비례할당 |

## 3. 설문의 설계와 내용

(1) 행정기관 담당자
<표 IV-2> 행정기관 담당자에 대한 설문의 설계 및 항목

| 설문 설계 | 항 목 | 설문 내용 |
| :---: | :---: | :--- |
| 일반사항 |  |  | 응답자 특성 | (소속기관 |
| :--- |
| -성별 / 연령 / 지역 |


| 설문 설계 | 항 목 | 설문 내용 |
| :---: | :---: | :--- |
|  |  | - 문화예술 복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 내용 <br>  <br> 문화예술복지 <br> 법제화 <br> 관련의견 |
|  | - 문화기빈봔법 제정 시 문화예술진흥법의 역할 <br> - 문화복지 관련 규정 및 총괄기구 <br> - 문화복지 법률 신설 시 시행기구 및 인력 <br> -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자유의견 |  |

(2) 일반국민
<표 IV-3> 일반국민에 대한 설문의 설계 및 항목

| 설문 설계 | 항 목 | 설문 내용 |
| :---: | :---: | :---: |
| 일 반사항 | 인구통계적 <br> 특 성 | - 성별 <br> - 연령(만 나이) <br> - 현재 거주지 <br> - 거주지역 특성(광역시도 / 시 / 군•면• 읍 단위 거주) <br> - 학력수준 <br> - 월평균 가구소득 <br> - 직업 |
| 문화예술 향유 <br> 경험 및 <br> 장애요인 | 문화예술 <br> 향유 실태 | - 최근 1 년간 문화예술 분야별 경험 <br> - 문화예술 참여의 장애요인 <br> - 문화예술 관련 정보 획득경로 <br> - 관련 전문교육 수강경험 |
|  | 문화예술 접근에의 장애요인 | - 문화예술 향유에의 계층간 차이 <br> - 계층간 차이발생 원인 <br> - 국민 문화예술 향유증진을 위한 자유의견 |


| 설문 설계 | 항 목 | 설문 내용 |
| :---: | :---: | :---: |
| 문화복지법제화에 <br> 대한 국민 인식 | 문화예술진흥법 <br> 관련 인식 <br> 및 태도 | - 문화예술진흥법 인지여부 <br> - 법률명 및 목적에 대한 이해수준 <br> - 문화예술진흥법 관련 인식 <br> - 관련 규정 인지 여부 <br> - 주요 제도별 직접 참여경험 <br> - 문화복지 서비스 범위 및 내용 적절성 <br> - 문화복지 서비스 확대방향 <br> - 향후 중점 추진 사항 <br> - 국민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한 자유의견 |
|  | 문화예술복지 및 법제화 관련 의견 | - 필요한 문화복지 서비스 <br> -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 <br> - 문화복지 전문인력 자격요건 <br> - 문화복지 전문인력에 기대하는 서비스 내용 <br> - 문화복지 향상 위한 국가의 역할(자유의견) |

## 4. 응답자 특성

(1) 행정기관 담당자
<표 IV-4> 응답자 특성 - 행정기관 담당자(일반 구분)

| 구 분 |  |  |  |
| :---: | :---: | :---: | :---: |
| 사례수(명) | 응답비율(\%) |  |  |
| 구 천 | 제 | 183 | 100.0 |
|  | 징앙장바추부처 민체 싳 손속기관단체 | 54 | 29.5 |
|  | 문화예술진흥법 관련 공공기관 | 79 | 43.2 |

제 4 장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사회적 분석

|  | 분 | 사례수(명) | 응답비율(\%) |
| :---: | :---: | :---: | :---: |
| 지역별 | 서 울 | 142 | 77.6 |
|  | 인천/경기 | 16 | 8.7 |
|  | 대전/세종/충북/충남 | 7 | 3.8 |
|  | 광주/전북/전남 | 5 | 2.7 |
|  | 대구/경북 | 6 | 3.3 |
|  | 부산/울산/경남 | 5 | 2.7 |
|  | 강 원 | 2 | 1.1 |
| 업무담당 <br> 기간별 | 1년 이하 | 73 | 39.9 |
|  | 1년 3년 이하 | 31 | 16.9 |
|  | 3년 5년 이하 | 25 | 13.7 |
|  | 5년~10년 이하 | 23 | 12.6 |
|  | 10년 이상 | 31 | 16.9 |
| 성 별 | 남 자 | 91 | 49.7 |
|  | 여 자 | 92 | 50.3 |
| 연령별 | 19~29세 | 25 | 13.7 |
|  | 30~39세 | 82 | 44.8 |
|  | 40~49세 | 53 | 29.0 |
|  | 50세 이상 | 23 | 12.6 |

※ 중앙정부부처 및 소속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및 직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단체 : 시/도/구청 및 지자체 소속 산하단체의 문 화/복지업무 담당자(문화복지 전문인력 포함)
※ 문화예술진흥법 관련 공공기관 : ARKO,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예술 의 전당 등
<표 IV-5> 응답자 특성 - 행정기관 담당자(업무특성별 구분)

|  |  | 사례수(명) | 응답비율(\%) |
| :---: | :---: | :---: | :---: |
|  |  | 183 | 100.0 |
| $\begin{aligned} & \text { 소 속 } \\ & \text { 기관별 } \end{aligned}$ | A: 문화체육관광부 | 46 | 25.1 |
|  | A: 보건복지부 | 8 | 4.4 |
|  | B : 지방자치단체(시/도/구청) | 49 | 26.8 |
|  | B : 문화복지 전문인력 | 16 | 8.7 |
|  | B : 지역소재 문화재단 | 14 | 7.7 |
|  | C :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 | 7 | 3.8 |
|  | C: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KOCACA) | 10 | 5.5 |
|  | C : 예술의 전당 | 33 | 18.0 |
| 담 당 업무별 | 문화예술 관련사업 분야 | 44 | 24.0 |
|  | 문화예술공간 분야 | 31 | 16.9 |
|  | 일반국민에 대한 문화복지 분야 | 27 | 14.8 |
|  | 장애인, 예술인 및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분야 | 26 | 14.2 |
|  | 문화예술 관련기관 분야 | 19 | 10.4 |
|  | 문화예술관련 기금분야 | 6 | 3.3 |
|  | 기 타 | 27 | 14.8 |
|  | 무응답 | 3 | 1.6 |

※ 중앙정부부처 및 소속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및 직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단체 : 시/도/구청 및 지자체 소속 산하단체의 문 화/복지업무 담당자(문화복지 전문인력 포함)
※ 문화예술진흥법 관련 공공기관 : ARKO,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예술 의 전당 등

제 4 장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사회적 분석
(2) 일반국민
<표 IV-6> 응답자 특성 - 일반국민(인구통계적 특성)

|  | 구 분 | 사례수(명) | 응답비율(\%) |
| :---: | :---: | :---: | :---: |
|  | 전 체 | 1,000 | 100.0 |
| 성 별 | 남 자 | 514 | 51.4 |
|  | 여 자 | 486 | 48.6 |
| 연령별 | 19~29세 | 213 | 21.3 |
|  | 30~39세 | 233 | 23.3 |
|  | 40~49세 | 256 | 25.6 |
|  | 50 세 이상 | 298 | 29.8 |
| 거 주 <br> 지역별 | 서 울 | 208 | 20.8 |
|  | 인천/경기 | 299 | 29.9 |
|  | 대전/세종/충북/충남 | 98 | 9.8 |
|  | 광주/전북/전남 | 97 | 9.7 |
|  | 대구/경북 | 101 | 10.1 |
|  | 부산/울산/경남 | 159 | 15.9 |
|  | 강원/제주 | 38 | 3.8 |
| $\begin{aligned} & \text { 거주지 } \\ & \text { 특성별 } \end{aligned}$ | 서울 거주 | 208 | 20.8 |
|  | 6대 광역시 거주 | 333 | 33.3 |
|  | 도의 시 단위 거주 | 380 | 38.0 |
|  | 도의 군,면,읍 단위 거주 | 79 | 7.9 |

<표 IV-7> 응답자 특성 - 일반국민(사회적 특성)


## 제 2 절 행정기관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분석

## 1. 업무수행 관련

(1) 응답자 담당업무 분야별 분포

질 문 귀하의 주요 담당업무에 가장 가까운 분야는 어느 것입니까?

분석 결과

응답에 참여한 행정기관 담당자 $(\mathrm{N}=183$ 명 $)$ 의 담당업무를 분야별로 살 펴보면, '문화예술 관련사업 분야' $24.0 \%$, '문화예술공간 분야' $16.9 \%$, '일반국민에 대한 문화복지 분야' $14.8 \%$, '장애인, 예술인 및 소외계층 에 대한 문화복지 분야' $14.2 \%$, '문화예술 관련기관 분야' $10.4 \%$, '문 화예술관련 기금분야' $3.3 \%$, '기타' $14.8 \%$ 등이었으며, 그 외 무응답 의 비율이 $1.6 \%$ 였다.

주) 위에서 언급한 수치는 본 조사에 응답한 설문 참여자의 분포이며, 전체 모집 단의 비율과는 무관함.
<그림 IV-1> 응답자 담당업무 분야별 분포
(단위: 명, \%)

<표 IV-8> 응답자 담당업무 분야별 분포
(단위: 명, \%)

| 구 분 |  | 사례수 <br> (명) | 문화예술 <br> 관 련 <br> 사업 분야 | 문화예술 <br> 공간 분야 | 소외 계층에 <br> 대한 문화 <br> 복지 분야 | 일반국민에 <br> 대한 문화 <br> 복지 분야 |
| :---: | :---: | :---: | :---: | :---: | :---: | :---: |
| 전 체 |  | (183) | 24.0 | 16.9 | 14.8 | 14.2 |
| 구 분 | 중앙정부/부처 | (54) | 13.0 | 3.7 | 20.4 | 5.6 |
|  | 지자체/ 산하기관 | (79) | 34.2 | 16.5 | 13.9 | 17.7 |
|  | $\begin{aligned} & \text { 문 화 } \\ & \text { 공공기관 } \end{aligned}$ | (50) | 20.0 | 32.0 | 10.0 | 18.0 |
| $\begin{aligned} & \text { 소 속 } \\ & \text { 기관별 } \end{aligned}$ | 문 화 부 | (46) | 15.2 | 4.3 | 15.2 | 2.2 |
|  | 복 지 부 | (8) | - | - | 50.0 | 25.0 |
|  | 지 자 체 | (49) | 28.6 | 18.4 | 16.3 | 18.4 |
|  | 문화복지인력 | (16) | 25.0 | 12.5 | 12.5 | 31.3 |
|  | 지역문화재단 | (14) | 64.3 | 14.3 | 7.1 | - |
|  | ARKO | (7) | - | - | 42.9 | 57.1 |
|  | KOCACA | (10) | 10.0 | - | 20.0 | 50.0 |
|  | 예술의전당 | (33) | 27.3 | 48.5 | - | - |

<표 IV-9> 응답자 담당업무 분야별 분포(계속)
(단위: 명, \%)

| 구 분 |  | 사례수 <br> (명) | 관련 기관 <br> 분 야 | 관련 기금 | 기 타 | 무응답 |
| :---: | :---: | :---: | :---: | :---: | :---: | :---: |
| 전 체 |  | (183) | 10.4 | 3.3 | 14.8 | 1.6 |
| 구 분 | 중앙정부/부처 | (54) | 18.5 | - | 35.2 | 3.7 |
|  | 지자체/ 산하기관 | (79) | 3.8 | 6.3 | 6.3 | 1.3 |
|  | $\begin{aligned} & \text { 문 화 } \\ & \text { 공공기관 } \end{aligned}$ | (50) | 12.0 | 2.0 | 6.0 | - |
| $\begin{aligned} & \text { 소 속 } \\ & \text { 기관별 } \end{aligned}$ | 문 화 부 | (46) | 21.7 | - | 39.1 | 2.2 |
|  | 복 지 부 | (8) | - | - | 12.5 | 12.5 |
|  | 지 자 체 | (49) | 2.0 | 8.2 | 6.1 | 2.0 |
|  | 문화복지인력 | (16) | 12.5 | - | 6.3 | - |
|  | 지역문화재단 | (14) | - | 7.1 | 7.1 | - |
|  | ARKO | (7) | - | - | - | - |
|  | KOCACA | (10) | 10.0 | 10.0 | - | - |
|  | 예술의전당 | (33) | 15.2 | - | 9.1 | - |

(2) 주로 참조하는 법률

귀하의 주된 업무와 관련하여 가장 빈번히 참조하거나, 찾아 본
질 문 경험이 있는 법률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가장 자주 참조하는 법 률의 순서대로 3 순위까지 골라주세요.

## 분석 결과

주로 참조하는 법률(1순위 응답 기준)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1.4 \%$ 가 '문화예술진흥법'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한 조례 및 규칙 등’이 $13.1 \%$ 로 뒤를 이었다.
$>1+2+3$ 순위 응답을 합산한 경우 '문화예술진흥법'을 꼽은 비율이 $72.1 \%$ 로 다른 법률과 큰 차이를 보였다.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진흥법’이라는 응답은 문화공공 기관에서 $78.0 \%$ 로 특히 높았으며, 지자체/산하기관에서는 $48.1 \%$, 중 앙정부/부처에서는 $31.5 \%$ 로 각각 응답되는 등 소속기관별로 차이가 크 게 나타났다.
<그림 IV-2> 주로 참조하는 법률
(단위: 명, \%)


제 4 장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사회적 분석
<표 IV-10> 주로 참조하는 법률(1순위)
(단위: 명, \%)

| 구 |  | 사례수 <br> (명) | 문화예술 <br> 진흥법 | 지방자치 <br> 단체가 <br> 제정한 <br> 조례 및 <br> 규칙 등 | 문 화 산업진흥 기본법 | 출판문화 <br> 산업진흥법/ <br> 독서문화 <br> 진흥법인쇄 <br> 문화진흥법 | 문화예술 <br> 교 육 <br> 지원법 | $\begin{aligned} & \text { 예술인 } \\ & \text { 복지 법 } \end{aligned}$ | 기 타 | 전 혀 <br> 없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전 | 체 | (183) | 51.4 | 13.1 | 6.0 | 2.2 | 2.2 | 2.2 | 13.1 | 8.7 |
| 구 분 | 중 앙 <br> 정 부/ <br> 부 처 | (54) | 31.5 | 3.7 | 9.3 | 5.6 | 3.7 | 5.6 | 22.2 | 14.8 |
|  | 지자체/ <br> 산 하 <br> 기 관 | (79) | 48.1 | 25.3 | 6.3 | - | 1.3 | 1.3 | 10.1 | 7.6 |
|  | $\begin{aligned} & \text { 문 화 } \\ & \text { 공 공 } \\ & \text { 기 관 } \end{aligned}$ | (50) | 78.0 | 4.0 | 2.0 | 2.0 | 2.0 | - | 8.0 | 4.0 |
| $\begin{aligned} & \text { 소 속 } \\ & \text { 기관별 } \end{aligned}$ | 문화부 | (46) | 34.8 | - | 10.9 | 6.5 | 4.3 | 4.3 | 17.4 | 17.4 |
|  | 복지부 | (8) | 12.5 | 25.0 | - | - | - | 12.5 | 50.0 | - |
|  | 지자체 | (49) | 38.8 | 32.7 | 6.1 | - | - | 2.0 | 16.3 | 4.1 |
|  | 문화복 <br> 지인력 | (16) | 50.0 | 25.0 | - | - | 6.3 | - | - | 18.8 |
|  | 지역문 <br> 화재단 | (14) | 78.6 | - | 14.3 | - | - | - | - | 7.1 |
|  | ARKO | (7) | 100.0 | - | - | - | - | - | - | - |
|  | KOCACA | (10) | 90.0 | - | - | - | - | - | 10.0 | - |
|  | $\begin{aligned} & \text { 예술의 } \\ & \text { 전 당 } \end{aligned}$ | (33) | 69.7 | 6.1 | 3.0 | 3.0 | 3.0 | - | 9.1 | 6.1 |

(3) 업무수행 장애요인

귀하께서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다음의 경우에 해
질 문 당하신 경우가 있으십니까? 다음 보기에서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분석 결과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을 질문한 결과, ‘예산/인력의 부족’이라는 응답이 $61.2 \%$ 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관련 법률과 실제간 차이, $36.6 \%$, '업무관련 기관간의 어려움' $27.9 \%$, '관련 민원의 혼선' $19.1 \%$, '관련 법률의 산재로 인한 어려움' $10.9 \%$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그 외 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음' $6.0 \%$, '기타' $2.7 \%$, '무응답' $1.1 \%$ 등이었다.

- 응답자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예산 또는 인력의 부족' 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가운데, 지자체/산하기관에서는 '관련 법률과 실제 문제 간의 차이'와 ‘관련 민원의 혼선’라는 응답이, 문화공공기관 에서는 '관련 법률과 실제 문제 간의 차이'와 '업무관련 기관 간의 어려 움’이라는 응답이 각각 전체평균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되었다.
<표 IV-11> 업무수행 장애요인
(단위: 명, \%)

|  |  | 사례수 <br> (명) | 예산/인력의 <br> 부 족 | 관련 법률과 실제간 차이 | 업무관련 <br> 기관간의 어려움 | 관련 민원의 <br> 혼 선 |
| :---: | :---: | :---: | :---: | :---: | :---: | :---: |
|  |  | (183) | 61.2 | 36.6 | 27.9 | 19.1 |
| 구 분 | 중앙정부/부처 | (54) | 53.7 | 24.1 | 27.8 | 13.0 |
|  | 지자체/ <br> 산하기관 | (79) | 60.8 | 41.8 | 21.5 | 22.8 |

제 4 장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사회적 분석

| 구 분 |  | 사례수 <br> (명) | 예산/인력의 <br> 부 족 | 관련 법률과 실제간 차이 | 업무관련 <br> 기관간의 어려움 | 관련 민원의 <br> 혼 선 |
| :---: | :---: | :---: | :---: | :---: | :---: | :---: |
|  | 문 화 공공기관 | (50) | 70.0 | 42.0 | 38.0 | 20.0 |
| 소 속 <br> 기관별 | 문화부 | (46) | 56.5 | 28.3 | 23.9 | 15.2 |
|  | 복지부 | (8) | 37.5 | - | 50.0 | - |
|  | 지자체 | (49) | 63.3 | 51.0 | 16.3 | 22.4 |
|  | 문화복지인력 | (16) | 56.3 | 25.0 | 25.0 | 31.3 |
|  | 지역문화재단 | (14) | 57.1 | 28.6 | 35.7 | 14.3 |
|  | ARKO | (7) | 42.9 | 28.6 | 42.9 | 28.6 |
|  | KOCACA | (10) | 60.0 | 70.0 | 40.0 | 30.0 |
|  | 예술의전당 | (33) | 78.8 | 36.4 | 36.4 | 15.2 |

<표 IV-12> 업무수행 장애요인(계속)
(단위: 명, \%)

|  | 분 | 사례수 <br> (명) | 관련 법률의 산재로 인한 어려움 | 전혀 문제가 없었음 | 기 타 | 무응답 |
| :---: | :---: | :---: | :---: | :---: | :---: | :---: |
|  | 체 | (183) | 10.9 | 6.0 | 2.7 | 1.1 |
| 구 분 | 중앙정부/부처 | (54) | 3.7 | 7.4 | 9.3 | 1.9 |
|  | 지자체/ <br> 산하기관 | (79) | 16.5 | 3.8 | - | 1.3 |
|  | 문 화 공공기관 | (50) | 10.0 | 8.0 | - | - |
| $\begin{aligned} & \text { 소 속 } \\ & \text { 기관별 } \end{aligned}$ | 문화부 | (46) | 2.2 | 6.5 | 6.5 | 2.2 |
|  | 복지부 | (8) | 12.5 | 12.5 | 25.0 | - |


| 구 분 | 사례수 <br> (명) | 관련 법률의 산재로 인한 어려움 | 전혀 문제가 없었음 | 기 타 | 무응답 |
| :---: | :---: | :---: | :---: | :---: | :---: |
| 지자체 | (49) | 24.5 | 2.0 | - | 2.0 |
| 문화복지인력 | (16) | - | 12.5 | - | - |
| 지역문화재단 | (14) | 7.1 | - | - | - |
| ARKO | (7) | - | 14.3 | - | - |
| KOCACA | (10) | 10.0 | 10.0 | - | - |
| 예술의전당 | (33) | 12.1 | 6.1 | - | - |

(4)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사항

국민 전체에 계속적으로 특정의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
질 문 는 업무가 발생하신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중복응답)

## 분석 결과

- 문화복지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것(1순위 응답 기준)으로 '추가적인 재 정과 기금의 확보’라는 응답이 $53.0 \%$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 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일선의 전문인력 확충' $28.4 \%$, '구체적인 문화복지 서비스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 $15.3 \%$, '새로운 관련 위원회 또는 기관의 설립, $1.6 \%$, 기타 $1.6 \%$ 등이었다.
한편 $1+2+3$ 순위 응답을 합산한 경우에도 응답순위에는 차이가 없었다.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부처에서는 '대국민 서비스를 위 한 일선의 전문인력 확충', 지자체/산하기관에서는 '구체적인 문화복 지 서비스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 문화공공기관에서는 ‘추가적인 재 정과 기금의 확보, 응답이 각각 전체평균대비 더 높게 응답되었다.
<그림 IV-3>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사항
(단위: 명, \%)

(5)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의 주체

| 질 문 | 귀하께서는 일반국민 및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br> 가장 노력해야 할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분석 결과

- 응답자의 $65.0 \%$ 가 ‘국가(정부)’라고 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지방자치 단체' $16.9 \%$, '문화예술관련 기관' $13.1 \%$ 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응답으로는 '기업' $4.9 \%$, '일반 국민' $2.2 \%$ 등이었다.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국가(정부)'라고 응답한 비율은 문화공공 기관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지차체/산하기관, 중앙정부/부처 등 의 순이었다. 한편 중앙정부/부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응답이 $24.1 \%$ 로 다른 부문과 비교할 때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4>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의 주체
(단위: 명, \%)



## 2. 문화예술진흥법 관련

(1) 문화예술진흥법 인지도

귀하께서는 아래에서 소개하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해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 진흥법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예술 복지 증진에 관 한 규정으로는 문화의 날과 문화의 달 설정, 문화강좌 설치 및 지원, 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문화산업 육성과 지원, 도서 • 문 화 전용 상품권 인증 및 사용 촉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문화소외계층 문화예술 복지 장려, 저소득층 문화이용권 지급 등 의 규정이 있습니다.

## 분석 결과

'문화예술진흥법' 인지도는 $80.9 \%$ (매우 잘 $18.6 \%$ + 대충 $62.3 \%$ )로 나 타났다.
$>$ 인지도는 문화 공공기관 $(84.0 \%)>$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82.3 \%)$ $>$ 중앙정부/부처(75.9\%)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자체 및 산하기관 의 인지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자체(응답자 49명) $77.6 \%$, 문화 복지전문인력(응답자 16 명) $81.3 \%$, 지역문화재단(응답자 14 명) $100 \%$ 로 소속부서별로 응답에 차이를 보였다.

주) 응답자의 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를 요함

> <그림 IV-5> 문화예술진흥법 인지도
(단위: 명, \%)

(2) 법률에 대한 인식 및 평가 : 이해하기 쉽다

현 문화예술진흥법 제1조(목적)에서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해 느끼시는 대로 평가 하여 주십시오.

- '문화예술진흥법’이라는 이름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초적인 법 으로 '문화예술복지의 증진'을 규정하고 있다고 이해하기 쉽다.


## 분석 결과

'이해하기 쉽다'는 응답은 $47.5 \%$ (매우 $2.7 \%+$ 대체로 $27.9 \%+$ 약간 $16.9 \%$ ), '이해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31.1 \%$ (조금 $26.2 \%+$ 상당히 $4.4 \%+$ 특별 한 전문지식 필요 $0.5 \%)$ 로 나타났다.
$>$ 한편 보통이라는 응답은 $20.8 \%$ 였다.
<그림 IV-6> 법률에 대한 인식 및 평가 : 이해하기 쉽다
(단위: 명, \%)

(3) 법률에 대한 인식 및 평가 : 권리와 의무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  | 다음의 질문에 대해 느끼시는 대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br> -질 문 |
| :--- | :--- |
| '문화예술진흥법'은 국민의 문화적 복지에 대한 간리와 겍하아의 규정하고 있다 |  |

## 분석 결과

'그렇다'는 응답은 $36.6 \%$ (매우 $1.1 \%+$ 대체로 $20.2 \%+$ 약간 $15.3 \%$ ),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5.0 \%$ (약간 $16.4 \%+$ 별로 $16.4 \%+$ 전혀 $2.2 \%$ ) 로 나타났다.
$>$ 한편 보통이라는 응답은 $28.4 \%$ 였다.
<그림 IV-7> 법률에 대한 인식 및 평가 : 권리와 의무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단위: 명, \%)

(4) 문화예술복지 내용의 적절성

현재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하는 문화예술 복지의 내용 중, 일반국 민 전체에 대한 문화복지 서비스로서 ‘(1) 문화의 날 설정, (2) 문화

질 문 강좌 설치, (3) 학교 및 직장에 문화예술활동단체의 권고, (4) 도서 문화전용상품권 인증제도'를 문화예술진흥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귀하의 입장에서 이러한 '국민에게 보장하 는 문화예술복지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분석 결과

- '늘려야 한다'는 응답의 합계가 $86.9 \%$ 로 매우 높았으며, 특히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52.5 \%$ 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적절하다'는 응답은 $8.2 \%$,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1.1 \%$ 에 불과 했다.
(단위: 명, \%)

<표 IV-13> 문화예술복지 내용의 적절성
(단위: 명, \%)

|  | 구 분 | 사례수 <br> (명) | 대 폭 <br> 늘려야 <br> 한 다 | 소 폭 <br> 늘려야 <br> 한 다 | 지 금 <br> 수준이 <br> 적 절 | 소 폭 <br> 줄여야 <br> 한 다 | 잘 모름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183) | 52.5 | 34.4 | 8.2 | 1.1 | 3.8 |
| $\begin{aligned} & \text { 구 } \\ & \text { 분 } \end{aligned}$ | 중앙정부/부처 | (54) | 48.1 | 40.7 | 5.6 | - | 5.6 |
|  | 지자체산하기관 | (79) | 53.2 | 30.4 | 10.1 | 2.5 | 3.8 |
|  | 문화 공공기관 | (50) | 56.0 | 34.0 | 8.0 | - | 2.0 |

<표 IV-14> 문화예술복지 내용의 적절성(계속)
(단위: 명, \%)

|  | 구 분 | 사례수 <br> (명) | 늘려야 <br> 한 다 | 적절하다 | 줄여야 <br> 한 다 | 잘 모름 |
| :---: | :---: | :---: | :---: | :---: | :---: | :---: |
|  | 전 체 | (183) | 86.9 | 8.2 | 1.1 | 3.8 |
| $\begin{aligned} & \text { 구 } \\ & \text { 분 } \end{aligned}$ | 중앙정부/부처 | (54) | 88.9 | 5.6 | - | 5.6 |
|  | 지자체/산하기관 | (79) | 83.5 | 10.1 | 2.5 | 3.8 |
|  | 문화 공공기관 | (50) | 90.0 | 8.0 | - | 2.0 |

(5) 문화관련 법률의 실질적 도움 제공여부

귀하께서는 문화관련 법률(예: 문화예술진흥법, 학교문화예술교
질 문 육진흥법 등)들이 일반 국민의 문화생활에 구체적인 도움을 주 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분석 결과

'도움이 된다'는 응답의 합계가 $45.4 \%$ (매우 $8.2 \%+$ 약간 $37.2 \%$ )로 나 타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의 합계 $25.1 \%$ (별로 $24.0 \%$ + 전혀 $1.1 \%$ )에 비해 우세했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28.4 \%$ 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중앙정부/부처(51.9\%) $>$ 지자체/산하기관 $(44.3 \%)>$ 문화 공공기관 $(40.0 \%$ ) 의 순이었다.
<그림 IV-9> 문화관련 법률의 실질적 도움 제공여부
(단위: 명, \%)

<표 IV-15> 문화관련 법률의 실질적 도움 제공여부
(단위: 명, \%)

|  | 군 | 사례수 <br> (명) | 매 우 <br> 도움됨 | $\begin{aligned} & \text { 약 간 } \\ & \text { 도움됨 } \end{aligned}$ | 보 통 | 별 로 도움되지 않 음 | $\left\lvert\, \begin{array}{cc} \text { 전 } & \text { 혀 } \\ \text { 도움되지 } \\ \text { 않 } & \text { 음 } \end{array}\right.$ | 무응답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183) | 8.2 | 37.2 | 28.4 | 24.0 | 1.1 | 1.1 |
| 구분 | 중앙정부/부처 | (54) | 9.3 | 42.6 | 22.2 | 24.1 | - | 1.9 |
|  | 지자체/ 산하기관 | (79) | 7.6 | 36.7 | 29.1 | 22.8 | 2.5 | 1.3 |
|  | 문화 공공기관 | (50) | 8.0 | 32.0 | 34.0 | 26.0 | - | - |

<표 IV-16> 문화관련 법률의 실질적 도움 제공여부(계속)
(단위: 명, \%)

|  | 구 분 | 사례수 <br> (명) | 도움 됨 | 보 통 | 도움 안됨 | 무응답 |
| :---: | :---: | :---: | :---: | :---: | :---: | :---: |
|  | 전 체 | (183) | 45.4 | 28.4 | 25.1 | 1.1 |
| 구 분 | 중앙정부/부처 | (54) | 51.9 | 22.2 | 24.1 | 1.9 |
|  | 지자체/산하기관 | (79) | 44.3 | 29.1 | 25.3 | 1.3 |
|  | 문화 공공기관 | (50) | 40.0 | 34.0 | 26.0 | - |

(6) 도움주지 못하는 이유
(도움 되지 않는다는 분만) 만약 법이 국민들의 문화생활에 직 질 문 접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석 결과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유로 '관련 정책과 제도의 미비’라는 응답이 71.7\% 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산재된 관련 법률들의 체계' $13.0 \%$, '담당자의 과중한 업무부담' $6.5 \%$, '구체적인 급여에 관한 규 정 미비' $2.2 \%$, '기타' $6.5 \%$ 등으로 응답되었다.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자체/산하기관에서는 ‘관련 정책과 제도 의 미비', 문화 공공기관에서는 '산재된 관련 법률들의 체계’라는 응 답이 각각 전체평균대비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단위: 명, \%)


3. 문화예술복지 법제화 관련
(1) 문화예술 복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

| 질 문 |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문화예술분야의 복지를 위해 국민에게 <br> 가장 필요한 구체적인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br> 음 보기 중에서 법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을 한 가 <br> 지만 골라주세요. |
| :--- | :--- |

## 분석 결과

문화예술분야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 '국민 전반의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32.2 \%$, '전 국민 대상 문화예술 교육의 보급' $28.4 \%$, '모 든 국민에게 문화이용권 지급' $21.9 \%$ 의 순으로 높게 응답되었다.

- 그 외 응답으로는 '문화의 날 등의 지정 준공휴일의 지정' $7.1 \%$, '각 종 문화관련 이벤트 및 행사의 개최' $7.1 \%$, '기타' $2.2 \%$, '무응답' $1.1 \%$ 등이었다.
<그림 IV-11> 문화예술 복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
(단위: 명, \%)

<표 IV-17> 문화예술 복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
(단위: 명, \%)

| 구 분 |  | 사례수 <br> (명) | 국민 전반의 <br> 문화예술 활 <br> 동의 지원 | 전 국민 대상 <br> 문화예술 교육의 보급 | 모 든 국민에 게 문화이용권 지 급 | 문화의 날 <br> 등의 지정 <br> 및 준 공휴일 <br> 지 정 |
| :---: | :---: | :---: | :---: | :---: | :---: | :---: |
| 전 체 |  | (183) | 32.2 | 28.4 | 21.9 | 7.1 |
| 구 분 | 중앙정부/부처 | (54) | 35.2 | 33.3 | 14.8 | 5.6 |
|  | 지자체/산하기관 | (79) | 30.4 | 22.8 | 27.8 | 10.1 |
|  | 문화 공공기관 | (50) | 32.0 | 32.0 | 20.0 | 4.0 |

<표 IV-18> 문화예술 복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계속)
(단위: 명, \%)

|  | 분 | 사례수 <br> (명) | 각종 문화관련 <br> 이벤트 및 <br> 행사의 개최 | 기 타 | 무응답 |
| :---: | :---: | :---: | :---: | :---: | :---: |
|  | 체 | (183) | 7.1 | 2.2 | 1.1 |
| 구 분 | 중앙정부/부처 | (54) | 7.4 | 1.9 | 1.9 |
|  | 지자체/산하기관 | (79) | 6.3 | 1.3 | 1.3 |
|  | 문화 공공기관 | (50) | 8.0 | 4.0 | - |

(2) 문화복지 관련법 제/개정에 대한 의견

다음은 일반 국민 전체의 문화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법으로 정하 는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중 어떤 의견에 더 동의하세요?

## 분석 결과

일반 국민 전체의 문화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법으로 정하는 방법에 대해 '기존 문화예술진흥법에 별도의 장이나 규정을 추가하여 제정한 다'라는 의견이 $48.6 \%$ 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

- 그 다음으로 '새로운 문화복지법을 제정하고, 향후 이법을 구체적으 로 개정한다' $21.9 \%$, '현재의 문화예술예술진흥법으로 충분하다' $14.8 \%$ 의 순이었으며, 그 외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한다' $3.3 \%$, '특별한 의 견이 없다, $9.3 \%$ 등이었다.
<그림 IV-12> 문화복지 관련법 제/개정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표 IV-19> 문화복지 관련법 제/개정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  | 분 | 사례수 <br> (명) | 기존법에 <br> 별도의 <br> 규정을 <br> 추가하여 <br> 제 정 | 새로운 문화복지법 <br> 제 정 향후 이법을 구체적으로 개 정 | 현재의 문화예술 진흥법으로 충 분 | 새로운 특별법을 제 정 | 특별한 <br> 의 견 <br> 없 음 | 무응답 |
| :---: | :---: | :---: | :---: | :---: | :---: | :---: | :---: | :---: |
|  | 체 | (183) | 48.6 | 21.9 | 14.8 | 3.3 | 9.3 | 2.2 |
| $\begin{aligned} & \text { 구 } \\ & \text { 분 } \end{aligned}$ | 중앙정부/ 부 처 | (54) | 40.7 | 24.1 | 9.3 | 3.7 | 20.4 | 1.9 |
|  | 지자체/ 산하기관 | (79) | 54.4 | 19.0 | 13.9 | 5.1 | 5.1 | 2.5 |
|  | $\begin{aligned} & \text { 문 화 } \\ & \text { 공공기관 } \end{aligned}$ | (50) | 48.0 | 24.0 | 22.0 | - | 4.0 | 2.0 |

(3) 문화기본법 제정 시 문화예술진훙법의 역할

질 문 문화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기존의 문화예술진흥법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 분석 결과

'진흥법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해나갈 수 있을 것 이다'라는 응답이 $61.7 \%$ 로 가장 높았다.
$>$ 그 다음으로 '기본법에도 규정된 내용만 삭제하고, 현행 진흥법을 그 대로 둔다' $20.8 \%$, '기본법이 제정되면 진흥법은 폐지하여도 된다' $12.0 \%$ 등의 순이었다.
$>$ 그 외 기타 $3.3 \%$, 무응답 $2.2 \%$ 였다.
<그림 IV-13> 문화기본법 제정 시 문화예술진훙법의 역할
(단위: 명, \%)

<표 IV-20> 문화기본법 제정 시 문화예술진흥법의 역할
(단위: 명, \%)

|  | 구 분 | 사례수 <br> (명) | 진흥법에 문화예술 진흥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갈 수 있을 것 | 기본법에도 <br> 규정된 <br> 내용만 <br> 삭제, 현행 <br> 진흥법 <br> 그대로 <br> 둔 다 | 기본법이 제정되면 진흥법 폐지해도 된 다 | 기 타 | 무응답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183) | 61.7 | 20.8 | 12.0 | 3.3 | 2.2 |
| $\begin{aligned} & \text { 구 } \\ & \text { 분 } \end{aligned}$ | 중앙정부/부처 | (54) | 68.5 | 20.4 | 5.6 | 1.9 | 3.7 |
|  | 지자체/산하기관 | (79) | 54.4 | 16.5 | 22.8 | 3.8 | 2.5 |
|  | 문화 공공기관 | (50) | 66.0 | 28.0 | 2.0 | 4.0 | - |

(4) 문화복지 관련 규정 및 총괄기구

문화예술복지와 관련하여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예술인 복지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등의 법률이 있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각 위원회, 재단 등의 기구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보시기에 국민 전체의 문화복지와 관련한 규정들과 시행 기구들 간의 조정 내지 총괄을 하는 법률과 기구가 무엇 이라고 생각되십니까?

## 분석 결과

- '조정과 총괄을 위한 법률과 기구는 필요하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3.6 \%$ 로 절반을 넘었으며, 그 다음으로 '현재 특정된 법률과 기구가 없으며 향후 00 법률 및 00 기구가 역할을 해야 한다' $20.8 \%$, '현행 00 법과 00 기구가 총괄•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다, $9.8 \%$ 등이었다. 그 외 '필요가 없다' $3.8 \%$, 무응답 $12.0 \%$ 등이었다.
한편 현재 특정된 법률과 기구가 없다고 응답( 38 명)한 경우, 법률로는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담당기구로는 ‘(별도의)문화 예술관련 기구’가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응답하였다.
- 현재 특정된 법률과 기구가 있다는 경우(18명)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V-21> 문화복지 관련 규정 및 총괄기구
(단위: 명, \%)

|  | 구 분 | 사례수 <br> (명) | 필요하지만 잘 모르겠다 | 현 재 특정된 법률과 기구가 없 다 | 현행 법과 기구가 <br> 총괄•조정 의 역할을 하고 있다 | $\begin{aligned} & \text { 필요가 } \\ & \text { 없 다 } \end{aligned}$ | 무응답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183) | 53.6 | 20.8 | 9.8 | 3.8 | 12.0 |
| $\begin{aligned} & \text { 구 } \\ & \text { 분 } \end{aligned}$ | 중앙정부/부처 | (54) | 57.4 | 14.8 | 13.0 | 3.7 | 11.1 |
|  | 지자체/산하기관 | (79) | 54.4 | 22.8 | 8.9 | 3.8 | 10.1 |
|  | 문화 공공기관 | (50) | 48.0 | 24.0 | 8.0 | 4.0 | 16.0 |

(5) 문화복지 법률 신설 시 시행기구 및 인력배정 국민 전체의 문화복지를 위한 법률의 구체적인 제도 및 서비스 질 문 들이 신설된다면, 이를 시행하기 위한 기구/부서 및 인력배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석 결과
'기존의 문화예술 관련기구에 신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투입'이라는 응답이 $41.0 \%$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그 다음으로 '기존의 문화예술 관련기구 및 인력에 예산을 투입하여 활용' $29.5 \%$, '새로운 기구의 신설과 신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투입' $15.3 \%$, '새로운 기구 신설하되 기존의 인력을 활용' $9.8 \%$ 의 순이었다. 그 외 '기타' $1.1 \%$, 무응답 $3.3 \%$ 등이었다.
- 한편 문화공공기관의 경우 '기존기구 및 인력에 예산을 투입하여 활 용’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다른 부문과 차이를 보였다.
<그림 IV-14> 문화복지 법률 신설 시 시행기구 및 인력배정
(단위: 명, \%)

<표 IV-22> 문화복지 법률 신설 시 시행기구 및 인력배정
(단위: 명, \%)

|  | 구 분 | 사례수 <br> (명) | 기존의 <br> 기구에 <br> 신 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투 입 | 기존기구 <br> 및 인력에 <br> 예산을 <br> 투입하여 <br> 활 용 | 새로운 <br> 기구의 <br> 신설과 <br> 신 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투 입 | 새로운 <br> 기구를 <br> 신설하되 <br> 기존의 <br> 인 력 <br> 활 용 | 기 타 | 무응답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183) | 41.0 | 29.5 | 15.3 | 9.8 | 1.1 | 3.3 |
| $\begin{aligned} & \text { 구 } \\ & \text { 분 } \end{aligned}$ | 중앙정부/부처 | (54) | 44.4 | 20.4 | 18.5 | 9.3 | 1.9 | 5.6 |
|  | 지자체/ 산하기관 | (79) | 46.8 | 26.6 | 12.7 | 13.9 | - | - |
|  | 문화 공공기관 | (50) | 28.0 | 44.0 | 16.0 | 4.0 | 2.0 | 6.0 |

## 제 3 절 일반국민 설문조사 결과 분석

## 1. 문화예술 이용 관련

(1) 최근 1년간 문화예술 분야별 경험

[^1]
## 분석 결과

> 최근 1 년 동안의 문화예술 향유경험을 예술분야별로 살펴본 결과, ‘영화, 미디어’ $95.2 \%$, '문학작품’ $49.1 \%$, ‘전시' $42.8 \%$, '연극, 뮤지컬' $41.4 \%$, '음악' $39.4 \%$, '복합장르(비보이 등)' $8.6 \%$, '무용' $7.9 \%$ 의 순으 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15> 최근 1 년간 문화예술 분야별 경험
(단위: 명, \%)

※ 문학 작품 : 소설, 시, 아동문학, 희곡, 평론 등
※ 음악 : 오페라, 성악, 대중음악, 관현악, 국악 등
※ 무용 :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 연극, 뮤지컬 : 연극(마당극), 뮤지컬 등
※ 영화, 미디어 : 영화, DVD, 미디어 콘텐츠 등
※ 전시 : 회화, 전시회, 건축, 사진, 공예, 디자인 등
※ 복합장르 : 비보이 등
(2) 문화예술 참여의 장애요인

## 질 문

 귀하께서 문화예술을 관람하거나 참여하시는데 있어 가장 어려 움을 격는 문제는 무엇입니까?분석 결과

- 문화예술 향유와 관련하여 어려운 점으로는 '생활이 바빠 여가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39.9 \%$ 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 여유 가 없다' $25.9 \%$,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 공연시설이 없다' $14.0 \%$, '문 화예술 공연 및 관람을 위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11.4 \%$ 등으로 응답 되었다.
- 그 외 응답으로는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그다지 친숙하지 않다' $6.5 \%$,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로 인해 거동이 어렵다' $1.6 \%$, '기타' $0.5 \%$ 등 이었으며, '없음'이라는 응답은 $0.2 \%$ 로 나타났다.
- 거주특성별로 살펴보면, 서울 거주자의 경우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응답이, 군,면,읍 지역 거주자의 경우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 공연시 설이 없다'는 응답이 각각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IV-23> 문화예술 참여의 장애요인
(단위: 명, \%)

|  | 분 | 사례수 <br> (명) | 여 가 <br> 시 간 <br> 부 족 | 경제적 <br> 여유부족 | 근처에 <br> 공연시설 <br> 없 음 | 관 람 <br> 정보를 <br> 얻 기 <br> 어려움 | 친숙하지 <br> 않 음 |
| :---: | :---: | :---: | :---: | :---: | :---: | :---: | :---: |
|  | 체 | (1000) | 39.9 | 25.9 | 14.0 | 11.4 | 6.5 |
| 성 별 | 남 자 | (514) | 45.1 | 21.2 | 13.4 | 13.2 | 4.7 |
|  | 여 자 | (486) | 34.4 | 30.9 | 14.6 | 9.5 | 8.4 |


|  | 분 | 사례수 <br> (명) | 여 가 <br> 시 간 <br> 부 족 | 경제적 <br> 여유부족 | $\begin{aligned} & \text { 근처에 } \\ & \text { 공연시설 } \\ & \text { 없 음 } \end{aligned}$ | 관 람 <br> 정보를 <br> 얻 기 <br> 어려움 | 친숙하지 <br> 않 음 |
| :---: | :---: | :---: | :---: | :---: | :---: | :---: | :---: |
| 연령별 | 19~29세 | (213) | 34.7 | 35.7 | 12.7 | 10.3 | 4.2 |
|  | 30~39세 | (233) | 48.5 | 23.2 | 15.5 | 8.6 | 3.0 |
|  | 40~49 세 | (256) | 39.1 | 21.1 | 16.0 | 13.3 | 9.0 |
|  | 50세 이상 | (298) | 37.6 | 25.2 | 12.1 | 12.8 | 8.7 |
| $\begin{aligned} & \text { 거주지 } \\ & \text { 특성별 } \end{aligned}$ | 서울 거주 | (208) | 39.9 | 30.3 | 10.1 | 9.1 | 6.7 |
|  | 6대 광역시 | (333) | 43.5 | 20.1 | 12.0 | 14.7 | 7.8 |
|  | 시 단위 | (380) | 37.6 | 29.2 | 15.3 | 10.0 | 6.1 |
|  | 군,면, 읍 | (79) | 35.4 | 22.8 | 26.6 | 10.1 | 2.5 |
| 학력별 | 중졸 이하 | (12) | 41.7 | 16.7 | 8.3 | 8.3 | 16.7 |
|  | 고 졸 | (212) | 27.4 | 30.2 | 17.9 | 14.6 | 6.6 |
|  | 대 졸 | (682) | 42.2 | 26.2 | 12.0 | 11.3 | 6.6 |
|  | 대학원 이상 | (94) | 51.1 | 14.9 | 20.2 | 5.3 | 4.3 |
| 가 계 소득별 | 100만원 미만 | (53) | 28.3 | 41.5 | 17.0 | 5.7 | 5.7 |
|  | 100-200 미만 | (132) | 28.8 | 43.9 | 11.4 | 8.3 | 3.0 |
|  | 200-300 미만 | (187) | 43.3 | 26.2 | 12.8 | 11.2 | 4.3 |
|  | 300-400 미만 | (204) | 38.7 | 27.0 | 10.8 | 15.7 | 5.9 |
|  | 400 500 미만 | (185) | 44.9 | 18.4 | 15.1 | 10.8 | 8.6 |
|  | 500만원 이상 | (239) | 43.1 | 17.2 | 17.6 | 11.3 | 9.2 |
| 직업별 | 전문직/ <br> 관리직 | (119) | 55.5 | 15.1 | 19.3 | 6.7 | 3.4 |
|  | 사무직 | (311) | 46.0 | 19.0 | 15.4 | 11.3 | 6.1 |
|  | 서비스/ <br> 판매직 | (63) | 41.3 | 27.0 | 11.1 | 15.9 | 4.8 |


| 구 분 | 사례수 <br> (명) | 여 가 <br> 시 간 <br> 부 족 | 경제적 <br> 여유부족 | 근처에 <br> 공연시설 <br> 없 음 | 관 람 <br> 정보를 <br> 얻 기 <br> 어려움 | 친숙하지 않 음 |
| :---: | :---: | :---: | :---: | :---: | :---: | :---: |
| 생산/기능/ <br> 단순노무 | (62) | 37.1 | 29.0 | 9.7 | 21.0 | 3.2 |
| 전업주부 | (168) | 25.6 | 33.3 | 14.9 | 10.7 | 11.9 |
| 자영업 | (89) | 48.3 | 18.0 | 12.4 | 11.2 | 7.9 |
| 농업, 임업 | (7) | 14.3 | 28.6 | 28.6 | 28.6 | - |
| 구직 중/무직 | (46) | 34.8 | 41.3 | 8.7 | 8.7 | - |
| 기 타 | (135) | 28.1 | 40.0 | 10.4 | 10.4 | 7.4 |

<표 IV-24> 문화예술 참여의 장애요인(계속)
(단위: 명, \%)

|  |  | 사례수 <br> (명) | 장애로 <br> 인 해 <br> 거 동 <br> 어려움 | 같 이 관람할 <br> 사 람 <br> 없 음 | 아이있어 <br> 관 람 <br> 어려움 | 군인이라 <br> 관 람 <br> 어려움 | 없 음 |
| :---: | :---: | :---: | :---: | :---: | :---: | :---: | :---: |
|  |  | (1000) | 1.6 | 0.3 | 0.1 | 0.1 | 0.2 |
| 성 별 | 남 자 | (514) | 1.6 | 0.2 | 0.2 | 0.2 | 0.2 |
|  | 여 자 | (486) | 1.6 | 0.4 | - | - | 0.2 |
| 연령별 | 19~29세 | (213) | 0.9 | 0.5 | - | 0.5 | 0.5 |
|  | 30~39세 | (233) | 0.4 | 0.4 | 0.4 | - | - |
|  | 40~49세 | (256) | 1.6 | - | - | - | - |
|  | 50 세 이상 | (298) | 3.0 | 0.3 | - | - | 0.3 |

제 4 장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사회적 분석

|  | 분 | 사례수 <br> (명) | 장애로 <br> 인 해 <br> 거 동 <br> 어려움 | 같 이 관람할 사 람 없 음 | 아이있어 <br> 관 람 <br> 어려움 | 군인이라 <br> 관 람 <br> 어려움 | 없 음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거주지 } \\ & \text { 특성별 } \end{aligned}$ | 서울 거주 | (208) | 3.4 | - | 0.5 | - | - |
|  | 6대 광역시 | (333) | 1.5 | 0.3 | - | - | - |
|  | 시 단위 | (380) | 1.1 | 0.3 | - | - | 0.5 |
|  | 군,면, 읍 | (79) | - | 1.3 | - | 1.3 | - |
| 학력별 | 중졸 이하 | (12) | 8.3 | - | - | - | - |
|  | 고 졸 | (212) | 2.8 | - | - | - | 0.5 |
|  | 대 졸 | (682) | 0.9 | 0.4 | 0.1 | 0.1 | - |
|  | 대학원 이상 | (94) | 3.2 | - | - | - | 1.1 |
| 가 계 소득별 | 100만원 미만 | (53) | - | - | - | - | 1.9 |
|  | 100~200 미만 | (132) | 2.3 | 1.5 | - | - | 0.8 |
|  | 200~300 미만 | (187) | 2.1 | - | - | - | - |
|  | 300-400 미만 | (204) | 1.5 | - | - | 0.5 | - |
|  | 400~500 미만 | (185) | 1.6 | - | 0.5 | - | - |
|  | 500만원 이상 | (239) | 1.3 | 0.4 | - | - | - |
| 직업별 | 전문직/관리직 | (119) | - | - | - | - | - |
|  | 사무직 | (311) | 1.3 | 0.6 | 0.3 | - | - |
|  | 서비스/판매직 | (63) | - | - | - | - | - |
|  | 생산/기능/ <br> 단순노무 | (62) | - | - | - | - | - |
|  | 전업주부 | (168) | 3.6 | - | - | - | - |


| 구 분 | 사례수 <br> (명) | 장애로 <br> 인 해 <br> 거 동 <br> 어려움 | 같 이 관람할 사 람 없 음 | 아이있어 <br> 관 람 <br> 어려움 | 군인이라 <br> 관 람 <br> 어려움 | 없 음 |
| :---: | :---: | :---: | :---: | :---: | :---: | :---: |
| 자영업 | (89) | 2.2 | - | - | - | - |
| 농업, 임업 | (7) | - | - | - | - | - |
| 구직 중/무직 | (46) | 2.2 | 2.2 | - | - | 2.2 |
| 기 타 | (135) | 2.2 | - | - | 0.7 | 0.7 |

(3) 문화예술 관련 정보 획득경로

| 질 문 귀하께서 문화예술을 관람 또는 참여를 결정하는데 주요한 정 |
| :--- | :--- |
| 보는 어디에서 얻으셨습니까? |

## 분석 결과

- 문화예술 관련 정보 획득경로를 질문한 결과, ‘자발적인 인터넷 사이 트(포털사이트, 티켓예매, 블로그 등) 검색'이라는 응답이 $59.7 \%$ 로 월 등히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신문, 잡지, 공연포스터 등' $17.9 \%$, '주 위 지인이나 동호회 등의 추천이나 권유' $16.1 \%$ 등으로 응답되었다. 한편 그 외 응답으로는 '공공기관의 알림서비스' $5.8 \%$, 'TV 등 방송' $0.4 \%$, '모름' $0.1 \%$ 등이 있었다.
대부분의 계층에서 '인터넷 사이트 검색’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중졸 이하 저학력층과 전업주부, 자영업 등의 경우 '신문, 잡지, 공연포스 터 등’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5> 문화예술 관련 정보 획득경로
(단위: 명, \%)

|  |  | 사례수 <br> (명) | 자발적인 <br> 인터넷 <br> 사이트 <br> 검 색 | 신 문, 잡 지, 공 연 포스터등 | 지인이나 <br> 동호회의 <br> 추천이 | $\begin{aligned} & \text { 공공기관 } \\ & \text { 홍보 또는 } \\ & \text { 알 림 } \\ & \text { 서비스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방 송 } \\ & \text { (TV 등) } \end{aligned}$ | 모 름 |
| :---: | :---: | :---: | :---: | :---: | :---: | :---: | :---: | :---: |
| 전 |  | (1000) | 59.7 | 17.9 | 16.1 | 5.8 | 0.4 | 0.1 |
| $\begin{aligned} & \text { 성 } \\ & \text { 별 } \end{aligned}$ | 남 자 | (514) | 62.5 | 17.1 | 12.5 | 7.4 | 0.6 | - |
|  | 여 자 | (486) | 56.8 | 18.7 | 20.0 | 4.1 | 0.2 | 0.2 |
| 연 <br> 령 <br> 별 | 19~29세 | (213) | 69.5 | 12.2 | 15.0 | 3.3 | - | - |
|  | 30~39세 | (233) | 73.0 | 11.2 | 10.3 | 5.2 | - | 0.4 |
|  | 40-49세 | (256) | 58.6 | 22.7 | 12.1 | 6.3 | 0.4 | - |
|  | $\begin{array}{ll} 50 & \text { 세 } \\ \text { 이 } & \text { 상 } \end{array}$ | (298) | 43.3 | 23.2 | 24.8 | 7.7 | 1.0 | - |
| 거 <br> 주 <br> 지 <br> 특 <br> 성 <br> 별 |  | (208) | 61.5 | 18.3 | 15.4 | 4.8 | - | - |
|  | 6 대 광역시 | (333) | 58.0 | 19.8 | 15.6 | 5.4 | 0.9 | 0.3 |
|  | 시 단위 | (380) | 59.5 | 17.4 | 16.3 | 6.6 | 0.3 | - |
|  | 군,면, 읍 | (79) | 63.3 | 11.4 | 19.0 | 6.3 | - | - |
| 학 <br> 력 <br> 별 | 중 졸 이 하 | (12) | 25.0 | 33.3 | 25.0 | 16.7 | - | - |
|  | 고 졸 | (212) | 55.7 | 16.0 | 20.8 | 7.5 | - | - |
|  | 대 졸 | (682) | 61.3 | 18.2 | 14.5 | 5.3 | 0.6 | 0.1 |
|  | 대학원 <br> 이 상 | (94) | 61.7 | 18.1 | 16.0 | 4.3 | - | - |


|  | 분 | 사례수 <br> (명) | 자발적인 <br> 인터넷 <br> 사이트 <br> 검 색 | $\begin{aligned} & \text { 신 문, } \\ & \text { 잡 지, } \\ & \text { 공 연 } \\ & \text { 포스터등 } \end{aligned}$ | 지인이나 <br> 동호회의 <br> 추천이 | 공공기관 <br> 홍보 또는 <br> 알 림 <br> 서비스 | $\begin{aligned} & \text { 방 송 } \\ & \text { (TV 등) } \end{aligned}$ | 모 름 |
| :---: | :---: | :---: | :---: | :---: | :---: | :---: | :---: | :---: |
| 직 <br> 업 <br> 별 | 전문직/ <br> 관리직 | (119) | 53.8 | 20.2 | 23.5 | 2.5 | - | - |
|  | 사무직 | (311) | 67.5 | 15.4 | 11.6 | 4.5 | 1.0 | - |
|  | 서비스/ <br> 판매직 | (63) | 61.9 | 14.3 | 15.9 | 7.9 | - | - |
|  | $\begin{gathered} \text { 생 산/ } \\ \text { 기 능/ } \\ \text { 단순노무 } \end{gathered}$ | (62) | 53.2 | 16.1 | 14.5 | 14.5 | 1.6 | - |
|  | 전업주부 | (168) | 44.0 | 25.6 | 22.0 | 7.7 | - | 0.6 |
|  | 자영업 | (89) | 48.3 | 23.6 | 18.0 | 10.1 | - | - |
|  | $\begin{array}{ll} \text { 농 업, } \\ \text { 임 업 } \end{array}$ | (7) | 71.4 | 14.3 | 14.3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구직중/ } \\ & \text { 무 직 } \end{aligned}$ | (46) | 67.4 | 8.7 | 23.9 | - | - | - |
|  | 기 타 | (135) | 72.6 | 14.1 | 9.6 | 3.7 | - | - |

(4) 관련 전문교육 수강경험

귀하께서는 문화예술의 감상 또는 참여를 위한 전문교육을 받 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래에서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 분석 결과

> 문화예술의 감상 및 참여를 위한 교육경험으로는 '대학이상 전공 내 지 교양과목' $22.0 \%$, ‘초중고 정규교과목' $16.1 \%$, '공공기관(주민센터, 구청, 시청 등) 제공의 교육’ $9.7 \%$, ‘사설학원, 과외 내지 문화센터 등 의 사교육, $5.3 \%$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그 외 기타 응답으로는 '부모님’ $0.1 \%$, '독서를 통한 학습' $0.1 \%$, '모 임' $0.1 \%$ 등이 있었다.
$>$ 한편 ‘받은 경험이 한 번도 없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59.1 \%$ 로 나 타났다.
<그림 IV-16> 관련 전문교육 수강경험
(단위: 명, \%)

<표 IV-26> 전문교육 수강기간 : 사설학원, 과외 내지 문화센터 등의 사교육
(단위: 명, \%)

| 구 |  | 사례수 <br> (명) | 1주 미만 | 1주 이상 - <br> 1개월 미만 | 1개월 이상 - <br> 3 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 :---: | :---: | :---: | :---: | :---: | :---: | :---: |
| 전 | 체 | (53) | 3.8 | 32.1 | 34.0 | 30.2 |
| 성 별 | 남 자 | (26) | 7.7 | 38.5 | 30.8 | 23.1 |
|  | 여 자 | (27) | - | 25.9 | 37.0 | 37.0 |
| 연령별 | 19~29세 | (11) | - | 45.5 | 36.4 | 18.2 |
|  | 30~39세 | (7) | - | 28.6 | 28.6 | 42.9 |
|  | 40~49세 | (20) | 5.0 | 45.0 | 35.0 | 15.0 |
|  | 50 세 이상 | (15) | 6.7 | 6.7 | 33.3 | 53.3 |
| 거 주 <br> 지역별 | 서 울 | (12) | 8.3 | 16.7 | 33.3 | 41.7 |
|  | 인천/경기 | (12) | - | 41.7 | 33.3 | 25.0 |
|  | 대전/세종/ 충 청 | (4) | - | 25.0 | 75.0 | - |
|  | 광주/전라 | (3) | 33.3 | 33.3 | 33.3 | - |
|  | 대구/경북 | (12) | - | 16.7 | 33.3 | 50.0 |
|  | 부산/울산/ 경 남 | (9) | - | 55.6 | 22.2 | 22.2 |
|  | 강원/제주 | (1) | - | 100.0 | - | - |
| $\begin{aligned} & \text { 거주지 } \\ & \text { 특성별 } \end{aligned}$ | 서울 거주 | (12) | 8.3 | 16.7 | 33.3 | 41.7 |
|  | 6 대 광역시 | (20) | - | 30.0 | 35.0 | 35.0 |
|  | 시 단위 | (15) | 6.7 | 40.0 | 33.3 | 20.0 |
|  | 군,면,읍 | (6) | - | 50.0 | 33.3 | 16.7 |

제 4 장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사회적 분석

| 구 분 |  | 사례수 <br> (명) | 1주 미만 | 1주 이상 - <br> 1개월 미만 | 1 개월 이상 - <br> 3 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 :---: | :---: | :---: | :---: | :---: | :---: | :---: |
| 학력별 | 고 졸 | (9) | - | 22.2 | 44.4 | 33.3 |
|  | 대 졸 | (41) | 2.4 | 34.1 | 34.1 | 29.3 |
|  | 대학원 이상 | (3) | 33.3 | 33.3 | - | 33.3 |
| 가 계 소득별 | $\begin{gathered} 100 \text { 만원 } \\ \text { 미 만 } \end{gathered}$ | (2) | - | - | 50.0 | 50.0 |
|  | $\begin{gathered} \text { 100~200 } \\ \text { 미 만 } \end{gathered}$ | (8) | - | 37.5 | 12.5 | 50.0 |
|  | $\begin{gathered} \text { 200~300 } \\ \text { 미 만 } \end{gathered}$ | (7) | - | 42.9 | 57.1 | - |
|  | $\begin{gathered} 300 ~ 400 \\ \text { 미 만 } \end{gathered}$ | (9) | - | 22.2 | 55.6 | 22.2 |
|  | $\begin{gathered} \text { 400~500 } \\ \text { 미 만 } \end{gathered}$ | (7) | 14.3 | 14.3 | 28.6 | 42.9 |
|  | 500만원 <br> 이 상 | (20) | 5.0 | 40.0 | 25.0 | 30.0 |
| 직업별 | 전문직/ <br> 관리직 | (11) | 9.1 | 45.5 | - | 45.5 |
|  | 사무직 | (16) | - | 31.3 | 43.8 | 25.0 |
|  | 서비스/ <br> 판매직 | (4) | - | 25.0 | 25.0 | 50.0 |
|  | 생산/기능/ <br> 단순노무 | (3) | - | - | 66.7 | 33.3 |
|  | 전업주부 | (7) | - | 42.9 | 28.6 | 28.6 |
|  | 자영업 | (5) | 20.0 | 20.0 | 40.0 | 20.0 |
|  | 농업, 임업 | (1) | - | - | 100.0 | - |
|  | 기 타 | (6) | - | 33.3 | 50.0 | 16.7 |

<표 IV-27> 전문교육 수강기간 : 공공기관(주민센터, 구청, 시청 등)의 교육
(단위: 명, \%)

|  | 분 | 사례수 <br> (명) | 1주 미만 | 1주 이상 - <br> 1개월 미만 | 1 개월 이상 - <br> 3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 :---: | :---: | :---: | :---: | :---: | :---: | :---: |
| 전 | 체 | (97) | 22.7 | 36.1 | 28.9 | 12.4 |
| 성 별 | 남 자 | (50) | 24.0 | 42.0 | 24.0 | 10.0 |
|  | 여 자 | (47) | 21.3 | 29.8 | 34.0 | 14.9 |
| 연령별 | 19~29 세 | (18) | 22.2 | 38.9 | 27.8 | 11.1 |
|  | 30~39세 | (13) | 7.7 | 53.8 | 23.1 | 15.4 |
|  | 40~49 세 | (30) | 26.7 | 40.0 | 23.3 | 10.0 |
|  | 50세 이상 | (36) | 25.0 | 25.0 | 36.1 | 13.9 |
| 거 주 지역별 | 서 울 | (19) | 31.6 | 10.5 | 42.1 | 15.8 |
|  | 인천/경기 | (29) | 27.6 | 24.1 | 34.5 | 13.8 |
|  | 대전/세종/ <br> 충 청 | (10) | 10.0 | 50.0 | 30.0 | 10.0 |
|  | 광주/전라 | (8) | 50.0 | 50.0 | - | - |
|  | 대구/경북 | (10) | - | 40.0 | 30.0 | 30.0 |
|  | $\begin{gathered} \text { 부산/울산/ } \\ \text { 경 남 } \end{gathered}$ | (18) | 16.7 | 61.1 | 16.7 | 5.6 |
|  | 강원/제주 | (3) | - | 66.7 | 33.3 | - |
| $\begin{aligned} & \text { 거주지 } \\ & \text { 특성별 } \end{aligned}$ | 서울 거주 | (19) | 31.6 | 10.5 | 42.1 | 15.8 |
|  | 6 대 광역시 | (34) | 20.6 | 52.9 | 11.8 | 14.7 |
|  | 시 단위 | (34) | 20.6 | 35.3 | 32.4 | 11.8 |
|  | 군,면, 읍 | (10) | 20.0 | 30.0 | 50.0 | - |

제 4 장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사회적 분석

| 구 분 |  | 사례수 <br> (명) | 1주 미만 | 1주 이상 - <br> 1 개월 미만 | 1 개월 이상 - <br> 3 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 :---: | :---: | :---: | :---: | :---: | :---: | :---: |
| 학력별 | 중졸 이하 | (2) | 100.0 | - | - | - |
|  | 고 졸 | (23) | 17.4 | 30.4 | 30.4 | 21.7 |
|  | 대 졸 | (65) | 16.9 | 41.5 | 30.8 | 10.8 |
|  | 대학원 이상 | (7) | 71.4 | 14.3 | 14.3 | - |
| $\begin{aligned} & \text { 가 계 } \\ & \text { 소득별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100만원 } \\ & \text { 미 만 } \end{aligned}$ | (4) | 50.0 | - | 25.0 | 25.0 |
|  | $\begin{gathered} \text { 100~200 } \\ \text { 미 만 } \end{gathered}$ | (16) | 25.0 | 37.5 | 18.8 | 18.8 |
|  | $\begin{gathered} \text { 200~300 } \\ \text { 미 만 } \end{gathered}$ | (12) | 8.3 | 83.3 | 8.3 | - |
|  | $\begin{gathered} 300 ~ 400 \\ \text { 미 만 } \end{gathered}$ | (22) | 22.7 | 45.5 | 22.7 | 9.1 |
|  | $\begin{gathered} \text { 400~500 } \\ \text { 미 만 } \end{gathered}$ | (20) | 35.0 | 20.0 | 35.0 | 10.0 |
|  | $\begin{aligned} & 500 \text { 만원 } \\ & \text { 이 상 } \end{aligned}$ | (23) | 13.0 | 21.7 | 47.8 | 17.4 |
| 직업별 | $\begin{aligned} & \text { 전문직/ } \\ & \text { 관리직 } \end{aligned}$ | (9) | 44.4 | 44.4 | 11.1 | - |
|  | 사무직 | (27) | 18.5 | 40.7 | 29.6 | 11.1 |
|  | 서비스/ 판매직 | (13) | 23.1 | 30.8 | 23.1 | 23.1 |
|  | $\begin{aligned} & \text { 생산/기능/ } \\ & \text { 단순노무 } \end{aligned}$ | (4) | - | 75.0 | 25.0 | - |
|  | 전업주부 | (21) | 28.6 | 23.8 | 33.3 | 14.3 |
|  | 자영업 | (12) | 8.3 | 41.7 | 25.0 | 25.0 |
|  | 농업, 임업 | (1) | - | - | 100.0 | - |
|  | 기 타 | (10) | 30.0 | 30.0 | 40.0 | - |

(5) 국민들 간 문화예술 향유의 차이

| 질 문 |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국민들 간에 문화예술을 누리는 <br> 정도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
| :--- | :--- |

분석 결과

- 우리 국민들 간에 문화예술 향유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응답이 $78.2 \%$ (매우 큰 차이 $32.4 \%$ + 어느 정도 차이 $45.8 \%$ )로 매우 높았으며, '차 이가 없다'는 응답은 $3.7 \%$ (별로 차이 없는 편 $3.6 \%$ + 전혀 차이 없 음 $0.1 \%$ )에 불과했다.
한편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18.1 \%$ 였다.
- ‘차이가 있다'는 응답은 전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직업별로는 화 이트칼라직종(사무직, 전문직 등)에서 전체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
<그림 IV-17> 국민들 간 문화예술 향유의 차이
(단위: 명, \%)

<표 IV-28> 국민들 간 문화예술 향유의 차이
(단위: 명, \%)

| 구 | 분 | 사례수 <br> (명) | 매우 큰 <br> 차이가 <br> 있 다 | 어 느 <br> 정 도 <br> 차이가 <br> 있 는 <br> 편이다 | 보 통 <br> 이 다 | 별 로 차이가 <br> 없 는 편이다 | 전 혀 <br> 차이가 <br> 없 다 | 차 이 <br> 있 음 | 차 이 없 음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 (1000) | 32.4 | 45.8 | 18.1 | 3.6 | 0.1 | 78.2 | 3.7 |
| 성 별 | 남 자 | (514) | 31.3 | 45.1 | 19.1 | 4.5 | - | 76.5 | 4.5 |
|  | 여 자 | (486) | 33.5 | 46.5 | 17.1 | 2.7 | 0.2 | 80.0 | 2.9 |
| 연령별 | 19~29세 | (213) | 28.6 | 42.7 | 22.5 | 5.6 | 0.5 | 71.4 | 6.1 |
|  | 30~39세 | (233) | 30.5 | 48.9 | 18.0 | 2.6 | - | 79.4 | 2.6 |
|  | 40~49세 | (256) | 34.4 | 46.5 | 16.8 | 2.3 | - | 80.9 | 2.3 |
|  | 50세 이상 | (298) | 34.9 | 45.0 | 16.1 | 4.0 | - | 79.9 | 4.0 |
| $\begin{aligned} & \text { 거 주 } \\ & \text { 지역별 } \end{aligned}$ | 서 울 | (208) | 32.7 | 44.2 | 19.7 | 3.4 | - | 76.9 | 3.4 |
|  | 인천/경기 | (299) | 30.4 | 49.5 | 16.7 | 3.0 | 0.3 | 79.9 | 3.3 |
|  | 대전/세종/ <br> 충 청 | (98) | 30.6 | 37.8 | 29.6 | 2.0 | - | 68.4 | 2.0 |
|  | 광주/전라 | (97) | 40.2 | 48.5 | 8.2 | 3.1 | - | 88.7 | 3.1 |
|  | 대구/경북 | (101) | 36.6 | 43.6 | 15.8 | 4.0 | - | 80.2 | 4.0 |
|  | 부산/울산/ <br> 경 남 | (159) | 27.0 | 47.8 | 19.5 | 5.7 | - | 74.8 | 5.7 |
|  | 강원/제주 | (38) | 42.1 | 36.8 | 15.8 | 5.3 | - | 78.9 | 5.3 |


| 구 | 분 | 사례수 <br> (명) | 매우 큰 <br> 차이가 <br> 있 다 | 어 느 <br> 정 도 <br> 차이가 <br> 있 는 <br> 편이다 | 보 통 <br> 이 다 | 별 로 <br> 차이가 <br> 없 는 <br> 편이다 | 전 혀 <br> 차이가 <br> 없 다 | 차 이 <br> 있 음 | 차 이 없 음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거주지 } \\ & \text { 특성별 } \end{aligned}$ | 서울 거주 | (208) | 32.7 | 44.2 | 19.7 | 3.4 | - | 76.9 | 3.4 |
|  | $\begin{gathered} 6 \text { 대 } \\ \text { 광역시 } \end{gathered}$ | (333) | 32.4 | 46.8 | 16.5 | 4.2 | - | 79.3 | 4.2 |
|  | 시 단위 | (380) | 33.2 | 45.0 | 19.2 | 2.4 | 0.3 | 78.2 | 2.6 |
|  | 군,면, 읍 | (79) | 27.8 | 49.4 | 15.2 | 7.6 | - | 77.2 | 7.6 |
| 학력별 | 중졸 이하 | (12) | 41.7 | 33.3 | 25.0 | - | - | 75.0 | - |
|  | 고 졸 | (212) | 28.3 | 45.8 | 22.2 | 3.3 | 0.5 | 74.1 | 3.8 |
|  | 대 졸 | (682) | 33.1 | 46.0 | 17.3 | 3.5 | - | 79.2 | 3.5 |
|  | 대학원 <br> 이 상 | (94) | 35.1 | 45.7 | 13.8 | 5.3 | - | 80.9 | 5.3 |
| 가 계 소득별 | $\begin{gathered} 100 \text { 만원 } \\ \text { 미 만 } \end{gathered}$ | (53) | 37.7 | 30.2 | 30.2 | 1.9 | - | 67.9 | 1.9 |
|  | $\begin{gathered} \text { 100~200 } \\ \text { 미 만 } \end{gathered}$ | (132) | 26.5 | 50.0 | 18.9 | 3.8 | 0.8 | 76.5 | 4.5 |
|  | $\begin{gathered} \text { 200~300 } \\ \text { 미 만 } \end{gathered}$ | (187) | 27.8 | 48.1 | 19.8 | 4.3 | - | 75.9 | 4.3 |
|  | $\begin{gathered} 300 ~ 400 \\ \text { 미 만 } \end{gathered}$ | (204) | 32.4 | 48.0 | 16.2 | 3.4 | - | 80.4 | 3.4 |
|  | $\begin{gathered} \text { 400~500 } \\ \text { 미 만 } \end{gathered}$ | (185) | 34.1 | 47.6 | 16.8 | 1.6 | - | 81.6 | 1.6 |
|  | 500만원 <br> 이 상 | (239) | 36.8 | 41.8 | 16.3 | 5.0 | - | 78.7 | 5.0 |


| 구 | 분 | 사례수 <br> (명) | 매우 큰 <br> 차이가 <br> 있 다 | 어 느 <br> 정 도 <br> 차이가 <br> 있 는 <br> 편이다 | 보 통 <br> 이 다 | 차이가 <br> 없 는 <br> 편이다 | 전 혀 <br> 차이가 <br> 없 다 | 차 이 <br> 있 음 | 차 이 <br> 없 음 |
| :---: | :---: | :---: | :---: | :---: | :---: | :---: | :---: | :---: | :---: |
| 직업별 | 전문직/ <br> 관리직 | (119) | 45.4 | 37.0 | 15.1 | 2.5 | - | 82.4 | 2.5 |
|  | 사무직 | (311) | 27.3 | 52.7 | 16.7 | 3.2 | - | 80.1 | 3.2 |
|  | 서비스/ <br> 판매직 | (63) | 23.8 | 49.2 | 19.0 | 7.9 | - | 73.0 | 7.9 |
|  | 생산/기능/ <br> 단순노무 | (62) | 25.8 | 54.8 | 16.1 | 3.2 | - | 80.6 | 3.2 |
|  | 전업주부 | (168) | 31.5 | 47.6 | 16.7 | 4.2 | - | 79.2 | 4.2 |
|  | 자영업 | (89) | 40.4 | 33.7 | 23.6 | 2.2 | - | 74.2 | 2.2 |
|  | 농업, 임업 | (7) | 42.9 | 28.6 | 14.3 | 14.3 | - | 71.4 | 14.3 |
|  | $\begin{gathered} \text { 구직 중/ } \\ \text { 무 직 } \end{gathered}$ | (46) | 30.4 | 41.3 | 26.1 | 2.2 | - | 71.7 | 2.2 |
|  | 기 타 | (135) | 35.6 | 40.0 | 20.0 | 3.7 | 0.7 | 75.6 | 4.4 |

(6) 국민들 사이의 문화예술 향유정도 차이발생 원인

| 질 문 | 국민들 간에 문화예술을 누리는 정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br> 주요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 :--- | :--- |

문화예술 향유에 차이가 생기는 원인(1순위 응답 기준)으로 '경제력과 학력'이라는 응답이 $54.5 \%$ 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개개 인의 관심과 성향’이 $33.3 \%$ 로 뒤를 이었다.

그 외 응답으로는 ‘지역' $7.7 \%$, '성별(남여)' $2.6 \%$, '연령' $1.8 \%$, '정보 력, $0.1 \%$ 등이 제기되었다.
> $1+2+3$ 순위를 합산한 경우에도 '경제력과 학력', '개개인의 관심과 성 향’이 다른 응답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 한편 군,면,읍 지역 거주자의 경우 ‘지역’이라는 응답의 비중이 전체 평균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그림 IV-18> 국민들 사이의 문화예술 향유정도 차이발생 원인
(단위: 명, \%)


## 2. 문화예술진흥법 관련

(1) 문화예술진흥법 인지여부

| 질 문 | 귀하께서는 위에서 소개한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해 본 조사 <br> 이전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
| :--- | :--- |

분석 결과

-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인지여부를 질문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 이 $40.8 \%$ (매우 잘 $1.9 \%+$ 대충 $38.9 \%$ ), '알지 못 한다'는 응답이 $59.2 \%$ (잘 몰랐다 $47.2 \%$ + 전혀 $12.0 \%$ )로 각각 나타났다.
- '알고 있다'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 및 소득이 높을수록 높 게 나타나며, 직업별로 살펴보면 화이트칼라 직군(사무직, 전문직 등) 에서 특히 높은 편이었다.
<그림 IV-19> 문화예술진흥법 인지여부
(단위: 명, \%)

(2) 문화예술진흥법의 법률명 및 목적에 대한 이해수준

앞서 보여드린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이라는 법률의 이름과 제 1 조의 목적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초적인 법으로 '국민'의 '문화 예술복지의 증진'을 규정하고 있다고 이해하시기 어려우신가 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 분석 결과

'문화예술진흥법'의 이름과 목적(제1조)에 대한 이해수준에 대해 질문 한 결과, '쉽게 이해 가능하다'는 응답(1)+(2)+(3))의 합계는 $31.6 \%$, '이 해가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다'는 응답은 $48.3 \%$, '전문지식이 필요하 다'는 응답의 합계(5)+(6)+(7))는 $20.1 \%$ 로 각각 나타났다.
$>$ 이를 7 점 기준의 평점으로 환산할 경우 4.25 점(100점 기준으로는 60.7 점)이었다.
<그림 IV-20> 문화예술진흥법의 법률명 및 목적에 대한 이해수준
(단위: 명, \%)

(3) 문화예술진흥법 관련 인식

위의 '문화예술진흥법'의 이름과 제1조(목적)를 읽으시고, 다음
의 질문에 대해 느끼시는 대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 읽기에 매끄럽다

질 문

- 문장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
- 전문용어의 사용이 적고, 설명을 잘 하고 있다
- 국민의 문화적 복지에 대한 권리와 국가의 의무에 관하여 자 세히 규정하고 있다


## 분석 결과

문화예술진흥법의 제 1 조(목적)를 소개한 후 느낌을 평가하게 한 결과, '전문용어의 사용이 적고, 설명을 잘 하고 있다'의 긍정평가가 $32.5 \%$ (평점 3.97점)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읽기에 매끄럽다' $29.6 \%$ (평점 3.94점), ‘문장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 $25.1 \%$ (평점 3.75점), '국민의 문화적 복지에 대한 권리와 국가의 의무에 관하여 자세히 규 정하고 있다, $24.4 \%$ (평점 3.7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1> 문화예술진흥법 관련 인식
(단위: 명, \%)

(4) 관련 규정 인지 여부 :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규정 귀하께서는 문화예술진흥법이 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문 질 문 화예술 활동의 지원 규정에 대해 본 조사 이전에 들어보신 적 이 있습니까?

분석 결과

문화예술진흥법의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규정 인지도 는 $24.8 \%$ (매우 잘 $2.0 \%+$ 대충 $22.8 \%$ )였으며, ‘알지 못 한다'는 응답 은 $75.2 \%$ (잘 몰랐다 $55.2 \%$ + 전혀 $20.0 \%$ )로 나타났다.
<그림 IV-22> 관련 규정 인지 여부 :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규정
(단위: 명, \%)

(5) 관련 규정 인지 여부 :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 문
귀하께서는 문화예술진흥법이 정하고 있는 '문화 소외계층을 위 한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대해 알고 계십 니까?

분석 결과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규정에 대한 인지도는 $26.7 \%$ (매우 잘 $2.0 \%$ + 대충 $24.7 \%$ )였으며, '알지 못 한다'는 응답은 $73.3 \%$ (잘 몰랐다 $52.9 \%$ + 전혀 $20.4 \%$ )로 나타났다.
<그림 IV-23> 관련 규정 인지 여부 :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단위: 명, \%)

(6) 주요 제도별 직접 참여경험

위에서 설명드린 문화예술진흥법의 국민을 위한 제도들 중에
질 문 서, 직접 참여하거나 경험해보신 것이 있으시다면 모두 골라주 십시오. (중복응답)

## 분석 결과

$>$ 문화예술진흥법의 국민을 위한 제도들 중 참여경험이 있는 것으로는 '도서문화를 전용으로 하는 도서문화전용상품권의 사용'이 $49.0 \%$ 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예 술회관 등의 문화강좌' $21.3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고한 학교 및 직장 내 문화예술 단체의 활동' $15.4 \%$, '매년 10 월인 '문화의 달' 또는 매년 10 월 셋째 주 토요일인 '문화의 날'에 시행하는 문화행사' $8.7 \%$ 등이 뒤를 이었다.
$>$ 그 외 기타응답으로는 '시 주관 공연/지방자치단체 초청 공연' $0.2 \%$, '무료 영화이용' $0.1 \%$, '문화 바우처' $0.1 \%$ 등이 있었으며, '없음’이라 는 응답은 $20.8 \%$ 였다.

## <그림 IV-24> 주요 제도별 직접 참여경험

(단위: 명, \%)

<표 IV-29> 주요 제도별 직접 참여경험
(단위: 명, \%)

|  | 분 | 사례수 <br> (명) | 도서문화 전용상품권 사 용 | 문화예술 <br> 회관 등의 <br> '문화강좌' | 직장 내 문화예술 활동단체의 활 동 | ‘문화의 날’에 <br> 시행하는 문화행사 |
| :---: | :---: | :---: | :---: | :---: | :---: | :---: |
|  | 체 | (1000) | 49.0 | 21.3 | 15.4 | 8.7 |
| 성 별 | 남 자 | (514) | 48.6 | 21.4 | 17.5 | 8.0 |
|  | 여 자 | (486) | 49.4 | 21.2 | 13.2 | 9.5 |
| 연령별 | 19~29세 | (213) | 52.6 | 19.7 | 16.0 | 8.9 |
|  | 30~39세 | (233) | 51.5 | 17.6 | 15.0 | 6.4 |
|  | 40~49세 | (256) | 50.0 | 23.8 | 14.1 | 8.6 |
|  | 50세 이상 | (298) | 43.6 | 23.2 | 16.4 | 10.4 |
| 거 주 지역별 | 서 울 | (208) | 47.6 | 24.0 | 17.8 | 13.0 |
|  | 인천/경기 | (299) | 49.5 | 17.7 | 13.0 | 8.4 |
|  | 대전/세종/충청 | (98) | 44.9 | 25.5 | 16.3 | 8.2 |
|  | 광주/전라 | (97) | 57.7 | 21.6 | 13.4 | 5.2 |
|  | 대구/경북 | (101) | 55.4 | 24.8 | 15.8 | 6.9 |
|  | 부산/울산/경남 | (159) | 46.5 | 21.4 | 17.0 | 7.5 |
|  | 강원/제주 | (38) | 34.2 | 13.2 | 15.8 | 7.9 |
| $\begin{aligned} & \text { 거주지 } \\ & \text { 특성별 } \end{aligned}$ | 서울 거주 | (208) | 47.6 | 24.0 | 17.8 | 13.0 |
|  | 6대 광역시 | (333) | 49.2 | 19.2 | 15.9 | 6.0 |
|  | 시 단위 | (380) | 50.3 | 20.3 | 14.5 | 7.9 |
|  | 군,면,읍 | (79) | 45.6 | 27.8 | 11.4 | 12.7 |


|  | 구 분 | 사례수 <br> (명) | 도서문화 <br> 전용상품권 <br> 사 용 | 문화예술 <br> 회관 등의 <br> '문화강좌’ | 직장 내 문화예술 활동단체의 활 동 | ‘문화의 날’에 <br> 시행하는 <br> 문화행사 |
| :---: | :---: | :---: | :---: | :---: | :---: | :---: |
| 학력별 | 중졸 이하 | (12) | 41.7 | 16.7 | 8.3 | 33.3 |
|  | 고 졸 | (212) | 46.7 | 15.6 | 12.7 | 8.5 |
|  | 대 졸 | (682) | 49.7 | 22.7 | 16.3 | 8.5 |
|  | 대학원 이상 | (94) | 50.0 | 24.5 | 16.0 | 7.4 |
| 가 계 소득별 | 100만원 미만 | (53) | 39.6 | 18.9 | 11.3 | 9.4 |
|  | 100~200 미만 | (132) | 52.3 | 15.2 | 12.9 | 10.6 |
|  | 200~300 미만 | (187) | 44.9 | 21.4 | 17.1 | 9.6 |
|  | 300~400 미만 | (204) | 46.6 | 22.1 | 13.2 | 5.9 |
|  | 400~500 미만 | (185) | 54.1 | 21.6 | 14.6 | 5.4 |
|  | 500만원 이상 | (239) | 50.6 | 24.3 | 18.8 | 11.7 |
| 직업별 | 전문직/관리직 | (119) | 55.5 | 21.0 | 17.6 | 7.6 |
|  | 사무직 | (311) | 47.3 | 21.5 | 19.3 | 10.3 |
|  | 서비스/판매직 | (63) | 44.4 | 27.0 | 11.1 | 7.9 |
|  | 생산/기능/ <br> 단순노무 | (62) | 53.2 | 17.7 | 14.5 | 8.1 |
|  | 전업주부 | (168) | 44.0 | 19.0 | 13.7 | 8.9 |
|  | 자영업 | (89) | 48.3 | 30.3 | 14.6 | 12.4 |
|  | 농업, 임업 | (7) | 42.9 | 28.6 | 14.3 | - |
|  | 구직 중/무직 | (46) | 63.0 | 10.9 | 4.3 | 2.2 |
|  | 기 타 | (135) | 49.6 | 20.0 | 13.3 | 6.7 |

<표 IV-30> 주요 제도별 직접 참여경험(계속)
(단위: 명, \%)

|  | 분 | 사례수 <br> (명) | 시 주관 공연/ 지방 자치단체 초청공연 | 무 료 <br> 영 화 <br> 이 용 | 문 화 바우처 | 없 음 |
| :---: | :---: | :---: | :---: | :---: | :---: | :---: |
|  | 체 | (1000) | 0.2 | 0.1 | 0.1 | 20.8 |
| 성 별 | 남 자 | (514) | 0.2 | - | 0.2 | 20.6 |
|  | 여 자 | (486) | 0.2 | 0.2 | - | 21.0 |
| 연령별 | 19~29세 | (213) | - | - | - | 18.3 |
|  | 30~39세 | (233) | 0.4 | - | - | 21.5 |
|  | 40~49세 | (256) | - | 0.4 | 0.4 | 22.7 |
|  | 50세 이상 | (298) | 0.3 | - | - | 20.5 |
| $\begin{aligned} & \text { 거 주 } \\ & \text { 지역별 } \end{aligned}$ | 서 울 | (208) | - | - | - | 17.8 |
|  | 인천/경기 | (299) | 0.3 | - | - | 23.4 |
|  | 대전/세종/충청 | (98) | - | - | - | 18.4 |
|  | 광주/전라 | (97) | - | - | 1.0 | 15.5 |
|  | 대구/경북 | (101) | - | - | - | 18.8 |
|  | 부산/울산/경남 | (159) | - | - | - | 21.4 |
|  | 강원/제주 | (38) | 2.6 | 2.6 | - | 39.5 |
| $\begin{aligned} & \text { 거주지 } \\ & \text { 특성별 } \end{aligned}$ | 서울 거주 | (208) | - | - | - | 17.8 |
|  | 6대 광역시 | (333) | - | - | - | 21.6 |
|  | 시 단위 | (380) | 0.3 | 0.3 | - | 23.4 |
|  | 군,면, 읍 | (79) | 1.3 | - | 1.3 | 12.7 |


|  | 구 분 | 사례수 <br> (명) | 시 주관 공연/ 지방 자치단체 초청공연 | 무 료 <br> 영 화 <br> 이 용 | 문 화 <br> 바우처 | 없 음 |
| :---: | :---: | :---: | :---: | :---: | :---: | :---: |
| 학력별 | 중졸 이하 | (12) | - | - | - | 8.3 |
|  | 고 졸 | (212) | 0.5 | - | - | 27.8 |
|  | 대 졸 | (682) | 0.1 | 0.1 | 0.1 | 19.6 |
|  | 대학원 이상 | (94) | - | - | - | 14.9 |
| $\begin{aligned} & \text { 가 계 } \\ & \text { 소득별 } \end{aligned}$ | 100만원 미만 | (53) | - | - | 1.9 | 32.1 |
|  | 100~200 미만 | (132) | 0.8 | - | - | 25.8 |
|  | 200~300 미만 | (187) | - | 0.5 | - | 19.3 |
|  | 300~400 미만 | (204) | 0.5 | - | - | 21.6 |
|  | 400~500 미만 | (185) | - | - | - | 19.5 |
|  | 500 만원 이상 | (239) | - | - | - | 17.2 |
| 직업별 | 전문직/관리직 | (119) | - | - | - | 14.3 |
|  | 사무직 | (311) | - | - | - | 19.0 |
|  | 서비스/판매직 | (63) | - | - | - | 23.8 |
|  | 생산/기능/ 단순노무 | (62) | - | - | - | 21.0 |
|  | 전업주부 | (168) | 0.6 | - | - | 23.8 |
|  | 자영업 | (89) | - | - | - | 23.6 |
|  | 농업, 임업 | (7) | - | - | - | 14.3 |
|  | 구직 중/무직 | (46) | - | - | - | 28.3 |
|  | 기 타 | (135) | 0.7 | 0.7 | 0.7 | 21.5 |

(7) 문화복지 서비스 범위 및 내용 적절성

위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은 문화예술진흥법이 ‘국민 전체’에게 질 문 보장하는 문화복지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은 충분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분석 결과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복지 서비스와 관련하여,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 는 응답이 $78.2 \%$ (대폭 $44.8 \%$ + 소폭 $33.4 \%$ )로 월등히 높았으며, '지금 보다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2.2 \%$ (소폭 $1.2 \%+$ 대폭 $1.0 \%$ )에 그쳤다.
한편 ‘적절하다'는 응답은 $12.4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2 \%$ 로 각각 나타났다.
<그림 IV-25> 문화복지 서비스 범위 및 내용 적절성
(단위: 명, \%)

(8) 문화복지 서비스 확대방향

```
질 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복지 서비스를 어떤 방향으로 늘리 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분석 결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복지 서비스 확대 방향에 대해 '범위 확대 (전체 국민들이 보다 문화예술을 가깝게 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폭넓 은 기회를 제공)'가 $79.2 \%$ 로 매우 높은 편이며, '내용 중심(실질적으 로 문화예술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깊이있는 서비스를 제 공)'은 $20.1 \%$ 였다.
$>$ 그 외로는 '두 가지 방법 모두 필요' $0.4 \%$, '대상에 맞는 맞춤형식 서 비스 제공' $0.1 \%$, '관심있는 저소득층에게 서비스 제공' $0.1 \%$, '모름' $0.1 \%$ 등이었다.

> <그림 IV-26> 문화복지 서비스 확대방향
(단위: 명, \%)

<표 IV-31> 문화복지 서비스 확대방향
(단위: 명, \%)

| 구 | 분 | 사례수 <br> (명) | 폭넓은 <br> 기회를 <br> 제 공 <br> (범 위 <br> 확 대) | 깊이있는 <br> 서비스를 <br> 제 공 <br> (내용중심) | 두 가지 <br> 방 법 <br> 모 두 <br> 필 요 | 맞 춤 <br> 형 식 <br> 서비스 <br> 제 공 | 저소득 <br> 층에게 <br> 서비스 <br> 제 공 | 모름 |
| :---: | :---: | :---: | :---: | :---: | :---: | :---: | :---: | :---: |
| 전 | 체 | (1000) | 79.2 | 20.1 | 0.4 | 0.1 | 0.1 | 0.1 |
| 성 별 | 남 자 | (514) | 76.1 | 23.7 | 0.3 | - | - | - |
|  | 여 자 | (486) | 82.3 | 16.4 | 0.5 | 0.3 | 0.3 | 0.3 |
| 연령별 | 19~29세 | (213) | 80.7 | 17.5 | 1.2 | - | 0.6 | - |
|  | 30~39세 | (233) | 76.5 | 23.0 | 0.5 | - | - | - |
|  | 40~49세 | (256) | 78.9 | 20.6 | - | 0.5 | - | - |
|  | 50세 이상 | (298) | 80.4 | 19.1 | - | - | - | 0.4 |
| $\begin{aligned} & \text { 거 주 } \\ & \text { 지역별 } \end{aligned}$ | 서 울 | (208) | 70.8 | 28.0 | 0.6 | 0.6 | - | - |
|  | 인천/경기 | (299) | 80.8 | 17.9 | 0.9 | - | 0.4 | - |
|  | 대전/세종/ <br> 충 청 | (98) | 77.5 | 22.5 | - | - | - | - |
|  | 광주/전라 | (97) | 89.2 | 9.6 | - | - | - | 1.2 |
|  | 대구/경북 | (101) | 83.1 | 16.9 | - | - | - | - |
|  | $\begin{gathered} \text { 부산/울산/ } \\ \text { 경 남 } \end{gathered}$ | (159) | 77.0 | 23.0 | - | - | - | - |
|  | 강원/제주 | (38) | 88.9 | 11.1 | - | - | - | - |


| $\begin{array}{c}\text { 구 } \\ \text { 분 }\end{array}$ | $\begin{array}{c}\text { 사례수 } \\ \text { (명) }\end{array}$ | $\begin{array}{c}\text { 폭넓은 } \\ \text { 기회를 } \\ \text { 제 공 } \\ \text { (범 위 } \\ \text { 확 대) }\end{array}$ | $\begin{array}{c}\text { 깊이있는 } \\ \text { 서비스를 } \\ \text { 제 공 } \\ \text { (내용중심) }\end{array}$ | $\begin{array}{c}\text { 두 가지 } \\ \text { 방 법 } \\ \text { 모 두 } \\ \text { 필 요 }\end{array}$ | $\begin{array}{c}\text { 맞 춤 } \\ \text { 형 식 } \\ \text { 서비스 } \\ \text { 제 공 }\end{array}$ | $\begin{array}{c}\text { 저소득 } \\ \text { 층에게 } \\ \text { 서비스 } \\ \text { 제 공 }\end{array}$ | 모름 |
| :---: | :---: | :---: | :---: | :---: | :---: | :---: | :---: |$]$

제 4 장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사회적 분석

| 구 | 분 | 사례수 <br> (명) | 폭넓은 <br> 기회를 <br> 제 공 <br> (범 위 <br> 확 대) | 깊이있는 <br> 서비스를 <br> 제 공 <br> (내용중심) | 두 가지 <br> 방 법 <br> 모 두 <br> 필 요 | 맞 춤 형 식 서비스 제 공 | 저소득 <br> 층에게 <br> 서비스 <br> 제 공 | 모 름 |
| :---: | :---: | :---: | :---: | :---: | :---: | :---: | :---: | :---: |
| 직업별 | 전문직/ <br> 관리직 | (119) | 85.9 | 14.1 | - | - | - | - |
|  | 사무직 | (311) | 73.0 | 26.6 | - | - | - | 0.4 |
|  | $\begin{aligned} & \text { 서비스/ } \\ & \text { 판매직 } \end{aligned}$ | (63) | 72.0 | 26.0 | 2.0 | - | - | - |
|  | 생산/기능/ <br> 단순노무 | (62) | 81.3 | 16.7 | 2.1 | - | - | - |
|  | 전업주부 | (168) | 84.6 | 14.6 | - | 0.8 | - | - |
|  | 자영업 | (89) | 74.6 | 25.4 | - | - | - | - |
|  | 농업, 임업 | (7) | 42.9 | 57.1 | - | - | - | - |
|  | $\begin{gathered} \text { 구직 중/ } \\ \text { 무 직 } \end{gathered}$ | (46) | 80.0 | 20.0 | - | - | - | - |
|  | 기 타 | (135) | 87.6 | 10.5 | 1.0 | - | 1.0 | - |

(9) 향후 중점 추진 사항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이 정하고 있는 문화복지 제도 중에서, '국 민'전반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이 무엇이라 생각하 십니까? 다음 보기를 읽어보시고 가장 마음에 드시는 한 가지 만 골라 주십시오.

## 분석 결과

-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문화강좌 설치 및 지원 확대' $16.8 \%$, '직장 및 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16.5 \%$,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이용권 지급 확대' $14.4 \%$ 등이 높게 응답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문화의 날 및 문화 의 달 설정 및 활성화' $9.6 \%$, '도서•문화 상품권 인증 및 사용 촉진' $8.6 \%$, '예술인에 대한 복지증진' $5.1 \%$,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3.9 \%$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표 IV-32> 향후 중점 추진 사항
(단위: 명, \%)

|  |  | 사례수 <br> (명) | 문화산업 <br> 육성과 <br> 지원 확대 | 문화강좌 <br> 설치 및 <br> 지원 확대 | 직장 . <br> 학교에 <br> 문화예술 <br> 진 흥 | 소외계층에 <br> 문화이용권 <br> 지급 확대 |
| :---: | :---: | :---: | :---: | :---: | :---: | :---: |
| 전 |  | (1000) | 18.6 | 16.8 | 16.5 | 14.4 |
| 성 별 | 남 자 | (514) | 21.2 | 10.7 | 18.7 | 14.8 |
|  | 여 자 | (486) | 15.8 | 23.3 | 14.2 | 14.0 |
| 연령별 | 19~29세 | (213) | 20.7 | 9.9 | 23.0 | 6.6 |
|  | 30~39세 | (233) | 18.5 | 16.3 | 21.0 | 14.6 |
|  | 40~49세 | (256) | 19.9 | 19.5 | 15.6 | 16.4 |
|  | 50 세 이상 | (298) | 16.1 | 19.8 | 9.1 | 18.1 |
| $\begin{aligned} & \text { 거주지 } \\ & \text { 특성별 } \end{aligned}$ | 서울 거주 | (208) | 16.3 | 18.8 | 18.8 | 12.5 |
|  | 6대 광역시 | (333) | 16.8 | 16.5 | 15.6 | 15.6 |
|  | 시 단위 | (380) | 21.8 | 15.5 | 15.8 | 13.7 |
|  | 군,면,읍 | (79) | 16.5 | 19.0 | 17.7 | 17.7 |

제 4 장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사회적 분석

| 구 분 |  | 사례수 <br> (명) | 문화산업 <br> 육성과 <br> 지원 확대 | 문화강좌 <br> 설치 및 <br> 지원 확대 | 직장 - <br> 학교에 <br> 문화예술 <br> 진 흥 | 소외계층에 <br> 문화이용권 <br> 지급 확대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가 계 } \\ & \text { 소득별 } \end{aligned}$ | 100만원 미만 | (53) | 11.3 | 13.2 | 17.0 | 15.1 |
|  | 100~200 미만 | (132) | 12.9 | 14.4 | 17.4 | 19.7 |
|  | 200~300 미만 | (187) | 15.5 | 17.6 | 13.9 | 17.1 |
|  | 300~400 미만 | (204) | 22.1 | 15.2 | 17.6 | 14.7 |
|  | 400~500 미만 | (185) | 20.5 | 20.0 | 14.6 | 8.6 |
|  | 500만원 이상 | (239) | 21.3 | 17.2 | 18.4 | 13.4 |

<표 IV-33> 향후 중점 추진 사항(계속)
(단위: 명, \%)

| 7 |  | 사례수 <br> (명) | 문화의 날 <br> 및 문화의 <br> 달 설정 <br> 및 활성화 | 도서•문화 <br> 상품권 인증 <br> 및 사용촉진 | 예술인에 <br> 대 한 <br> 복지증진 | 장애인에 <br> 대한 문화 <br> 예술 활동 <br> 지 원 | 문화의 <br> 다양화 |
| :---: | :---: | :---: | :---: | :---: | :---: | :---: | :---: |
| 전 | 체 | (1000) | 9.6 | 8.6 | 5.1 | 3.9 | 0.2 |
| 성 별 | 남 자 | (514) | 11.1 | 8.2 | 4.9 | 3.5 | 0.2 |
|  | 여 자 | (486) | 8.0 | 9.1 | 5.3 | 4.3 | 0.2 |
| 연렁별 | 19~29세 | (213) | 12.7 | 8.0 | 7.5 | 4.2 | 0.5 |
|  | 30~39세 | (233) | 9.0 | 6.9 | 3.9 | 3.0 | - |
|  | 40~49서 | (256) | 8.2 | 7.4 | 5.1 | 3.1 | 0.4 |
|  | 50세 이상 | (298) | 9.1 | 11.4 | 4.4 | 5.0 | - |


|  | 분 | 사례수 <br> (명) | 문화의 날 <br> 및 문화의 <br> 달 설정 <br> 및 활성화 | 도서•문화 <br> 상품권 인증 <br> 및 사용촉진 | 예술인에 <br> 대 한 <br> 복지증진 | 장애인에 <br> 대한 문화 <br> 예술 활동 <br> 지 원 | 문화의 <br> 다양화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거주지 } \\ & \text { 특성별 } \end{aligned}$ | 서울 거주 | (208) | 14.4 | 7.7 | 3.8 | 4.3 | - |
|  | 6대 광역시 | (333) | 9.0 | 10.8 | 5.1 | 4.2 | - |
|  | 시 단위 | (380) | 7.9 | 7.1 | 6.1 | 3.7 | 0.3 |
|  | 군,면, 읍 | (79) | 7.6 | 8.9 | 3.8 | 2.5 | 1.3 |
| 가 계 소득별 | $\begin{gathered} \text { 100만원 } \\ \text { 미 만 } \end{gathered}$ | (53) | 9.4 | 15.1 | 3.8 | 1.9 | - |
|  | $\begin{gathered} \text { 100~200 } \\ \text { 미 만 } \end{gathered}$ | (132) | 9.1 | 9.8 | 6.8 | 3.0 | 0.8 |
|  | $\begin{gathered} \text { 200~300 } \\ \text { 미 만 } \end{gathered}$ | (187) | 9.6 | 10.7 | 4.8 | 5.3 | - |
|  | $\begin{gathered} 300 ~ 400 \\ \text { 미 만 } \end{gathered}$ | (204) | 8.8 | 6.9 | 4.4 | 4.4 | - |
|  | $\begin{gathered} 400 \sim 500 \\ \text { 미 만 } \end{gathered}$ | (185) | 13.5 | 8.6 | 4.9 | 3.8 | 0.5 |
|  | $\begin{gathered} 500 \text { 만원 } \\ \text { 이 상 } \end{gathered}$ | (239) | 7.5 | 6.3 | 5.4 | 3.3 | - |

제 4 장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사회적 분석
<표 IV-34> 향후 중점 추진 사항(계속)
(단위: 명, \%)

| T | 분 | 사례수 <br> (명) | 상시 공연 <br> 확 대 | $\begin{gathered} \text { 접촉 기회의 } \\ \text { 균 등 } \end{gathered}$ | $\begin{aligned} & \text { 공 연 } \\ & \text { 장 소 } \end{aligned}$ | 모 두 | $\begin{gathered} \text { 마음에 } \\ \text { 드는 것이 } \\ \text { 없 음 } \end{gathered}$ |
| :---: | :---: | :---: | :---: | :---: | :---: | :---: | :---: |
| 전 | 체 | (1000) | 0.1 | 0.1 | 0.1 | 0.1 | 5.9 |
| 성 별 | 남 자 | (514) | 0.2 | 0.2 | - | 0.2 | 6.2 |
|  | 여 자 | (486) | - | - | 0.2 | - | 5.6 |
| 연렁별 | 19~29세 | (213) | - | 0.5 | - | - | 6.6 |
|  | 30~39세 | (233) | 0.4 | - | - | 0.4 | 6.0 |
|  | 40~49세 | (256) | - | - | - | - | 4.3 |
|  | 50세 이상 | (298) | - | - | 0.3 | - | 6.7 |
| $\begin{aligned} & \text { 거주지 } \\ & \text { 특성별 } \end{aligned}$ | 서울 거주 | (208) | - | - | - | - | 3.4 |
|  | 6 대 광역시 | (333) | - | - | 0.3 | - | 6.0 |
|  | 시 단위 | (380) | - | 0.3 | - | 0.3 | 7.6 |
|  | 군,면, 읍 | (79) | 1.3 | - | - | - | 3.8 |
| 가 계 소득별 | $\begin{gathered} \text { 100만원 } \\ \text { 미 만 } \end{gathered}$ | (53) | - | - | - | - | 13.2 |
|  | $\begin{gathered} \text { 100~200 } \\ \text { 미 만 } \end{gathered}$ | (132) | 0.8 | - | - | - | 5.3 |
|  | $\begin{gathered} \text { 200~300 } \\ \text { 미 만 } \end{gathered}$ | (187) | - | 0.5 | - | - | 4.8 |
|  | $\begin{gathered} \text { 300~400 } \\ \text { 미 만 } \end{gathered}$ | (204) | - | - | - | - | 5.9 |


|  |  | 사례수 <br> (명) | 상시 공연 <br> 확 대 | $\begin{gathered} \text { 접촉 기회의 } \\ \text { 균 등 } \end{gathered}$ | $\begin{aligned} & \text { 공 연 } \\ & \text { 장 소 } \end{aligned}$ | 모 두 | $\begin{gathered} \text { 마음에 } \\ \text { 드는 것이 } \\ \text { 없 음 } \end{gathered}$ |
| :---: | :---: | :---: | :---: | :---: | :---: | :---: | :---: |
|  | $\begin{gathered} \text { 400~500 } \\ \text { 미 만 } \end{gathered}$ | (185) | - | - | - | - | 4.9 |
|  | $\begin{aligned} & 500 \text { 만원 } \\ & \text { 이 상 } \end{aligned}$ | (239) | - | - | 0.4 | 0.4 | 6.3 |

3. 문화예술 복지 관련 법제화 관련
(1) 법제화가 필요한 문화복지 서비스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문화예술분야의 복지를 위해 국민에게
질 문 가장 필요한 구체적인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음 보기 중에서 법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을 한 가 지만 골라주세요.

## 분석 결과

-법으로 지정되어야 할 서비스로 '전 국민 대상 문화예술 관련 강좌 및 교육의 보급' $28.9 \%$, '전 국민에게 문화이용권 지급' $26.4 \%$, '장애 인이나 예술인뿐 아니라 국민 전반의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26.1 \%$, '문화의 날 등의 지정과 문화행사 이벤트' $16.6 \%$ 등의 순으로 높게 응답되었다.
$>$ 그 외 기타응답으로는 '공휴일 지정/시간적인 여유 필요', '문화공연 시설 확충', '공연비용 인하', '전 국민 대상으로 하되 신청자에 한하 여 지급', '저소득층 예술창작인 지원', '소외계층 지원 학교 교육', '지 원 축소' 등이 있었다.
<표 IV-35> 필요한 문화복지 서비스
(단위: 명, \%)

|  |  | 사례수 <br> (명) | 전 국민 대상 문화 예술 관련 강좌 및 교육보급 | 전 국민에게 <br> 문화이용권 <br> 지 급 | 국 민 전반의 문화예술 활동의 지 원 | 문화의 날 등의 지정과 문화행사 이벤트 |
| :---: | :---: | :---: | :---: | :---: | :---: | :---: |
|  | 체 | (1000) | 28.9 | 26.4 | 26.1 | 16.6 |
| 성 별 | 남 자 | (514) | 27.0 | 26.5 | 26.3 | 17.5 |
|  | 여 자 | (486) | 30.9 | 26.3 | 25.9 | 15.6 |
| 연령별 | 19~29세 | (213) | 23.9 | 23.0 | 30.0 | 20.7 |
|  | 30~39세 | (233) | 24.5 | 28.3 | 27.9 | 17.2 |
|  | 40~49세 | (256) | 33.2 | 25.4 | 24.2 | 14.5 |
|  | 50세 이상 | (298) | 32.2 | 28.2 | 23.5 | 15.1 |
| $\begin{aligned} & \text { 거주지 } \\ & \text { 특성별 } \end{aligned}$ | 서울 거주 | (208) | 29.8 | 26.0 | 26.4 | 16.8 |
|  | 6대 광역시 | (333) | 30.6 | 23.7 | 27.6 | 15.9 |
|  | 시 단위 | (380) | 28.4 | 26.1 | 25.8 | 17.1 |
|  | 군,면,읍 | (79) | 21.5 | 40.5 | 20.3 | 16.5 |
| 학력별 | 중졸 이하 | (12) | 25.0 | 25.0 | 50.0 | - |
|  | 고 졸 | (212) | 25.9 | 30.7 | 22.6 | 18.9 |
|  | 대 졸 | (682) | 29.9 | 25.8 | 26.4 | 15.7 |
|  | 대학원 이상 | (94) | 28.7 | 21.3 | 28.7 | 20.2 |


|  |  | 사례수 <br> (명) | 전 국민 <br> 대상 문화 <br> 예술 관련 <br> 강좌 및 <br> 교육보급 | 전 국민에게 <br> 문화이용권 <br> 지 급 | $\begin{aligned} & \text { 국 민 } \\ & \text { 전 반의 } \\ & \text { 문화예술 } \\ & \text { 활동의 } \\ & \text { 지 원 } \end{aligned}$ | 문화의 날 등의 지정과 문화행사 이벤트 |
| :---: | :---: | :---: | :---: | :---: | :---: | :---: |
| 가 계소득별 | 100만원 미만 | (53) | 26.4 | 24.5 | 32.1 | 15.1 |
|  | 100~200 미만 | (132) | 20.5 | 34.1 | 27.3 | 15.9 |
|  | 200~300 미만 | (187) | 27.3 | 23.0 | 25.1 | 20.3 |
|  | 300~400 미만 | (204) | 28.4 | 27.9 | 23.5 | 18.6 |
|  | 400~500 미만 | (185) | 29.7 | 27.0 | 24.3 | 16.2 |
|  | 500만원 이상 | (239) | 35.1 | 23.4 | 28.5 | 13.0 |
| 직업별 | 전문직/관리직 | (119) | 30.3 | 22.7 | 30.3 | 15.1 |
|  | 사무직 | (311) | 29.6 | 26.4 | 24.8 | 17.4 |
|  | 서비스/판매직 | (63) | 33.3 | 23.8 | 25.4 | 17.5 |
|  | 생산/기능/ <br> 단순노무 | (62) | 27.4 | 22.6 | 29.0 | 16.1 |
|  | 전업주부 | (168) | 32.7 | 29.2 | 21.4 | 16.1 |
|  | 자영업 | (89) | 20.2 | 29.2 | 33.7 | 14.6 |
|  | 농업, 임업 | (7) | - | 57.1 | 42.9 | - |
|  | 구직 중/무직 | (46) | 26.1 | 17.4 | 23.9 | 26.1 |
|  | 기 타 | (135) | 28.1 | 28.9 | 25.2 | 15.6 |

<표 IV-36> 필요한 문화복지 서비스(계속)
(단위: 명, \%)

|  | 분 | 사례수 <br> (명) | 공휴일 <br> 지 정/ <br> 시간적인 <br> 여유필요 | 문화공연 <br> 시설확충 | 공 연 <br> 비 용 <br> 인 하 | 전 국민 <br> 대상이되 <br> 신청자에 <br> 한하여 <br> 지 급 | 저소득층 <br> 예 술 <br> 창작인 <br> 지 원 |
| :---: | :---: | :---: | :---: | :---: | :---: | :---: | :---: |
|  | 체 | (1000) | 0.4 | 0.1 | 0.1 | 0.1 | 0.1 |
| 성 별 | 남 자 | (514) | 0.4 | 0.2 | 0.2 | - | - |
|  | 여 자 | (486) | 0.4 | - | - | 0.2 | 0.2 |
| 연령별 | 19~29세 | (213) | 0.9 | - | 0.5 | - | - |
|  | 30~39세 | (233) | 0.4 | - | - | - | - |
|  | 40~49세 | (256) | - | 0.4 | - | 0.4 | - |
|  | 50세 이상 | (298) | 0.3 | - | - | - | 0.3 |
| $\begin{aligned} & \text { 거주지 } \\ & \text { 특성별 } \end{aligned}$ | 서울 거주 | (208) | 0.5 | - | - | - | - |
|  | 6대 광역시 | (333) | 0.6 | - | - | 0.3 | 0.3 |
|  | 시 단위 | (380) | 0.3 | 0.3 | 0.3 | - | - |
|  | 군,면,읍 | (79) | - | - | - | - | - |
| 학력별 | 중졸 이하 | (12) | - | - | - | - | - |
|  | 고 졸 | (212) | 0.5 | - | 0.5 | - | 0.5 |
|  | 대 졸 | (682) | 0.4 | 0.1 | - | 0.1 | - |
|  | 대학원 이상 | (94) | - | - | - | - | - |


|  | 분 | 사례수 <br> (명) | 공휴일 <br> 지 정/ <br> 시간적인 여유필요 | 문화공연 <br> 시설확충 | 공 연 <br> 비 용 <br> 인 하 | 전 국민 <br> 대상이되 <br> 신청자에 <br> 한하여 <br> 지 급 | 저소득층 <br> 예 술 <br> 창작인 <br> 지 원 |
| :---: | :---: | :---: | :---: | :---: | :---: | :---: | :---: |
| 가 계 소득별 | 100만원 미만 | (53) | - | - | - | - | - |
|  | 100~200 미만 | (132) | 0.8 | - | 0.8 | - | - |
|  | 200~300 미만 | (187) | 0.5 | - | - | - | 0.5 |
|  | 300~400 미만 | (204) | 0.5 | - | - | 0.5 | - |
|  | 400~500 미만 | (185) | 0.5 | 0.5 | - | - | - |
|  | 500만원 이상 | (239) | - | - | - | - | - |
| 직업별 | 전문직/관리직 | (119) | - | 0.8 | - | - | - |
|  | 사무직 | (311) | 0.6 | - | - | 0.3 | - |
|  | 서비스/판매직 | (63) | - | - | - | - | - |
|  | 생산/기능/ <br> 단순노무 | (62) | 1.6 | - | 1.6 | - | - |
|  | 전업주부 | (168) | - | - | - | - | 0.6 |
|  | 자영업 | (89) | - | - | - | - | - |
|  | 농업, 임업 | (7) | - | - | - | - | - |
|  | 구직 중/무직 | (46) | 2.2 | - | - | - | - |
|  | 기 타 | (135) | - | - | - | - | - |

제4 장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사회적 분석
<표 IV-37> 필요한 문화복지 서비스(계속)
(단위: 명, \%)

|  | 분 | 사례수 <br> (명) | 소외계층 <br> 지 원 | $\begin{aligned} & \text { 학 교 } \\ & \text { 교 육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지 원 } \\ & \text { 축 소 } \end{aligned}$ | 없 음 | 모 름 |
| :---: | :---: | :---: | :---: | :---: | :---: | :---: | :---: |
|  | 체 | (1000) | 0.1 | 0.1 | 0.1 | 0.5 | 0.4 |
| 성 별 | 남 자 | (514) | 0.2 | - | 0.2 | 0.8 | 0.8 |
|  | 여 자 | (486) | - | 0.2 | - | 0.2 | - |
| 연령별 | 19~29세 | (213) | 0.5 | - | - | 0.5 | - |
|  | 30~39세 | (233) | - | 0.4 | - | 0.9 | 0.4 |
|  | 40~49 세 | (256) | - | - | 0.4 | 0.4 | 1.2 |
|  | 50 세 이상 | (298) | - | - | - | 0.3 | - |
| $\begin{aligned} & \text { 거주지 } \\ & \text { 특성별 } \end{aligned}$ | 서울 거주 | (208) | - | - | - | 0.5 | - |
|  | 6대 광역시 | (333) | 0.3 | - | - | 0.3 | 0.3 |
|  | 시 단위 | (380) | - | 0.3 | 0.3 | 0.5 | 0.8 |
|  | 군,면,읍 | (79) | - | - | - | 1.3 | - |
| 학력별 | 중졸 이하 | (12) | - | - | - | - | - |
|  | 고 졸 | (212) | - | - | - | 0.5 | - |
|  | 대 졸 | (682) | 0.1 | - | 0.1 | 0.6 | 0.6 |
|  | 대학원 이상 | (94) | - | 1.1 | - | - | - |
| $\begin{aligned} & \text { 가 계 } \\ & \text { 소득별 } \end{aligned}$ | 100만원 미만 | (53) | - | - | - | 1.9 | - |
|  | 100~200 미만 | (132) | - | - | - | - | 0.8 |
|  | 200~300 미만 | (187) | 0.5 | 0.5 | - | 1.1 | 1.1 |
|  | 300~400 미만 | (204) | - | - | - | 0.5 | - |
|  | 400~500 미만 | (185) | - | - | 0.5 | 0.5 | 0.5 |
|  | 500 만원 이상 | (239) | - | - | - | - | - |


| 구 분 |  | 사례수 <br> (명) | $\begin{aligned} & \text { 소외계층 } \\ & \text { 지 원 } \end{aligned}$ | 학 교 교 육 | 지 원 축 소 | 없 음 | 모 름 |
| :---: | :---: | :---: | :---: | :---: | :---: | :---: | :---: |
| 직업별 | 전문직/관리직 | (119) | - | - | - | 0.8 | - |
|  | 사무직 | (311) | 0.3 | - | - | 0.3 | 0.3 |
|  | 서비스/판매직 | (63) | - | - | - | - | - |
|  | 생산/기능/ <br> 단순노무 | (62) | - | - | - | - | 1.6 |
|  | 전업주부 | (168) | - | - | - | - | - |
|  | 자영업 | (89) | - | - | 1.1 | 1.1 | - |
|  | 농업, 임업 | (7) | - | - | - | - | - |
|  | 구직 중/무직 | (46) | - | - | - | 2.2 | 2.2 |
|  | 기 타 | (135) | - | 0.7 | - | 0.7 | 0.7 |

(2)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
질 문
귀하께서는 국민 전반의 문화예술복지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 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분석 결과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85.3 \%$ 로 월등히 높았으며, '필요없다'는 응답은 $14.7 \%$ 에 그쳤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대부분의 계층에서 높게 나타난 가운데 40대, 블 루칼라 직군(서비스/판매, 생산/노무 등)에서 특히 높았으며, '필요없 다'는 응답은 30 대, 저소득층 등에서 전체 평균대비 다소 낮은 편이 었다.
<그림 IV-27>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
(단위: 명, \%)

(3) 문화복지 전문인력 자격요건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문화예술복지를 위한 전문가는 어떠한 질 문 자격 내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 분석 결과

-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응답자( $\mathrm{N}=853$ 명 $)$ 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복지 전문인력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격요건에 대해 질문한 결 과, ‘적절한 문화예술적 지식과 소양’이라는 응답이 $55.6 \%$ 로 가장 높 았다.
- 그 다음으로 ‘복지업무에 대한 이해와 자세' $32.1 \%$, '신설 전문자격제 도의 이수 및 자격증 취득, $10.3 \%$ 등이 응답되었다. 그 외 기타 응답 은 $2.0 \%$ 였다.
<표 IV-38> 문화복지 전문인력 자격요건
(단위: 명, \%)

|  | 분 | 사례수 <br> (명) | 적절한 <br> 문 화 <br> 예술적 <br> 지식과 <br> 소 양 | 복지업무에 <br> 대한 이해와 <br> 자 세 | 신설전문 자격제도 이수 및 자격증 취 득 | 특별한 <br> 능력이 <br> 요 구 <br> 되지 않음 |
| :---: | :---: | :---: | :---: | :---: | :---: | :---: |
|  | 체 | (1000) | 55.6 | 32.1 | 10.3 | 1.4 |
| 성 별 | 남 자 | (514) | 52.0 | 34.5 | 11.0 | 1.6 |
|  | 여 자 | (486) | 59.3 | 29.7 | 9.6 | 1.2 |
| 연령별 | 19~29세 | (213) | 55.1 | 34.1 | 9.2 | 1.6 |
|  | 30~39세 | (233) | 50.5 | 33.7 | 12.6 | 1.6 |
|  | 40~49 세 | (256) | 56.4 | 33.8 | 8.9 | 0.4 |
|  | 50세 이상 | (298) | 58.9 | 28.1 | 10.7 | 2.0 |
| $\begin{aligned} & \text { 거주지 } \\ & \text { 특성별 } \end{aligned}$ | 서울 거주 | (208) | 59.0 | 29.5 | 9.8 | 1.7 |
|  | 6대 광역시 | (333) | 51.4 | 35.3 | 11.2 | 1.4 |
|  | 시 단위 | (380) | 56.7 | 32.0 | 10.1 | 0.6 |
|  | 군,면,읍 | (79) | 59.1 | 25.8 | 9.1 | 4.5 |
| 학력별 | 중졸 이하 | (12) | 40.0 | 40.0 | 20.0 | - |
|  | 고 졸 | (212) | 54.6 | 28.1 | 14.1 | 2.7 |
|  | 대 졸 | (682) | 56.6 | 33.0 | 8.8 | 0.9 |
|  | 대학원 이상 | (94) | 51.9 | 34.2 | 11.4 | 2.5 |

<표 IV-39> 문화복지 전문인력 자격요건(계속)
(단위: 명, \%)

|  | 분 | 사례수 <br> (명) | 전공자 | 문 화 <br> 예술인과 <br> 소통 및 <br> 홍보능력 | 객관성 <br> 유 지 | $\begin{aligned} & \text { 기 획 } \\ & \text { 능 력 } \end{aligned}$ | 모 두 |
| :---: | :---: | :---: | :---: | :---: | :---: | :---: | :---: |
|  | 체 | (1000) | 0.1 | 0.1 | 0.1 | 0.1 | 0.1 |
| 성 별 | 남 자 | (514) | - | 0.2 | 0.2 | 0.2 | 0.2 |
|  | 여 자 | (486) | 0.2 | - | - | - | - |
| 연령별 | 19~29 세 | (213) | - | - | - | - | - |
|  | 30~39 세 | (233) | - | 0.5 | - | 0.5 | 0.5 |
|  | 40~49 세 | (256) | - | - | 0.4 | - | - |
|  | 50세 이상 | (298) | 0.4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거주지 } \\ & \text { 특성별 } \end{aligned}$ | 서울 거주 | (208) | - | - | - | - | - |
|  | 6대 광역시 | (333) | 0.3 | - | - | 0.3 | - |
|  | 시 단위 | (380) | - | - | 0.3 | - | 0.3 |
|  | 군,면, 읍 | (79) | - | 1.5 | - | - | - |
| 학력별 | 중졸 이하 | (12) | - | - | - | - | - |
|  | 고 졸 | (212) | - | - | - | - | 0.5 |
|  | 대 졸 | (682) | 0.2 | 0.2 | 0.2 | 0.2 | - |
|  | 대학원 이상 | (94) | - | - | - | - | - |

(4) 문화복지 전문인력에 기대하는 서비스 내용

## 분석 결과

-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응답자 $(\mathrm{N}=853$ 명 $)$ 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복지 전문가가 제공할 필요가 있는 서비스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행정 지원'이 $42.1 \%$ 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
- 그 다음으로 '특정 분야의 문화/예술 공연 및 행사 관리' $17.9 \%$, '담 당지역의 문화예술 시설관리' $10.3 \%$, '지역 주민 지원 및 담당지역을 포함하는 관리와 지원' $0.1 \%$ 등의 응답이 있었으며, '위에 소개한 업 무 모두를 담당할 필요가 있음’이 $29.5 \%$ 로 나타났다.
<그림 IV-28> 문화복지 전문인력에 기대하는 서비스 내용
(단위: 명, \%)

<표 IV-40> 문화복지 전문인력에 기대하는 서비스 내용
(단위: 명, \%)

| 구 |  | 사례수 <br> (명) | 지역주민을 <br> 대상으로 <br> 하는 문화 <br> 행정 지원 | 특 정 <br> 분야의 <br> 문화/예술 <br> 공연 및 <br> 행사관리 | 담당지역의 <br> 문화예술 <br> 시설관리 | 지역주민 <br> 지원 및 담당지역을 포함하는 괸리와 지원 | 위 에 소개한 업 무 모두를 담당할 필요가 있 음 |
| :---: | :---: | :---: | :---: | :---: | :---: | :---: | :---: |
| 전 | 체 | (853) | 42.1 | 17.9 | 10.3 | 0.1 | 29.5 |
| 성 별 | 남 자 | (435) | 42.3 | 19.8 | 10.8 | - | 27.1 |
|  | 여 자 | (418) | 41.9 | 16.0 | 9.8 | 0.2 | 32.1 |
| 연령별 | 19~29세 | (185) | 34.1 | 22.2 | 11.9 | 0.5 | 31.4 |
|  | 30~39세 | (190) | 42.1 | 13.7 | 13.7 | - | 30.5 |
|  | 40~49 세 | (225) | 44.0 | 18.2 | 8.9 | - | 28.9 |
|  | 50세 이상 | (253) | 46.2 | 17.8 | 7.9 | - | 28.1 |
| $\begin{aligned} & \text { 거주지 } \\ & \text { 특성별 } \end{aligned}$ | 서울 거주 | (173) | 44.5 | 19.7 | 12.7 | 0.6 | 22.5 |
|  | 6 대 광역시 | (286) | 42.0 | 18.9 | 9.4 | - | 29.7 |
|  | 시 단위 | (328) | 40.5 | 17.4 | 8.8 | - | 33.2 |
|  | 군,면,읍 | (66) | 43.9 | 12.1 | 15.2 | - | 28.8 |
| 학력별 | 중졸 이하 | (10) | 50.0 | 30.0 | 10.0 | - | 10.0 |
|  | 고 졸 | (185) | 48.6 | 18.9 | 8.6 | - | 23.8 |
|  | 대 졸 | (579) | 40.9 | 17.6 | 10.7 | 0.2 | 30.6 |
|  | 대학원 <br> 이 상 | (79) | 34.2 | 16.5 | 11.4 | - | 38.0 |

제 3 절 일반국민 설문조사 결과 분석

| 구 | 분 | 사례수 <br> (명) | 지역주민을 <br> 대상으로 <br> 하는 문화 <br> 행정 지원 | $\begin{aligned} & \text { 특 정 } \\ & \text { 분야의 } \end{aligned}$ <br> 문화/예술 <br> 공연 및 <br> 행사관리 | 담당지역의 <br> 문화예술 <br> 시설관리 | 지역주민 <br> 지원 및 <br> 담당지역을 <br> 포함하는 <br> 괸리와 지원 | 위 에 소개한 업 무 모두를 담당할 필요가 <br> 있 음 |
| :---: | :---: | :---: | :---: | :---: | :---: | :---: | :---: |
| 가 계 소득별 | $\begin{gathered} \text { 100만원 } \\ \text { 미 만 } \end{gathered}$ | (44) | 18.2 | 31.8 | 13.6 | - | 36.4 |
|  | $\begin{gathered} \text { 100~200 } \\ \text { 미 만 } \end{gathered}$ | (107) | 39.3 | 16.8 | 13.1 | 0.9 | 29.9 |
|  | $\begin{gathered} \text { 200~300 } \\ \text { 미 만 } \end{gathered}$ | (166) | 48.8 | 17.5 | 9.6 | - | 24.1 |
|  | $300 \sim 400$ <br> 미 만 | (174) | 47.7 | 17.2 | 9.2 | - | 25.9 |
|  | $\begin{gathered} \text { 400~500 } \\ \text { 미 만 } \end{gathered}$ | (162) | 40.1 | 18.5 | 9.9 | - | 31.5 |
|  | 500만원 <br> 이 상 | (200) | 40.0 | 16.0 | 10.0 | - | 34.0 |
| 직업별 | 전문직/ <br> 관리직 | (101) | 41.6 | 8.9 | 10.9 | - | 38.6 |
|  | 사무직 | (263) | 42.6 | 21.3 | 12.5 | - | 23.6 |
|  | 서비스/ <br> 판매직 | (57) | 26.3 | 19.3 | 17.5 | 1.8 | 35.1 |
|  | 생산/기능/ <br> 단순노무 | (57) | 54.4 | 22.8 | 1.8 | - | 21.1 |
|  | 전업주부 | (145) | 47.6 | 15.2 | 8.3 | - | 29.0 |

제 4 장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사회적 분석

| ך |  | 사례수 <br> (명) | 지역주민을 <br> 대상으로 <br> 하는 문화 <br> 행정 지원 | 특 정 <br> 분야의 <br> 문화/예술 <br> 공연 및 <br> 행사관리 | 담당지역의 <br> 문화예술 <br> 시설관리 | 지역주민 <br> 지원 및 담당지역을 포함하는 관리와 지원 | 위 에 <br> 소개한 업 무 <br> 모두를 <br> 담당할 <br> 필요가 <br> 있 음 |
| :---: | :---: | :---: | :---: | :---: | :---: | :---: | :---: |
|  | 자영업 | (78) | 50.0 | 19.2 | 7.7 | - | 23.1 |
|  | 농업, 임업 | (7) | 42.9 | 14.3 | 14.3 | - | 28.6 |
|  | $\begin{gathered} \text { 구직 중/ } \\ \text { 무 직 } \end{gathered}$ | (36) | 33.3 | 27.8 | - | - | 38.9 |
|  | 기 타 | (109) | 33.0 | 14.7 | 12.8 | - | 39.4 |

# 제 5 장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 

## 제 1 절 문화예술복지 관련 규정의 규범체계성

## 1. 문화예술복지 관련 규정의 법체계성

문화예술진흥법을 비롯한 문화예술에 관한 법제 특히 수범대상으로 서 국민에 대한 문화예술 관련 조치와 규정들은 체계적인 법체계 안 에서 완전히 정립되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화기본법(안)의 제정과 문화예술진흥법의 전면개정안에 따름으로 써 기본법과 하위 법률 간의 법체계 그리고 문예법상 정의개념의 명 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화기본법의 주된 내용으로 국민에 대한 문화예술은 최상위 목표로서의 지위를 법체계 적으로도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최상위 목표가 된 국민의 문화예술의 향유를 위한 구체적 조치와 규정들을 어디에 규정되고 있는가? 현행 규범들은 이러한 최 상위 목표•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법적 체계성을 갖추고 있는가?

예컨대 기본법안에 따를 경우, 문화의 날과 달이라는 이전의 법률상 규정된 조치가 기본법상의 상위 조치로 규정 되었다. 일견 법률에 규 정되었던 구체적 조치가 상위법이라 할 기본법에 규정되면, 당해 조 치가 더욱 강하게 보장되는 긍정적 효과를 예견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법안이 상위법으로서 국민의 문화예술을 위한 조치의 선 정과 적용에 관한 법적 기준은 물론 하위 법률들에 대한 상위적 지위 에서 조치의 범주 또는 규정을 법률에 위임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기본법과 법률 간의 체계 안에서는 법률에 규정되던 특정 조 치중 하나만이 기본법상의 규정되는 것은 긍정적 효과만이 예견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특정 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인 입법분석이 없

이 상위법으로 이관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하위 법령과 조치들을 제 한하는 상위법규로 역할 할 수도 있다.

지금으로서는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복지의 개념 도출이 현행 규범체계 내에서 가능한지. 즉 복지의 수범대상과 규율된 규정내용 이 합리적 연관성을 갖추고 논리적 배열이 되었는지를 평가할 시점 이다.29) 나아가 문화예술분야의 복지라는 헌법상 최상위 목표가 하 위 법체계 내에서 세부목표로서 법합치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할 시점이다.
법률은 상위-하위 목표들 간의 정치한 조화를 통해서 세부목표의 타 당성과 근거를 스스로 제시하고 있어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은 헌법 적 법원과 상위목표의 체계성에 부합하는 '문화예술복지의 증진'의 장 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범주의 규정 및 조치들이 문화예술복지의 범주에 포 섭되는가 라는 법합치성 평가는 별건이다. 즉 상품권 인증, 장려금 지 급, 문화산업 육성 지원 등 구체적 규정조치들은 문화에술복지의 범 주에 포섭되기 어렵다고 앞서 규범분석의 장에서 평가한 바 있다.30)

그러나 한편 헌법적 이념체계에 부합하는 '문화국가' 내지 '국민의 문 화적 권리'의 목표 이념과 조치를 포섭하고 있는 법체계는 무엇으로
29) 최근 문화기본법(안)과 문화예술진흥법의 전면개정(안)에 따르더라도 현행 문화 예술복지의 증진 장내의 구체적 규정들은 산재된 구성안에 존속되고 있다. 그런데 기본법과 하위 법률체계간의 정립의 주요한 동기의 하나였던, 국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 증진의 목표를 시행하기 위한 조치들의 체계화는 답보 내지 오히려 상 대적 답보라 하겠다. 국민에 대한 문화예술이란 기본법으로 일보 전진 후, 법률로 이보 퇴진의 지적을 피할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
30)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고찰될 수 있겠으나, 법사적으로 '진흥’법체계에서 진흥의 대상을 형식적 기준으로 배열하고 그 시행을 내용으로 규정형식을 유지하다가, 세 부목표가 문화예술‘복지'로 선정된 장에서는 복지적 조치를 규정하는데서 기존의 형식적 규정방식으로 제한된 것으로 추론된다. 입법 실무가로서도 ‘진흥법’ 전반의 형식적 규정배열을 넘어서 세부목표에 내용적 합치성을 완성하기에는 목표 간의 차이로 인한 규범체계형식의 간극이 있었을 것이다.

볼 것인가를 고려할 때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상 조치들의 의의를 찾지 않을 수 없다．${ }^{31)}$
＜표 V－1＞문예법상 문예복지 증진 조치의 대상과 범위

| 수급대상 | 조 치 | 적용범위 | 수권방향 |
| :---: | :---: | :---: | :---: |
| 국 민 | 1．문화의 날，달 설정 | －문화의 날은 매년 10 월 셋째주 토요일 <br> －문화의 달은 매년 10 월 <br> －공연 •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br> －강연회나 그 밖의 문화예술 진 흥을 위한 행사 | $\begin{aligned} & \text { 국 가 } \\ & \text { 지자체 } \end{aligned}$ |
| 국 민 | 2．문화강좌 설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br>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 <br> －「지방문화원진흥법」상 설립이 인 가된 지방문화원 <br>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설치된 청 소년수련시설 <br>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begin{aligned} & \text { 국 가 } \\ & \text { 지자체 } \end{aligned}$ |
| 학 생／ 직장인 | 3．학교 등의 문화 예술 활동 단체 권장，활동비 일부 지원 |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고 등교육법」제 2 조에 따른 각급 학교 <br>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이 100 명 이상인 직장 | $\begin{aligned} & \text { 국 가 } \\ & \text { 지자체 } \end{aligned}$ |
| 상품권 발행자 | 4．도서－문화 전용상품권 인증제도 | －고시기준에 따른 상품권 발행자 | 국 가 |

31）동지（同志），정갑영，문화복지법제화 방안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7， 21 면 참조．

| 수급대상 | 조 치 | 적용범위 | 수권방향 |
| :---: | :---: | :---: | :---: |
| 문화산업 | 5．문화산업의 육성－지원 | －국가와 지자체의 문화산업 육성 시책과 융자알선，기술도입과 보 급에 관한 지원 등 조치 | $\begin{aligned} & \text { 국 가 } \\ & \text { 지자체 } \end{aligned}$ |
| $\begin{gathered} \text { 문화예술 } \\ \text { 공헌자 } \end{gathered}$ | 6．장려금 지급 |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시상 <br> －대통령령에 정한 국제경연대회 입상 | 국 가 |
| 장애인 | 7．장애인 문화 예술활동의 지원 | －국가와 지자체의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과 교육에 관한 시책 <br>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 하기위한 지원 | $\begin{aligned} & \text { 국 가 } \\ & \text { 지자체 } \end{aligned}$ |
| 문화소외 <br> 계 층 | 8．문화소외계층의 <br> 문화예술복지 <br> 증진시책강구 |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 회의 확대와 문화예술 활동의 장 려를 위한 시책 강구 | $\begin{aligned} & \text { 국 가 } \\ & \text { 지자체 } \end{aligned}$ |
| 문화소외 <br> 계 층 | 9．문화이용권의 <br> 지급 및 관리 | 문화소외계층에 문화이용권 지급 ＜법 시행령＞＂문화소외계층＂이란 <br>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 2호에 따른 수급자 <br>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 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 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br> 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 른 보호대상자 <br> 4．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지 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문화 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지원이 필 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begin{aligned} & \text { 국 가 } \\ & \text { 지자체 } \end{aligned}$ |

한편 문화예술의 복지에 관한 조치들 또한 다수의 법률에서 규정되 고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다. 다양한 법률에서 규정된 조치들은 그 법 적 체계와 그로 인한 시행주체 또한 달리하고 있다.

만약 문화예술의 분야에서 복지적 조치를 규정한다고 하면 기존의 복지적 차원에서 사회보장법체계 내의 규정과 시행체계와 달리 할 것 이다. 따라서 문화예술 진흥의 차원에서도 문화예술분야 복지의 조치 들의 규범화방안과 시행체계 마련을 위한 사전적 입법평가가 실시되 어야 한다.

적어도 문화예술분야의 복지적 성격의 조치와 규정의 효과성을 확 보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다양한 조치들 간의 규범체계와 운영체계들 의 통일적 내지 적어도 합리적 범주 내에서의 법적 합치성이 우선 확 보되어야 한다.
<표 V-2> 문화복지 관련 조치 및 규정32)

| 조 치 | 문화복지 관련 규정 내용 | 법 명 | 체 계 | 소관부처 |
| :---: | :---: | :---: | :---: | :---: |
| - 문화의 날 | - '문화' ‘문화적 권리'의 정 <br> 의 및 '국가와 지자체의 <br> 책무'를 규정 <br> - 문화의 날 설정 | 문 화 기본법 (안) | 기본법 | 문 화 <br> 예 술 <br> 체육부 |
| - 문화의 날/ 달의 설정 <br> - 문화강좌 <br> - 학교 등 문화예술 진흥 <br> - 도서 - 문화 <br> 전용 상품권 | 제 3 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제 10 조(문화의 날 설정 등) 제 12 조(문화강좌 설치) <br> 제 13 조(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br> 제 15 조(도서•문화 전용 상 품권 인증제도) | 문화예술 진흥법 | 법 률 | 문 화 <br> 예 술 <br> 체육부 |

32) 표의 자세한 내역은 앞서 본고의 규범분석의 장에서 참조 바람.

| 조 치 | 문화복지 관련 규정 내용 | 법 명 | 체 계 | 소관부처 |
| :---: | :---: | :---: | :---: | :---: |
|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 문화소외 계층에 대한 시책과 문화이용권 지급 <br> - 문예진흥기금 사용 | 제 15 조의 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br> 제 15 조의 3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br> 제 15 조의 4 (문화이용권의 지 급 및 관리) <br> 제 18 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  |  |
| - 학교문화예술 교육 - 활동의 지원 <br> - 사회문화예술 교육의 지원 -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 교육기회 제공 <br> -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 | 제 15 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br> 지원) <br> 제 17 조(학교문화예술 활동 <br> 및 행사의 지원) <br> 제 21 조(사회문 화예술교육의 <br> 지원) <br> 제22조(민간 교육시설 등의 <br> 지원) <br> 제23조(지역 사회문화예술 활 <br> 동 및 행사의 지원) ... <br> 제 5 장 문화예술교육사 <br> 제 27 조(국가 등의 의무) <br> 제 30 조 (문화예술교육사의 <br> 교육기회제공 등) <br> 제 31 조 (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 | 문화예술 <br> 교 육 <br> 지원법 | 법 률 | 문 화 <br> 체 육 <br> 관광부 |
| - 최저생계비 및 급여기준인 문화적인 최저생활 | 제 2 조(정의) <br> 6.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 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서 제6조에 따라 보건복 | 국민기초 <br> 생 활 <br> 보장법 | 법 률 | 보 건 복지부 |


| 조 치 | 문화복지 관련 규정 내용 | 법 명 | 체 계 | 소관부처 |
| :---: | :---: | :--- | :--- | :--- |
|  | 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 <br> 액을 말한다. <br> 제 4 조(급여의 기준 등) <br>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 <br> 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 <br> 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 <br> 이어야 한다. |  |  |  |

제 5 장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

| 조 치 | 문화복지 관련 규정 내용 | 법 명 | 체 계 | 소관부처 |
| :---: | :---: | :---: | :---: | :---: |
| - 사회적기업육성 문화부문 포함 | $\begin{array}{r} \text { 제 } 28 \text { 조(사회서 비스 일 자리 } \\ \text {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 \end{array}$ | 고용정책 기본법 |  | $\begin{aligned} & \text { 고 용 } \\ & \text { 노동부 } \end{aligned}$ |
| - 농어촌주민 문화생활의 증진 정책과 시행의무 | 제54조(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 | 농어업- <br> 농어촌및 <br> 식품산업 <br> 기본법 | 법 률 기본법 | 농 림 축 산 식품부 해 양 수산부 |
| - 농어촌 문화 <br> 복지시설 <br> 설치 - 운영 <br> 지원 | $\begin{gathered} \text { 제34조(농어촌 문화복지시설 } \\ \text { 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end{gathered}$ | 농어업인 <br> 삶의 질 <br> 향상 및 <br> 농어촌 <br> 지역개발 <br> 촉진에 <br> 관 한 <br> 특별법 | 법 률 특별 법 | 농 림 축 산 식품부 해 양 수산부 |
| - 노인의 여가. <br> 관광-문화 <br> 서비스의 <br> 고령친화산업 <br> 포함 | 제 1 조(목적) 이 법은 고령 친화산업을 지원•육성하 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 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 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br> 제 2 조(정의) ... 바. 노인을 위한 여가•관광•문화 또 는 건강지원서비스 | 고령친화 산 업 진흥 법 | 법 률 | 고령친화 제품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 기 관 : 기 획 재 정 부• 미 래 창 조 과 학 부-문화 체 육 관 광 부 - <br> 농 림 축 산 식 품 부•산업 |


| 조 치 | 문화복지 관련 규정 내용 | 법 명 | 체 계 | 소관부처 |
| :---: | :---: | :---: | :---: | :---: |
|  |  |  |  | 통 상 자 <br> 원 부 • <br> 보 건 복 <br> 지 부 - <br> 고 용 노 <br> 동 부 • <br> 국 토 교 <br> 통부 그 <br> 밖에 대 <br> 통 령 령 <br> 으로 정 <br> 하는 중 <br> 앙 행 정 <br> 기관 |
| - 주민문화시설 <br> 설치계획의 <br> 도시 - 주거환경 <br> 정비기본계획 <br> 포함 | 제 3 조(도시•주거환경정비 <br> 기본계획의 수립) ... <br> 7.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 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법 률 | 국 토 교통부 |
| - 문화시설의 <br> 재정비촉진계획 <br> 포함 | 제 9 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 <br> 4.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 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 치계획 | 도 시 <br> 재정비 <br> 촉진을 <br> 위 한 <br> 특별법 |  | 국 토 교통부 |
| - 융 • 복합 공간 정보체계 목적에 문화포함 | 제 9 조(융•복합 공간정보산 업 지원) (1) 정부는 연차 별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안전 • 환경 • 복지 • 교육 • 문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융•복합 공간정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공간정보 <br> 산 업 <br> 진흥법 |  | 국 토 교통부 |

제 5 장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

| 조 치 | 문화복지 관련 규정 내용 | 법 명 | 체 계 | 소관부처 |
| :---: | :---: | :---: | :---: | :---: |
| - 문화복지의 실현 <br> - 시민의 자율적 창의적 문화역량 발휘, 시민의 문화적인 삶 향유 <br> - 문화복지의 증진 | 제 1 조(목적) ...시민이 행복 <br> 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복지를 실현하고 국 제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br> 제 2 조(기본이념) 이 조례 는 시민이 자율적이고 창 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자율적 으로 문화적인 삶을 향유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br> 제 3 조(정의) <br> 1. "문화도시"라 함은 ... <br> 가. 삶이 곧 문화가 되 <br> 는 문화예술의 구현... <br> 다. 기본적인 문화향유 <br> 가 보장되는 문화복 지의 실현 ... <br> 제 8 조(문화복지의 증진) | 서 울 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 조 례 | 서 울 특별시 |

2. 적용대상 및 적용기준의 명확성
(1) 적용대상 개념의 명확성 : 문화예술복지•문화적 권리 등 문화예술진흥법은 법사학적으로 문화예술분야의 오랜 규정인 만큼 법적 개념으로 포섭할 대상이 매우 포괄적이다.

정의 규정은 '문화예술', '문화산업'(법 제2조) 등의 개념은 물론 '문 화복지'(제 3 장)와 '문화적 권리'(법 제 15 조의 2 제 1 항) 개념까지 그 명 확성이 필요하다.

법 제 2 조의 정의규정은 문화와 예술 내지 문화예술의 개념을 정의 하고 있지는 않다고 분석된다. 다만 법 형식적으로 포지티브방식의 열 거적 규정방식이다. 심지어 입법 기술적으로 흔하지 않게 정의 개념 에 괄호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와 예술이라는 각 개념에 대한 고찰에 근거한 정의개념 이라기보다는, 이법의 적용대상으로서의 문화예술개념을 사용하고 있 다고 평가된다. 이로 인해, 법적용의 범위로서의 대상과 문화예술의 개념 정의가 계속적인 모순과 개정을 반복하게 된다. ${ }^{33)}$ 즉 정의규정부 터 계속적인 변천 내지 개정이 요구될 것이며, 이로 인한 규범 안정 성까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법기술적으로라도 법적용범위와 대상 의 정의는 명확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 }^{34)}$

따라서 '진흥'의 법제로서의 대상을 법률에서 명확히 하기 힘들다 면, 적어도 하위 법령에서라도 법의 적용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요건을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즉 진흥의 대상으로서라도 문화예술의 범위를 정하는 구체적인 법적 기준 내지 요건은 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 건규정은 적어도 법률 개정으로 대상 정의 개념을 추가 내지 변경하 더라도, 그 법적 타당성이나마 명확히 하는 방안인 것이다.
33) 예컨대 2019.9.5. 의안발의안(최민희의원 대표발의)은 법 제 2 조 '문화예술'의 정의 규정에 ‘뮤지컬'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는 등 최근까지도 정의규정에 포함될 문화예 술 장르가 계속 제안되고 있으며, 이러한 개정 제안은 적용대상의 명확성이 확보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34) 법기술적으로 '문화예술의 복지'는 문화예술진흥법상 도출되거나(‘국민의 문화예 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법 제10조 제1항), '국민 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법 제12조 제1항)), 헌법이나 문화기본법(안)과 같은 상위법의 '문화'와 '문화적 권리' 등의 개념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할 수도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문예진흥법의 조치•적용 대상으로서 ‘문 화예술'과 ‘복지'를 선정하는 법적 기준 내지 요건은 이 법의 체계 내에서 규정하 고 있어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상 법적 개념 내지 정의의 명확성이 계속적으로 지 적된 데는 단순히 법률용어의 부재로만 원인을 평가할 수 없다. 이는 법적 역할과 기능의 확대•변화 그리고 법적 대상의 변화•확대를 원 인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욱 인과적 추론에 가깝다.
(2) 적용기준의 명확성 : 문화소외계층 • 판단요건 • 산정기준 • 지급기준 한편 문화복지 관련 조치들은 규정형식이 인적 적용 대상별로 적용 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인적 대상을 다양하게 파악하고 그 대 상별 수요에 따른 급여를 다양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된다.

그러나 문화예술관련 급부의 대상과 산정기준 그리고 지급기준•방 식 - 절차에 관한 규정의 명확성은 분석여지가 있다.

예컨대 문화이용권의 지급대상으로 규정한 '문화소외계층'의 경우, 상위법 내지 당해 법률에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단지 ‘경제적• 가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 소외계층' (법제 15 조의 3 )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문화소외계층의 정 의규정이라기 보다는, 문화소외의 객관적 원인들 중의 일부를 예시한 것이다. ${ }^{35)}$ 다만 하위 법령으로 지급대상의 범위로서 다른 법률의 인 적 적용대상 개념을 차용하고 있다.

이용권이라는 구체적 조치는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 내지 적어도 이 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법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시행령 이하의 규정은 수급대상자에 대한 대외적 효력이 아니라 시행주체의 내부적 규율체계이다. 따라서 시행령으로 다른 법의 인적 적용범위 예컨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를 문화소외계층의 범위로 차 용하고 있는 것이다.
35) 자세한 것은 본고 제2장 제2절 3. 상대적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소외 (2) 문화예술 향유의 상대적 인식 부분 참조 또는 제3장 제3절 2. 법상 개념의 명확성 (2) 적용 기준의 명확성 참조.

만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법적 요건인 소득조사 요건 을 문화소외의 원인으로 보고 이를 개념에 포함한 규정취지라면, 문 화소외의 개념에 소득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문화소외의 판단기준으 로서 소득요건을 다른 법률의 필요성조사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성과 명확성에 부합할 것이다.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이용권 지급조치의 인적 적용대상인 '문화소 외계층'은 법률상 정의 내지 적어도 판단기준의 요건이 하위 법령에 서 규정하는 것이 명확성을 높이는 것이다. 더욱이 산정기준과 지급 기준이 법률로는 규정되지 않은 채, 지급기준이 가구와 청소년 기준 이외에 선착순이 요건이 되고 있다. 이는 기금부족의 사실상 제한은 차지하고, 굳이 필요성 조사를 요건으로 한다는 특별부조적 조치의 산정기준과 지급기준에 체계정당성을 저해한다. 조치의 제한은 사실 상의 이유가 아니라 필요성 조사에 근거한 요건으로 사전에 정해질 때 타당성과 특별부조적 조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문화예술 관련 조치와 지급이 인적 적용대상을 기준 으로 규정되는데 따른 과제가 계속될 것이다. 예컨대 수급대상의 다 양한 기준이 마치 고령자라는 동일 인적 대상에 각 법률별로 연령기 준이 다르거나 다양한 경로와 급여가 이뤄짐으로써 이중급여가 이뤄 질 수 있다. 동시에 임부나36) 자영업자 등 특정 인적 대상자는 문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도 크다.

결국 법기술적으로 법률상 정의개념의 계속적 개정하는 방식을 채 택하였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법적용 대상으로의 인정 기준•요건이 라도 법적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개정의 타당성 내 지 기준 조차 법적 명확성이 없게 된다. 비록 법적 대상이 법외연적
36) 의원발의에 따른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에서도 '임부'가 문화예술복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이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변화와 사실적 요건들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상대적 합리와 인식들에 근거한 요건들도, 법적 요건으로 명확히 규범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 한 입법학의 방법론이 입법평가를 통해서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 제 2 절 문화예술복지 규범에 대한 수범자의 이해가능성

1.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수범자의 이해가능성

법규범은 그와 관련된 사람들 모두에게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정보로 이해될 수 있다. 즉 법을 집행하는 행정실 무가의 집행가능성과 적용을 받는 국민의 이해가능성 양자 모두가 규 범에 대한 수범자의 친숙성으로서 확보되어야 한다.

법규범의 실효성이란 규범 내부적으로는 규범의 명확성을 갖추어야 하며, 규범 외부적으로는 수범자의 친숙성이 모두 확보될 때라야 기 대가능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복지 관련 조치의 집행자인 행정실무가와 수혜자인 국민에 대한 설문의 결과를 입법평가의 기준 에 따라 분석•제시하도록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인지수준

현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인지수준을 살펴본 결과, 행정기관 담당 자의 $80.9 \%$ (매우 잘 안다 $18.6 \%$ + 대충 알고 있다 $62.3 \%$ ), 일반국민의 경우 $40.8 \%$ (매우 잘 안다 $1.9 \%$ + 대충 알고 있다 $38.9 \%$ )로 각각 확인 되었다.

제 2 절 문화예술복지 규범에 대한 수범자의 이해가능성
<그림 V-1> 문화예술진흥법 인지도
(단위: \%)

<그림 V-2> 문화예술진흥법 인지수준 비교
(단위: \%)

<표 V-3> 문화예술진흥법 인지수준
(단위: \%)

| 구 분 | 매우 잘 <br> 알고있다 | 대충 <br> 알고있다 | 잘 몰랬다 | 전 혀 <br> 몰랐다 | 인 지 | 비인지 |
| :---: | :---: | :---: | :---: | :---: | :---: | :---: |
| 행정기관 <br> 담당자 | 18.6 | 62.3 | 17.5 | 1.6 | $\underline{\mathbf{8 0 . 9}}$ | $\underline{\mathbf{1 9 . 1}}$ |
| 일반국민 | 1.9 | 38.9 | 47.2 | 12.0 | $\underline{\mathbf{4 0 . 8}}$ | $\underline{\mathbf{5 9 . 2}}$ |

행정기관 담당자의 경우 소속기관의 특성별로 응답에 차이가 큰 것 으로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문화부와 복지부 등의 중앙정부/부처에 서는 $75.9 \%$ 였으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예술의 전당 등의 문화 공 공기관에서는 $84.0 \%$ 로 평가대상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82.3 \%$ 의 인지도를 보인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의 경우 응답자 수 가 다소 적긴 하지만 시/도/군청 등 지자체에서의 인지도(77.6\%)와 문 화복지전문인력 $(81.3 \%$ ) 및 지역문화재단 $(100 \%)$ 간에 차이가 나는 점이 확인되었다. 앞서 조사 대상 공무원들이 업무상 주로 참조하는 법률 에 대한 응답분포 $(1+2+3$ 순위 응답 기준) 조사결과와의 비교를 감안할 때 법률에 대한 인지 및 활용비율의 차이는 응답자 소속기관별로 '문 화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 중앙정부/부처'의 순인 것으로 보인다.

조사참여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문화공공기관의 경 우 관련법률 수혜자와 일선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경우가 중 앙부처에 비해 많은 만큼 문화예술진흥법 인지도나 참조비율이 더 높 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응답자 세부 분류에서 현장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는 문화복지전문인력과 지역문화재단 등에서 가장 높은 응답이 나타난 점으로도 확인된다.
<그림 V-3> 행정기관 담당자의 소속별 문화예술진흥법 참조빈도 및 인지도
(단위: \%)

<표 V-4> 행정기관 담당자의 소속별 문화예술진흥법 참조빈도 및 인지도 비교
(단위: \%)

| 구 분 |  | 주로 참조하는 법률이 <br> 문화예술진흥법인 경우 <br> $(1+2+3$ 순위 $)$ | 문화예술진흥법 <br> 인지도 |
| :---: | :---: | :---: | :---: |
| 전 체 | 중앙정부/부처 | 52.1 | 80.9 |
|  | 지자체/산하기관 | 68.7 (3위) | 75.9 (3위) |
|  | 문화 공공기관 | 98.0 (1위) | 82.3 (2위) |


| 구 |  |  | 주로 참조하는 법률이 문화예술진흥법인 경우 $(1+2+3 \text { 순위 })$ | 문화예술진흥법 인지도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소 속 } \\ & \text { 기관별 } \end{aligned}$ | $\begin{gathered} \text { 중앙정부/ } \\ \text { 부 처 } \end{gathered}$ | 문화부 | 60.9 | 80.4 |
|  |  | 복지부 | 12.5 | 50.0 |
|  | 지자체/ 산하기관 | 지자체 | 61.2 | 77.6 |
|  |  | 문화복지 <br> 인 력 | 68.8 | 81.3 |
|  |  | 지역문화 <br> 재 단 | 92.9 | 100.0 |
|  | $\begin{aligned} & \text { 문 화 } \\ & \text { 공공기관 } \end{aligned}$ | ARKO | 100.0 | 100.0 |
|  |  | KOCACA | 100.0 | 100.0 |
|  |  | $\begin{aligned} & \text { 예술의 } \\ & \text { 전 당 } \end{aligned}$ | 97.0 | 75.8 |

(2)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이해도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해 행정기관 담당자와 일반국민이 느끼는 인식 을 '이해하기 쉬운 정도'와 '규정의 자세한 정도'의 두 요인을 사용하 여 살펴 본 결과, 행정기관 담당자의 경우 두 항목 모두에 대해 긍정 평가가 높은 반면, 일반국민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제 2 절 문화예술복지 규범에 대한 수범자의 이해가능성
<그림 $\mathrm{V}-4>$ 문화예술진훙법에 대한 인식 및 평가 비교
(단위: \%)

<표 V-5>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인식 및 평가 비교(계층별)
(단위: \%)

| 구 분 | 법률이 이해하기 쉽다 |  |  | 권리와 의무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  |  |
| :---: | :---: | :---: | :---: | :---: | :---: | :---: |
|  | 이해하기 <br> 쉽 다 | 보통이다 | 이해하기 <br> 어렵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br> 않 다 |
| 행정기관 <br> 담당자 | $\underline{\mathbf{4 7 . 5}}$ | 20.8 | 31.1 | $\underline{\mathbf{3 6 . 6}}$ | 28.4 | 35.0 |
| 일반국민 | 31.6 | $\underline{\mathbf{4 8 . 3}}$ | 20.1 | 24.4 | $\underline{\mathbf{3 6 . 7}}$ | 38.9 |

결국 국민의 경우 행정실무가와 달리, 문화예술진흥법 존부에 대한 인지자체는 물론 법문에 대한 이해조차 낮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듯, 가장 보편적인 입법목적을 드러내는 목적조항 의 법문조차 국민으로서는 문장의 구문조차 해독하기 어려워하고 있다.

제 5 장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
<그림 V-5>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단위: 명, \%)

(3) 문예법상 문화예술복지규정에 대한 국민의 인지 수준

특히 문예법상 문화복지의 장에서 가장 구체적이라 할 수 있는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이용권'지급조치에 대해 국민의 $73.3 \%$ 의 (전혀 모름(20.4\%)+잘모름(52.9\%)) 대다수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규정에 대한 인식 또한 국민의 $75.2 \%$ 가 인지 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직접적 지급대상이 아닌 국민의 인지도가 낮을 것이 유추될 수 있으나, 법률 존부 자체와 법의 목적에 대한 이해도 또한 낮다는 점 을 고려한다면, 결국 법상 문화예술의 복지 조치들 자체에 대한 인식 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처럼 행정실무가와 대비하여 법과 법목적에서 법상 조치들에 대 한 국민의 낮은 이해가능성은 궁극에는 기존의 법적 조치에 대한 수

범자의 이해도와 만족도는 물론 향후 부가될 조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 가능성과 이에 근거한 법적 효과성 또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 으로 예측된다.
<그림 V-6>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인지 여부
(단위: 명, \%)

<그림 V-7>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규정 인지 여부 (단위: 명, \%)


## 2. 문화복지 관련 규정의 실효성

(1) 현행 문화예술복지 규정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국민 대상 문화복지서비스의 내용(1) 문화의 날 설정, (2) 문화강좌 설치, (3) 학교 및 직장에 문화예 술활동단체의 권고, (4) 도서문화전용상품권 인증제도)에 대한 의견을 질문한 결과, 행정기관 담당자의 $86.9 \%$, 일반국민의 $78.2 \%$ 가 ‘지금보 다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응 답자의 절반수준(행정기관 담당자 $52.5 \%$, 일반국민 $44.8 \%$ )에 달하는 등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표 V-6> 국민에게 보장하는 문화예술복지 내용의 방향(계층별)
(단위: \%)

| 구 분 | 늘려야 한다 |  | 지 금 수준이 <br> 적절하다 | 줄여야 한다 |  | $\begin{gathered} \text { 잘 } \\ \text { 모르겠다 } \end{gathered}$ |
| :---: | :---: | :---: | :---: | :---: | :---: | :---: |
|  | 대 폭 <br> 늘려야 <br> 한 다 | 소 폭 <br> 늘려야 <br> 한 다 |  | 소 폭 <br> 줄여야 <br> 한 다 | 대 폭 <br> 줄여야 <br> 한 다 |  |
| 행정기관 담당자 | 86.9 |  | 8.2 | 1.1 |  | 3.8 |
|  | 52.5 | 34.4 |  | 1.1 | - |  |
| 일반국민 | 78.2 |  | 12.4 | 2.2 |  | 7.2 |
|  | 44.8 | 33.4 |  | 1.2 | 1.0 |  |

제 2 절 문화예술복지 규범에 대한 수범자의 이해가능성
<그림 V-8> 국민에게 보장하는 문화예술복지 내용의 방향
(단위: \%)

<표 V-7> 응답자 계층 특성별 비교
[행정기관 담당자]

| 구 분 |  | 늘려야 한다 | 적절하다 | 줄여야 한다 |
| :---: | :---: | :---: | :---: | :---: |
| 전 체 |  | 86.9 | 8.2 | 1.1 |
| 구 분 | 중앙정부/부처 | 88.9 | 5.6 | - |
|  | 지자체/산하기관 | 83.5 | 10.1 | 2.5 |
|  | 문화공공기관 | 90.0 | 8.0 | - |
| $\begin{aligned} & \text { 소 속 } \\ & \text { 기관별 } \end{aligned}$ | 문화부 | 91.3 | 6.5 | - |
|  | 복지부 | 75.0 | - | - |
|  | 지자체 | 85.7 | 10.2 | 2.0 |
|  | 문화복지인력 | 93.8 | - | 6.3 |
|  | 지역문화재단 | 64.3 | 21.4 | - |


| 구 분 |  | 늘려야 한다 | 적절하다 | 줄여야 한다 |
| :---: | :---: | :---: | :---: | :---: |
|  | ARKO | $\underline{\mathbf{1 0 0 . 0}}$ | - | - |
|  | KOCACA | $\underline{\mathbf{9 0 . 0}}$ | 10.0 | - |
|  | 예술의전당 | 87.9 | 9.1 | - |

[일 반국민]

| 구 분 |  | 늘려야 한다 | 적절하다 | 줄여야 한다 |
| :---: | :---: | :---: | :---: | :---: |
| 전 체 |  | 78.2 | 12.4 | 2.2 |
| $\begin{aligned} & \text { 거주지 } \\ & \text { 특성별 } \end{aligned}$ | 서울거주 | 80.8 | 13.0 | 1.4 |
|  | 6대 광역시 | 76.6 | 12.6 | 1.5 |
|  | 시단위 | 78.2 | 11.1 | 3.4 |
|  | 군,면, 읍 | 78.5 | 16.5 | 1.3 |
| 학력별 | 고졸 이하 | 75.0 | 14.7 | 2.3 |
|  | 대졸 이상 | 79.1 | 11.7 | 2.2 |
| $\begin{aligned} & \text { 가 계 } \\ & \text { 소득별 } \end{aligned}$ | 300만원 미만 | 74.5 | 14.5 | 2.1 |
|  | 300 만원 이상 | 80.4 | 11.1 | 2.2 |

행정기관 담당자의 소속기관별로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는 응답을 살 펴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100\%), 문화복지전문인력(93.8\%), 문화부 ( $91.3 \%$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90.0 \%$ ) 등에서 특히 높게 나타난 반면, 지역문화재단 소속(64.3\%)과 보건복지부(75.0\%) 등에서는 전체응답 평 균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한편 일반국민의 응답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서울거주자(80.8\%), 대졸이상 학력자(79.1\%), 가계소 득 300 만원 이상 $(80.4 \%)$ 등에서 전체평균 대비 높게 나타났다.
(2) 문화관련 법률의 일반국민 문화생활 기여도

문화예술진흥법 등의 문화관련 법률이 일반 국민의 문화생활에 기여 하는 지를 행정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도움이 된다' 는 긍정평가는 $45.4 \%$,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평가는 $25.1 \%$ 로 각 각 응답되었다.
현행 문화관련 법률의 기여도는 응답자 구분별로 최저 $40 \%$ (문화공공 기관)에서 최대 $52 \%$ 내외(중앙부처)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높지 않 게 평가되고 있었는데, 응답자의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부 처에서 $51.9 \%$ 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 관(44.3\%), 문화 공공기관( $40.0 \%$ )의 순이었다.
<그림 V-9> 문화관련 법률의 일반국민 문화생활 기여도
(단위: \%)


이는 앞서 문예진흥법의 인지도와 활용도에 대한 응답분포와는 상 이한 결과로, 기여도를 절반수준으로 응답한 중앙부처에 비해, 해당 법 률의 인지도와 활용도가 높게 나타나는 공공기관과 지자체(산하기관 포함)의 경우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응답분포가 나타난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현행 문화예술관 련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의견에 대한 개방형 응답을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소속기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현행 문화예술 관련 법률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중앙부처의 경우 ‘전체 국민으로의 대 상 및 범위 확장', '홍보 강화', '문화예술 사각지대 개선' 등 거시적 측면에 주목하는 반면, 공공기관과 지자체(산하기관 포함)의 경우 '구체 적 시행령 부재', '(사업 운영방향 및 창작공간 등에 대한) 명확한 구분 필요’, ‘현장인력에 대한 법률 신설’, ‘행정 자체를 위한 법률’, ‘추상적 내용이 많음, 등 비교적 미시적이고 세부적 측면에서의 개선의견을 제 기하고 있었다. 관리 및 감독기능이 주를 차지하는 중앙부처에 비해, 현장에서 해당 법률을 토대로 활동하는 공공기관과 지자체 및 산하기 관의 경우 법률에 대한 구체적 개선의견이 더 많고 그로 인해 현행 법률에 대한 평가가 다소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화관련 법률이 국민들의 문화생활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도 움을 주고 있지 못하는 이유로 지자체 및 산하기관의 경우 '관련 정 책과 제도가 미비하다'는 응답이 전체 평균에 비해 특히 높게 나타나 며, 문화공공기관의 경우 '관련 법률들이 산재되어 있다'는 응답이 상 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이러한 반응 역시 기타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 타난 중앙부처와는 차이를 보였다.

## <표 V-8> 문화관련 법률의 일반국민 문화생활 기여도(구분별)

(단위: \%)

| 구 분 |  | 도움이 <br> 되고 있다 | 보통이다 | 도움이 되지 <br> 않고 있다 |
| :---: | :---: | :---: | :---: | :---: |
| 전 체 | 45.4 | 28.4 | 25.1 |  |
|  | 중앙정부/부처 | $\underline{\mathbf{5 1 . 9}}$ | 22.2 | 24.1 |
| 분 | 지자체/산하기관 | 44.3 | 29.1 | 25.3 |
|  | 문화 공공기관 | 40.0 | 34.0 | 26.0 |

<표 V-9> 문화관련 법률의 일반국민 문화생활 기여도(지역별)
(단위: \%)

| 구 분 |  | 도움이 <br> 되고 있다 | 보통이다 | 도움이 되지 <br> 않고 있다 |
| :---: | :---: | :---: | :---: | :---: |
| 전 체 | 45.4 | 28.4 | 25.1 |  |
|  | 수도권 | 43.7 | 29.1 | 25.9 |
|  | 비수도권 | $\underline{\mathbf{5 6 . 0}}$ | 24.0 | 20.0 |

<표 V-10> 문화관련 법률의 일반국민 문화생활 기여도(소속기관별)
(단위: \%)

(3) 문화관련 법률의 기여도 낮은 이유

문화예술진흥법 등의 문화관련 법률이 일반 국민의 문화생활에 도 움이 되지 않는 다고 응답한 행정기관 담당자 46명을 대상으로 이유

를 질문한 결과, '관련 정책과 제도의 미비'라는 응답이 $71.7 \%$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산재된 관련 법률들의 체계' $13.0 \%$, 등의 순이었다.
<표 V-11> 문화관련 법률의 기여도가 낮은 이유(계층별)
(단위: \%)

|  | 구 분 | 관련 정책과 <br> 제도의 미비 | 산재된 관련 법률들 체계 | 담당자의 <br> 과중한 <br> 업무부담 | 구체적인 급여에 관한 <br> 규정 미비 | 기 타 |
| :---: | :---: | :---: | :---: | :---: | :---: | :---: |
| 전 |  | 71.7 | 13.0 | 6.5 | 2.2 | 6.5 |
| $\begin{aligned} & \text { 구 } \\ & \text { 분 } \end{aligned}$ | 중앙정부/부처 | 61.5 | 15.4 | 7.7 | - | 15.4 |
|  | 지자체/ 산하기관 | 85.0 | 5.0 | 5.0 | 5.0 | - |
|  | $\begin{aligned} & \text { 문 화 } \\ & \text { 공공기관 } \end{aligned}$ | 61.5 | $\underline{23.1}$ | 7.7 | - | 7.7 |

## 3. 문화복지 서비스의 규범화

(1)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문화예술복지를 위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 중에서 법으로 지정 되어야 할 것으로 행정기관 담당자의 경우 '국민전반의 문화예술활동 지원'(32.2\%), ‘전 국민대상 예술교육 보급'(28.4\%), ‘전 국민에게 문화이 용권 지급'( $21.9 \%$ )의 순으로 응답되었으며, 일반국민의 경우 ‘전 국민 대상 예술교육 보급'(28.9\%), '전 국민에게 문화이용권 지급'(26.4\%), '국 민전반의 문화예술활동 지원'(26.1\%)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표 V-12> 문화예술 복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계층별)
(단위: \%)

| 구 분 | 국 민 <br> 전반의 <br> 문화예술 <br> 활동지원 | 전 국민 <br> 대상 예술 <br> 귝 보급 | 전 국민에게 <br> 문화이용권 <br> 지 급 | 문화의 날 <br> 지정 및 <br> 준공휴일 <br> 지 정 | 문화관련 <br> 이벤트 및 <br> 행사 개최 | 기타 |
| :--- | :---: | :---: | :---: | :---: | :---: | :---: | :---: | | 무응답 |
| :---: |
| 행정기관 <br> 담당자 |
| 26.1 |

<그림 V-10> 문화예술 복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
(단위: \%)

(2) 일반국민 계층별 필요한 문화복지 서비스 종류

일반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문화복지 서비스의 종류를 응답하게 한 결과, 연령별, 거주지 특성별, 학력 및 소득별로 응답에 차이를 보였다.
먼저 연령별로는 30 대 이하의 경우 '국민 전반의 문화예술 활동의 지 원’이, 40 대 이상의 경우 '전 국민 대상 문화예술 관련 강좌 및 교육

제 5 장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

의 보급'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으며, 거주지 특성별로는 군/면/읍 지역 거주자의 경우 ‘전 국민에게 문화이용권 지급'이 가장 높게 나타 나 시 단위 이상 지역 거주자와 다른 성향을 나타냈다. 학력 및 소득 별로 비교해보면, 저학력, 저소득층의 경우 '국민 전반의 문화예술 활 동의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나 다른 계층과 차이가 나타났다.
<그림 V-11> 계층별 필요한 문화예술 복지서비스 응답 비교(연령별)
(단위: \%)

<표 $\mathrm{V}-13>$ 계층별 필요한 문화예술 복지서비스 응답 비교(연령별)
(단위: \%)

| 구 | 분 | 전 국민 <br> 대 상 <br> 문화예술 <br> 관 련 <br> 강좌 및 <br> 교육의 <br> 보 급 | 전 국민에 게 <br> 문 화 <br> 이용권 지급 | 국 민 <br> 전반의 <br> 문화예술 <br> 활동의 <br> 지 원 | 문화의 <br> 날 등의 <br> 지정과 <br> 문 화 <br> 행 사 <br> 이벤트 |  | 문화 <br> 공연 <br> 시설 <br> 확충 | 공연 <br> 비용 <br> 인하 |
| :---: | :---: | :---: | :---: | :---: | :---: | :---: | :---: | :---: |
| 전 | 체 | 28.9 | 26.4 | 26.1 | 16.6 | 0.4 | 0.1 | 0.1 |

제 2 절 문화예술복지 규범에 대한 수범자의 이해가능성

|  | 분 | 전 국민 <br> 대 상 <br> 문화예술 <br> 관 련 <br> 강좌 및 <br> 교육의 <br> 보 급 | 전 국민에게 <br> 문 화 <br> 이용권 지급 | 국 민 <br> 전반의 <br> 문화예술 <br> 활동의 <br> 지 원 | 문화의 <br> 날 등의 <br> 지정과 <br> 문 화 <br> 행 사 <br> 이벤트 | 공휴일 <br> 지 정/ <br> 시간적인 <br> 여 유 <br> 필 요 | 문화 <br> 공연 <br> 시설 <br> 확충 | 공연 <br> 비용 <br> 인하 |
| :---: | :---: | :---: | :---: | :---: | :---: | :---: | :---: | :---: |
| 연 <br> 령 <br> 별 | 19~29세 | 23.9 | 23.0 | 30.0 | 20.7 | 0.9 | - | 0.5 |
|  | 30~39세 | 24.5 | $\underline{28.3}$ | $\underline{27.9}$ | 17.2 | 0.4 | - | - |
|  | 40~49세 | 33.2 | 25.4 | 24.2 | 14.5 | - | 0.4 | - |
|  | 50세이상 | 32.2 | 28.2 | 23.5 | 15.1 | 0.3 | - | - |

<그림 $\mathrm{V}-12>$ 계층별 필요한 문화예술 복지서비스 응답 비교(거주지역별)
(단위: \%)

<표 V-14> 계층별 필요한 문화예술 복지서비스 응답 비교(거주지역별)
(단위: \%)

| 구 | 분 | 전 국민대상 <br> 문화예술 <br> 관련 강좌 및 <br> 교육의 보급 | 전 국민에게 <br> 문화이용권 <br> 지 급 | 국 민 전반의 문화예술 활동의 지 원 | 문화의 <br> 날 등의 <br> 지정과 <br> 문화행사 <br> 이벤트 | 공휴일 <br> 지 정/ <br> 시간적인 <br> 여유필요 | 문화 <br> 공연 <br> 시설 <br> 확충 | 공연 <br> 비용 <br> 인하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거주지 } \\ & \text { 특성별 } \end{aligned}$ | 서 울 거 주 | 29.8 | 26.0 | 26.4 | 16.8 | 0.5 | - | - |
|  | 6 대 <br> 광역시 | 30.6 | 23.7 | 27.6 | 15.9 | 0.6 | - | - |
|  | 시 단위 | 28.4 | 26.1 | 25.8 | 17.1 | 0.3 | 0.3 | 0.3 |
|  | 군,면,읍 | 21.5 | 40.5 | 20.3 | 16.5 | - | - | - |

<표 $\mathrm{V}-15>$ 계층별 필요한 문화예술 복지서비스 응답 비교(학력 및 소득별)
(단위: \%)

| $\begin{array}{c}\text { 구 } \\ \text { 분 }\end{array}$ |  | $\begin{array}{c}\text { 전 국민대상 } \\ \text { 문화예술 } \\ \text { 관련 강좌 } \\ \text { 및 교육의 } \\ \text { 보 급 }\end{array}$ | $\begin{array}{c}\text { 전 국민에게 } \\ \text { 문화이용권 } \\ \text { 지 급 }\end{array}$ | $\begin{array}{c}\text { 국 민 } \\ \text { 전반의 }\end{array}$ | $\begin{array}{c}\text { 문화의 } \\ \text { 날 돵의싈 } \\ \text { 힐동의 } \\ \text { 정과 } \\ \text { 원 }\end{array}$ | $\begin{array}{c}\text { 공휴일 } \\ \text { 지 좡/ } \\ \text { 이벤트 }\end{array}$ | $\begin{array}{c}\text { 문화 } \\ \text { 공연 } \\ \text { 시간적인 } \\ \text { 여유필요 }\end{array}$ | $\begin{array}{c}\text { 시설 } \\ \text { 확충 }\end{array}$ |
| :---: | :---: | :---: | :---: | :---: | :---: | :---: | :---: | :---: | \(\left.\begin{array}{c}공연 <br>

비용 <br>
인하\end{array}\right]\)

제 2 절 문화예술복지 규범에 대한 수범자의 이해가능성

| $\begin{array}{c}\text { 구 분 }\end{array}$ |  | $\begin{array}{c}\text { 전 국민대상 } \\ \text { 문화예술 } \\ \text { 관련 강좌 } \\ \text { 및 교육의 } \\ \text { 보 급 }\end{array}$ | $\begin{array}{c}\text { 전 국민에게 } \\ \text { 문화이용권 } \\ \text { 지 급 }\end{array}$ | $\begin{array}{c}\text { 국 민 } \\ \text { 전반의 } \\ \text { 문화예술 } \\ \text { 활동의 } \\ \text { 지 원 }\end{array}$ | $\begin{array}{c}\text { 문화의 } \\ \text { 날 등의 } \\ \text { 지정과 } \\ \text { 문화행사 } \\ \text { 이벤트 }\end{array}$ | $\begin{array}{c}\text { 공휴일 } \\ \text { 지 정/ } \\ \text { 시간적인 } \\ \text { 여유필요 }\end{array}$ | $\begin{array}{c}\text { 문화 } \\ \text { 공 }\end{array}$ | $\begin{array}{c}\text { 신설 } \\ \text { 확충 }\end{array}$ |
| :---: | :---: | :---: | :---: | :---: | :---: | :---: | :---: | :---: | \(\left.\begin{array}{c}공연 <br>

비용\end{array}\right]\)
4. 국민 문화복지를 위한 규범체계에 대한 인식
(1) 국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규범체계

행정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일반국민의 문화복지 증진관련 법제/개 정에 대한 의견을 질문한 결과, '기존 문화예술진흥법에 별도의 장이 나 규정을 추가하여 제정한다'( $48.6 \%$ ) > '새로운 문화복지법을 제정하 고, 향후 구체적으로 개정한다' $(21.9 \%)>$ '현재의 문화예술예술진흥법 으로 충분하다' $(14.8 \%)$ >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한다' $(3.3 \%)$ 등의 순으 로 응답되었으며,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응답은 $9.3 \%$ 였다.
<그림 $\mathrm{V}-13>$ 문화복지 관련법 제/개정에 대한 의견
(단위: \%)

<표 $\mathrm{V}-16$ > 문화복지 관련법 제/개정에 대한 의견(계층별)
(단위: \%)

|  | 분 | 기존법에 <br> 별도의 <br> 규정을 <br> 추가하여 <br> 제 정 | 새로운 문화복지법 제정, 향후 <br> 이법을 구체적으로 <br> 개 정 | 현재의 <br> 문화예술 <br> 진흥법으로 <br> 충 분 | 새로운 <br> 특별 법을 <br> 제 정 | 특별한 의견없음 | 무응답 |
| :---: | :---: | :---: | :---: | :---: | :---: | :---: | :---: |
|  | 체 | 48.6 | 21.9 | 14.8 | 3.3 | 9.3 | 2.2 |
| 구 분 | 중앙정부/부처 | 40.7 | 24.1 | 9.3 | 3.7 | 20.4 | 1.9 |
|  | 지자체/ 산하기관 | 54.4 | 19.0 | 13.9 | 5.1 | 5.1 | 2.5 |
|  | $\begin{gathered} \text { 문 화 } \\ \text { 공공기관 } \end{gathered}$ | 48.0 | 24.0 | 22.0 | - | 4.0 | 2.0 |

(2) 문화기본법 제정 시 문화예술진흥법의 역할

행정기관 담당자들은 문화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기존의 문화예술진 흥법의 역할에 대해 '진흥법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 정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61.7 \%$, '기본법에도 규정된 내용만 삭제하 고, 현행 진흥법을 그대로 둔다' $20.8 \%$, '기본법이 제정되면 진흥법은 폐지하여도 된다, $12.0 \%$ 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V-14> 문화기본법 제정 시 문화예술진흥법의 역할
(단위: \%)


전반적으로 ‘진흥법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지자체 및 산하기관의 경우 '기본법이 제정되면 진흥법은 폐지하여도 된다'는 응답이, 문화공공기 관의 경우 '기본법에도 규정된 내용만 삭제하고, 현행 진흥법을 그대로 둔다'는 응답이 각각 전체평균대비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mathrm{V}-17>$ 문화기본법 제정 시 문화예술진흥법의 역할(계층별)
(단위: \%)

|  |  | 진흥 법에 <br> 문화예술 진흥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해 갈 수 있을 것 | 기본법에도 <br> 규정된 <br> 내용만 삭제, <br> 현행 진흥법 <br> 그대로 둔다 | 기본법이 제정되면 진흥법 폐지해도 된 다 | 기 타 | 무응답 |
| :---: | :---: | :---: | :---: | :---: | :---: | :---: |
| 구 분 | 중앙정부/부처 | 68.5 | 20.4 | 5.6 | 1.9 | 3.7 |
|  | 지자체/산하기관 | 54.4 | 16.5 | $\underline{22.8}$ | 3.8 | 2.5 |
|  | 문화 공공기관 | 66.0 | $\underline{28.0}$ | 2.0 | 4.0 | - |

5. 국민 문화복지의 시행기구 및 전문인력에 대한 인식
(1) 문화복지 시행기구 및 관련 규정

본 조사에서는 국민 전체의 문화복지 관련 규정 및 시행기구간 조 정/총괄역할을 하는 기구에 대한 행정기관 담당자들의 의견을 질문하 였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 $53.6 \%$ )이 '잘 모르겠다'고 답한 가운데, ‘현 재 특정된 법률과 기구가 없다'는 응답이 $20.8 \%$, ‘현행법과 기구가 총 괄•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9.8 \%$ 로 각각 나타났다.
<그림 V-15> 문화복지 관련 규정 및 총괄기구
(단위: \%)

<표 V-18> 문화복지 관련 규정 및 총괄기구(계층별)
(단위: \%)

|  | 분 | 필요하지만 <br> 잘 모르겠다 | 현재 특정된 <br> 법률과 <br> 기구가 없다 | 현행법/기구가 <br> 총괄•조정의 <br> 역할을 하고 있다 | 필요가 <br> 없다 | 무응답 |
| :---: | :---: | :---: | :---: | :---: | :---: | :---: |
|  | 체 | 53.6 | 20.8 | 9.8 | 3.8 | 12.0 |
| 구 분 | 중앙정부/부처 | 57.4 | 14.8 | 13.0 | 3.7 | 11.1 |
|  | 지자체/ 산하기관 | 54.4 | 22.8 | 8.9 | 3.8 | 10.1 |
|  | $\begin{aligned} & \text { 문 화 } \\ & \text { 공공기관 } \end{aligned}$ | 48.0 | 24.0 | 8.0 | 4.0 | 16.0 |

한편 현재 특정된 법률과 기구가 없다고 응답(38명)한 경우, 향후 담당기구로는 '(별도의)문화예술관련 기구'를, 법률로는 '문화예술진흥 법’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꼽았으며, 현재 특정된 법률과 기구가 있 다는 경우(18명)에는 '문화예술진흥법’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응답 이 많았다.
<표 V-19> 향후 적합한 문화복지 관련 규정 및 총괄기구 (현재 소관법률과 기구가 없다는 경우)
(단위: 명)

| 구 분 | 향후 소관법률 |  | 향후 소관기구 |  |
| :---: | :---: | :---: | :---: | :---: |
|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4 명 | 문화예술관련 기구 | 3 명 |
|  | 문화예술진흥법 | 3 명 | 별도의 위원회 | 1 명 |


| 구 분 | 향후 소관법률 |  | 향후 소관기구 |  |
| :---: | :---: | :---: | :---: | :---: |
| 지자체/ 산하기관 | 문화예술진흥법 | 6명 | 문화체육관광부 | 4명 |
|  |  |  | 문화관광위 원회 | 2명 |
|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3명 | 문화재단 | 1명 |
|  |  |  | 미래창조과학부 | 1명 |
| $\begin{aligned} & \text { 문 화 } \\ & \text { 공공기관 } \end{aligned}$ | 문화예술진흥법 | 8명 | 문화예술관련 기구 | 7명 |
|  | 문화예술진흥법과 <br> 예술인 복지법이 <br> 통합된 새로운 법 | 1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1명 |

<표 $\mathrm{V}-20>$ 현재 적용되는 문화복지 관련 규정 및 총괄기구 (현재 소관법률과 기구가 있다는 경우)
(단위: 명)

| 구 분 | 현행 소관법률 |  | 현행 소관기구 |  |
| :---: | :---: | :---: | :---: | :---: |
| 중앙정부/ <br> 부 처 | 문화예술진흥법 | 2 명 | 문화예술관련 기구 | 2 명 |
| 지자체/ <br> 산하기관 | 문화예술진흥법 | 2 명 | 문화예술진흥기구 | 2 명 |
| 문 화 <br> 공공기관 | 문화예술진흥법 | 1 명 |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 1 명 |

(2) 문화복지 법률 제도 및 서비스 신설 시 기구 및 인력배정

국민 전체의 문화복지를 위한 법률의 구체적인 제도 및 서비스들이 신 설된다면, 이를 시행하기 위한 기구/부서 및 인력배정과 관련하여, '기존 의 문화예술 관련기구에 신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투입'(41.0\%), ‘기존

의 문화예술 관련기구 및 인력에 예산을 투입하여 활용'( $29.5 \%$ ), '새로운 기구의 신설과 신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투입'(15.3\%),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되 기존의 인력을 활용' $(9.8 \%)$ 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화공공기관의 경우 '기존기구 및 인력에 예산을 투입하여 활용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다른 부문과 차이를 보였다.
<그림 V-16> 문화복지 법률 신설 시 시행기구 및 인력배정
(단위: \%)

<표 V-21> 문화복지 법률 신설 시 시행기구 및 인력배정(계층별)
(단위: \%)

| 구 |  | 기존의 <br> 기구에 신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투 입 | 기존기구 및 인력에 예산을 투입하여 활 용 | 새로운 <br> 기구의 <br> 신설과 신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투 입 | 새로운 <br> 기구를 <br> 신설하되 <br> 기존의 <br> 인력활용 | 기 타 | 무응답 |
| :---: | :---: | :---: | :---: | :---: | :---: | :---: | :---: |
| 구 분 | 중앙정부/ <br> 부 처 | $\underline{44.4}$ | 20.4 | 18.5 | 9.3 | 1.9 | 5.6 |


| 구 |  | 기존의 <br> 기구에 신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투 입 | 기존기구 및 인력에 예산을 투입하여 활 용 | 새로운 <br> 기구의 <br> 신설과 신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투 입 | 새로운 <br> 기구를 <br> 신설하되 <br> 기존의 <br> 인력활용 | 기 타 | 무응답 |
| :---: | :---: | :---: | :---: | :---: | :---: | :---: | :---: |
|  | 지자체/ 산하기관 | 46.8 | 26.6 | 12.7 | 13.9 | - | - |
|  | $\begin{aligned} & \text { 문 화 } \\ & \text { 공공기관 } \end{aligned}$ | 28.0 | 44.0 | 16.0 | 4.0 | 2.0 | 6.0 |

(3)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의견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질문한 결과,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5.3 \%$ 로, '필요 없다'는 응답 $14.7 \%$ 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대부 분의 계층에서 높게 나타난 가운데 연령별로는 40 대, 직업별로는 서 비스/판매 및 생산/노무직 등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필요없다'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30 대, 기타 응답자 특성별로 는 월소득 200 만원 미만인 경우 전체 평균대비 다소 높은 편이었다.
<그림 V-17>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
(단위: \%)


제 2 절 문화예술복지 규범에 대한 수범자의 이해가능성
<표 V-22>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계층별)
(단위: \%)

| 구 분 |  | 필요가 <br> 있 다 | 필요가 <br> 없 다 |
| :---: | :---: | :---: | :---: |
| 전 체 |  | 85.3 | 14.7 |
| 성 <br> 별 | 남 자 | 84.6 | 15.4 |
|  | 여 자 | 86.0 | 14.0 |
| $\begin{aligned} & \text { 연 } \\ & \text { 령 } \\ & \text { 별 } \end{aligned}$ | 19~29세 | 86.9 | 13.1 |
|  | 30~39세 | 81.5 | 18.5 |
|  | 40~49세 | 87.9 | 12.1 |
|  | 50세 이상 | 84.9 | 15.1 |
| $\begin{aligned} & \text { 거 } \\ & \text { 주 } \\ & \text { 지 } \\ & \text { 역 } \\ & \text { 별 } \end{aligned}$ | 서 울 | 83.2 | 16.8 |
|  | 인천/경기 | 88.3 | 11.7 |
|  | 대전/세종/충청 | 83.7 | 16.3 |
|  | 광주/전라 | 83.5 | 16.5 |
|  | 대구/경북 | 83.2 | 16.8 |
|  | 부산/울산/경남 | 84.9 | 15.1 |
|  | 강원/제주 | 89.5 | 10.5 |
| 거 <br> 주 <br> 지 <br> 특 <br> 성 <br> 별 | 서울 거주 | 83.2 | 16.8 |
|  | 6대 광역시 | 85.9 | 14.1 |
|  | 시 단위 | 86.3 | 13.7 |
|  | 군,면,읍 | 83.5 | 16.5 |


| 구 분 |  | 필요가 <br> 있 다 | 필요가 <br> 없 다 |
| :---: | :---: | :---: | :---: |
| 학 <br> 력 <br> 별 | 중졸 이하 | 83.3 | 16.7 |
|  | 고 졸 | 87.3 | 12.7 |
|  | 대 졸 | 84.9 | 15.1 |
|  | 대학원이상 | 84.0 | 16.0 |
| $\begin{aligned} & \text { 가 } \\ & \text { 계 } \\ & \text { 소 } \\ & \text { 득 } \\ & \text { 별 } \end{aligned}$ | 100만원 <br> 미 만 | 83.0 | 17.0 |
|  | $\begin{gathered} \hline \text { 100~200 } \\ \text { 미 만 } \end{gathered}$ | 81.1 | 18.9 |
|  | $\begin{gathered} 200 \sim 300 \\ \text { 미 만 } \end{gathered}$ | 88.8 | 11.2 |
|  | $\begin{gathered} 300 ~ 400 \\ \text { 미 만 } \end{gathered}$ | 85.3 | 14.7 |
|  | $\begin{gathered} \text { 400~500 } \\ \text { 미 만 } \end{gathered}$ | 87.6 | 12.4 |
|  | 500만원 이 상 | 83.7 | 16.3 |
| $\begin{aligned} & \text { 직 } \\ & \text { 업 } \\ & \text { 별 } \end{aligned}$ | 전문직/관리직 | 84.9 | 15.1 |
|  | 사무직 | 84.6 | 15.4 |
|  | 서비스/판매직 | 90.5 | 9.5 |
|  | 생산/기능/ <br> 단순노무 | 91.9 | 8.1 |
|  | 전업주부 | 86.3 | 13.7 |
|  | 자영업 | 87.6 | 12.4 |
|  | 농업, 임업 | 100.0 | - |
|  | 구직 중/무직 | 78.3 | 21.7 |
|  | 기 타 | 80.7 | 19.3 |

(4) 문화복지 전문인력이 제공해야 할 서비스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응답자( $\mathrm{N}=853$ 명)를 대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서비스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행정 지 원'(42.1\%), '특정 분야의 문화/예술 공연 및 행사 관리'(17.9\%), '담당지 역의 문화예술 시설관리' $(10.3 \%)$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으며, '위에 소개 한 업무 모두를 담당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응답이 $29.5 \%$ 로 나타났다.
<그림 V-18> 문화복지 전문인력에 기대하는 서비스 내용
(단위: \%)

<표 V-23> 문화복지 전문인력에 기대하는 서비스 내용
(단위: \%)

| 지역주민을 <br> 대상으로 하는 <br> 문화행정 지원 | 특정 분야의 <br> 문화/예술 공연 <br> 및 행사 관리 | 담당지역의 <br> 문화예술 <br> 시설관리 | 지역 주민 지원 <br> 및 담당지역을 <br> 포함하는 <br> 관리와 지원 | 위에 소개한 <br> 업무 모두를 <br> 담당할 <br> 필요가 있음 |
| :---: | :---: | :---: | :---: | :---: |
| 42.1 | 17.9 | 10.3 | 0.1 | 29.5 |

## 제 6 장 대안의 비교 • 분석

## 제 1 절 국민 문화복지 관련 규범체계 확립 방안

1．기본법（안）체계내의 국민 문화복지 규범화 방안

## （1）문화복지의 법원칙 선언

국민의 문화복지에 관한 기본법 내지 문화복지 전반에 관한 기본법 을 새로이 제정할 것에 관해 계속적인 요구가 있었다．이에 대응한 기 본법 신설의 대응이 예정된 문화기본법（안）으로 볼 수도 있겠다．${ }^{37)}$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은 기본법상의 최상위 목 표와 법적 정의개념하에 법률들이 체계화 된다는 점이 강점일 것이다． 특히 본고 규범분석의 실시를 통해 지적된 문화예술진흥법의 기본법 으로서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예컨대 문화예술의 전반 에 관한 최상위 목표와 예술 등 법적 범주의 정의문제에 체계를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38)}$

또한 국민의＇문화예술복지＇에 대해서도 법적 원칙을 정하고 이에 관한 법적 조치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즉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상 장제목과 관련 조치의 법적 합치성을 확보하기 위 한 법적 원칙과 근거를 부여한 것이라 하겠다．다만 국민에 대한 문

37）현재 2013．12．9．9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결과 통과．
38）법안의 제안이유에서도 이러한 점에서 기본법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현행 문 화 또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법률은 「문화예술진흥법」，「문화예술교육지원법」，「문 화산업진흥법」등 주로 문화예술 창작자나 사업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 교육 및 관 련 산업 진흥에 치우쳐있으며，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적 권리에 대하여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임．이에，국민의 문화향유를 장려하고 문화의 가치를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문화격차를 해소해 국민 모두가 문화로 행복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민의 문화적 권리와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는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함；의안번호 5035，2013．5．22．발의．

화예술복지 조치에 관하여 기본법(안)이 문화예술진흥법 등 법률이하 법체계 및 법원칙을 수립하는지. 나아가 법안 규정의 문화복지에 관 한 조치의 실질화 여부는 실증적 평가가 필요한 별건이다.
(2) 문화복지 조치의 법적 실현가능성

기본법의 제정효과는 수범자의 이해와 만족도를 직접적으로 향상시 키는데는 한계가 있다. 신설 문화기본법안도 본 법안의 의의를 국민의 문화향휴•문화가치의 사회확산을 통한 국민의 삶의질 향상•문화격 차의 해소•문화로 행복한 사회조성•국민의 문화적 권리와 이에 대 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명시규정이 선언적, 권고적 규정임을 법안제안 시 스스로 분 석하고 있다. 즉 비용추계의 미첨부 사유에서도 재정수반 요인으로 문 화예술교육(법안 제9조)의 방법 및 인력양성 규모의 미정, 조사연구(법 안 제 10 조)의 방법과 규모 및 전담 기구 미정,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 미정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기본법이 조치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거나 또는 상위법으로서 하위 법률에 위임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국민의 문화 복지에 대한 구체적 급여에 대한 선언이라는 긍정적 기대를 법적 실 현가능성 평가에서 스스로 상쇄하는 입법영향평가일 수 있다.
(3) 기본법(안)과 법률들 간의 체계성

무엇보다 기본법체계하의 정립을 위해서는 기본법과 문화예술진흥법 및 다른 문화예술 관련 법률들 간의 관계 또한 체계성의 명확한 정립 이 필요하다.
소수의 조문으로 기본법의 ‘장’구성과 이에 따른 규정들의 체계성도 미비한 상태이다. 단일조문으로 장을 이루는 반면 다른 장으로 포섭될 수 있는 범주의 규정들이 보이기도 한다.

다른 법률들의 상위－목표 내지 상위－법체계로서 기본법의 기능을 위 해서는 법률내의 법체계성 검토가 우선 필요하다．
특히（1）기본법（안）내의 체계성과（2）문화복지적 조치에 대한 실현 가능성의 평가기준에 따른 분석이 우선 시행되어야한다．즉 기본법의 내부적 체계성을 확보하고 이로써 문화복지의 목표에 대한 기본법의 합치성과 실현가능성이 담보되어야만，비로소 기본법으로서의 실질적 법적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4）기본법（안）의 적용범위와 위임규정의 명확성
기본법상 법률 용어 내지 정의의 포섭범위와 범주가 명확해야 한다 하다．예컨대＇문화적 권리＇의 ‘주체’를＇국민’에 한정하여 규정함으로 써 재외국인 외국인근로자 등이 소외될 수 있다．문화적 권리의 주체 를 포함하는 목적조항은 문화적 다양성과 조화를 포섭하는 범주 내지 주체로서의＇인간＇을 고려할 필요하다．${ }^{39)}$
그 밖에도 기본법상 상위－목표를 세분화하고 실현할 수 있는 하위－ 목표와 규정을 정하고 있는 법률 및 구체적 시행조치들이 필요하다．예 컨대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예술복지 증진의 장에 포섭되던 조치 및 규정들만으로 기본법상의 문화복지라는 최상위 목표를 실현하고 있는 지 내지 실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법상의 목표를 세분화하는 규정 내지 적어고 하 위 법률에 구체적 위임규정을 두는 방안 등이 재고될 수 있겠다．
（5）기본법상 문화복지 조치의 규정형식
일견 상위법 내지 기본법에 구체적이고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곧 조 치나 권리를 강하게 보장하는 것처럼 수범자에게 직관될 수 있다．

39）同志，본고 연구를 위해 개최한 워크솝「문화예술복지 정책의 문제와 대응」，한 국법제연구원，2013．10．10．전문가 의견．

그러나 국민 문화복지의 구체적인 급부내용을 기본법에 그대로 규정 하는 것과 법적 효과성은 구별하여 평가해야 한다. 왜냐하면 상위법 은 하위법보다 법적 효력이 강한 만큼, 법적 안정성도 강하게 요구되 어서 탄력적•가변적인 다양한 급여를 시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즉 하위법상의 구체적 조치들을 규정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상위법의 규정은 제한적 요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본법상 체계 및 범주를 넘어 지나치게 상세히 규정•강행 된 조치들은 오히려 하위법률의 규범화를 제한하거나, 조치의 효과성 에 따른 탄력적 시행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결국 기본법상 국민의 문화예술복지의 구체적 시행조치가 규정될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범자들의 만족도와 비용편익 등 당해 조치에 대한 효과성 평가결과에 근거해 규정될 수 있어야 있다. 예컨대 국민 의 '날'과 '달'선정이라는 구체적 조치를 기본법에서 규정하려면, 당해 조치의 효과성 평가 내지 조치에 대한 심의절차 등 근거가 필요할 것 이다.40) 적어도 시행령상 지정되던 문화의 '날짜'를 기본법으로 상향 이 관함으로써, 다른 조치들보다도 어떠한 근거로 강하게 기본법으로 시 행할 조치가 된 제정이유가 필요하다.41)
40) 문화예술 행사•축제의 비용은 일반회계, 관광기금, 문예기금 등으로 다양한데 반해 지역 및 국가적 문화행사에 대한 심의-평가-반영의 객관적•세부적 절차기준 과 시행에 따른 공개의 과정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체, 한국문화관광연구 원 주관,'현장과 함께 하는 '새 예술정책’ 연속 토론회」, 2013. 8. 28.
41) 본고 설문결과 중,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복지관련 조치에 관한 국민일반의 경험을 조사한데 따르면, 도서문화상품구너의 사용 경험이 $49 \%$, 문화예술회관 등 의 문화강좌가 $21.3 \%$ 로 높은데 반해, 문화의 날 행사는 $8 / 7 \%$, 시주관공연/지자체 초청공연 $0.2 \%$ 로 오히려 행사나 이벤트 위주의 문화프로그램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적어도 문화경험의 인식에 남아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33> 주요 제도별 직접 참여경험
(단위: 명, \%)

| 구 | 분 | 사례수(명) | 도서문화 <br> 전용상품권 사용 | 문화예술회관 <br> 의 '문화강좌' | 직장 내 문화예술 <br> 홍단체의 활동 | '문화의 날'에 <br> 행하는 문화행사 |
| :---: | :---: | :---: | :---: | :---: | :---: | :---: |
| 전 | 체 | $(1000)$ | 49.0 | 21.3 | 15.4 | 8.7 |

그 밖의 조치들도 상대적 합리에 근거한 평가 또는 가변성을 갖춘 정책일 경우에는, 기본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하위 법규에는 제한적 • 강제적 규정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차라리 국민의 문화예술복지에 대한 조치의 선정 기준을 정하고, 동시에 이를 구체적으로 규범화하도록 위임규정을 두 는 것이 더욱 강한 법적 효력규정일 수 있다.

결국 기본법상 입법 형식은 (1) 문화복지에 관한 법적 원칙과 최상 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2) 구체적 조치들의 범주 를 정하고 (3) 각 범주 내 조치들을 하위 법률에서 상세히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두는 것이 실현가능성을 제고한 법체계성이라 할 것이다.
<표 VI-1> 기본법(안)의 체계성과 문화복지 실현가능성

| 문화기본법(안) |  |  |  |  |  | 문예법(현행) |
| :---: | :---: | :---: | :---: | :---: | :---: | :---: |
| 장 | 조 | 문 | 내 용 | 기본법(안) 내의 체계성 | 문화복지 실현성 | 문화예술복지 증진의 장 |
| 제 1 장 <br> 총 칙 | 1 | 목 적 | 국민의 권리와 국 <br> 가 및 지자체의 책임 | $\star$ | 3 | 재외국민, 문 화다양성 등 에 대한 국 가책임 범주 와의 법합치 성 필요 |
|  | 2 | 기 본 이 념 | 문화가치가 복지 <br> 에 확산 | $\star$ | $\star$ |  |
|  | 3 | 정 의 | 문화 개념 | $\star$ | $\star$ |  |


| 구 분 | 사례수(명) | $\begin{gathered} \text { 시 주관 공연/지방자치단체 } \\ \text { 초청공연 } \end{gathered}$ | 무료 영화 <br> 이 용 | 문화바우처 | 없 음 |
| :---: | :---: | :---: | :---: | :---: | :---: |
| 전 체 | (1000) | 0.2 | 0.1 | 0.1 | 20.8 |


| 문화기본법(안) |  |  |  |  |  | 문예법(현행) |
| :---: | :---: | :---: | :---: | :---: | :---: | :---: |
| 장 | 조 | 문 | 내 용 | $\begin{gathered} \text { 기본법(안) 내의 } \\ \text { 체계성 } \end{gathered}$ | 문화복지 <br> 실현성 | 문화예술복지 증진의 장 |
|  | 4 | $\begin{aligned} & \text { 국민의 } \\ & \text { 권 리 } \end{aligned}$ | 문화적 권리 | $\star$ | 3 | 문화적 권리 주체의 '국민' 제한에 따른 문화권 주체 인 ‘인간’범주 와의 법합치 성 필요 |
|  | 5 | $\begin{gathered} \text { 국가와 } \\ \text { 지자체의 } \\ \text { 책 무 } \end{gathered}$ | 문화소외 계층 시 책 강구의무 문화적 영향평가 의무 | $\rightarrow$ 제 2 장 문화정 <br> 책의 시책 | 3 문화영향 평가 의무 조항에 대 한 위임규 정 없음 | §15-3 문화소 외 계 층 위 한 시책 |
|  | 6 | 다 른 법률과의 관 계 | 다른 법률과의 목 적 이념의 위계 | $\star$ | $\star$ |  |
| 제 2 장 <br> 문 화 <br> 진흥등 <br> 문 화 <br> 정책의 <br> 추 진 | 7 | 문화정책 <br> 기본원칙 | 국민의 문화 역 량 증진위한 지 원과 여건조성 문화 활동참여와 교육기회 확대 차별없는 문화복 지 증진 | $\rightarrow$ 제 3 장 문화정 책 수립 | * |  |
|  | 8 | 분야별 문화정책 추 진 | 국가와 지자체의 문화정책의 수립 과 시행 노력 문화복지의 증진 | $\rightarrow$ 제 3 장 문화정 책 수립 | is 관광산업 및 체육의 진흥 제외 : 상위법 으로서의 기본법체 계 과제 잔존 | §12 문화강좌 <br> $\S 13$ 학교 등 문 <br> 화예술 진흥 <br> §15-4 문화소 <br> 외계층 문화 <br> 이용권 |

제 1 절 국민 문화복지 관련 규범체계 확립 방안

| 문화기본법(안) |  |  |  |  |  | 문예법(현행) |
| :---: | :---: | :---: | :---: | :---: | :---: | :---: |
| 장 | 조 | 문 | 내 용 | 기본법(안) 내의 체계성 | 문화복지 <br> 실현성 | 문화예술복지 증진의 장 |
|  | 9 | 문화인력 <br> 양성과 <br> 교 육 | 국가와 지자체의 <br> 지원과 시책추진, <br> 교육실시 의무 | * | ふ 문화인력 에 관한 재 원 규 정•위임 규정없음 |  |
|  | 10 | $\begin{gathered} \text { 조사연구 } \\ \text { 개 발 } \end{gathered}$ | 문 화 향 유 관 련 연구조사 의무 지원시책 노력 전담기관 지정, 운영 가능 | * | 3 문화향유 조사 전 담 기 관, 운영위임 규정없음 |  |
|  | 11 | $\begin{aligned} & \text { 문화의 } \\ & \text { 날, 달 } \end{aligned}$ | 매년 10 월 셋째 주 토요일 지정 (기존 문예법 시 행령) <br> 그 밖에 대통령 령 위임 | * | (시행령상 일자규정 이 기본법 으로 이 관 삭제) 조치에 대 한 효과성 근거 필 요 - 다른 조치들의 규정체계 간의 법합 치성 필요 | §10 문화의 날 |
|  | 12 | 문화사업 <br> 진 흥 | 노력규정 | $\star$ | N | §14 문화산업 <br> 지원 • 육성 |


| 문화기본법(안) |  |  |  |  |  | 문예법(현행) |
| :---: | :---: | :---: | :---: | :---: | :---: | :---: |
| 장 | 조 | 문 | 내 용 | 기본법(안) 내의 체계성 | 문화복지 <br> 실현성 | 문화예술복지 증진의 장 |
| 제 3 장 <br> 문 화 <br> 진 흥 <br> 계 획 | 13 | 문화진흥 <br> 기본계획 <br> 수 립 | 국민의 문화적 삶 의 질 향상 시책 문화적 권리 신 장 사항 <br> 전문인력 양성 교 육 - 사항 <br> 문화정책 조사• 연구 사항 | $\begin{aligned} & \quad \text { ㅎ } \\ & \rightarrow \text { 단일조문의 } \\ & \text { 장구성 } \\ & \rightarrow \text { 제2장 내 계 } \\ & \text { 획관련규정 } \end{aligned}$ | * |  |

표기 : 법적 적합성 합치, 认표기 : 법적 적합성 필요
2. 국민에 대한 문화예술 복지관련 조치의 입법 방안
(1) 문화예술복지 조치의 규정형식

국민에 대한 복지의 차원에서는 문화예술 관련 급여를 지급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장 효력이 강하게 예측되는 방안의 하나 일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복지적 급여종류를 기준으로 규정하는 방안과 수급대상을 기준으로 규정해 나가는 방안이 함께 비교분석 되 어야 한다.
본고 규범분석을 실시한 바와 같이, 다양한 법률과 규정에 산재된 문화복지 관련 조치들은 적용 대상 특히 인적 적용 대상별로 적용되 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인적 대상을 다양하게 파악하고 그 대상 별 수요에 따른 급여를 다양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된다.

반면 수급대상의 다양한 기준이 마치 고령자라는 동일 인적 대상에 각 법률별로 복지관련 급여가 이뤄짐으로써 이중급여가 이뤄질 수 있다.42)
42) 또는 각 법률의 ‘고령자’에 관한 다양한 연령 기준으로 인해서 동일한 인적 적용 대상에 대해서도 적용조치가 상이한 법적 불합치의 위험도 있다.

동시에 임부나43) 자영업자 등 특정 인적 대상자는 문화복지의 사각지 대에 놓일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문화예술진흥법의 적용대상은 같은 법률에서 정의하거나 적 어도 하위법령에서 적용•판단기준이 법적 요건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이용권 지급조치의 인적 적용 대상인 '문화소외계층’은 법률상 정의 내지 적어도 판단기준인 법적 요건을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명확성을 높이는 것이다.

한편 문화복지의 내용 내지 급여의 종류를 기준으로 규정해나가는 방안도 있다. 이 경우 문화의 카테고리 내지 특성에 따라 필요성 조사 의 법적 요건을 달리해나가면서 문화 본연의 성격에 따른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될 것이다. 예컨대 문화공연의 관람이라 는 급여에 대한 필요성 조사요건에 거주 지역내 공연시설의 정도, 장 르별 관람수요의 정도, 연령별 또는 지역적 수요의 특성 등을 반영한 급부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적 문화특성을 구축하거나 관련 지역내 문화예술종사자의 지원정책간의 연계도 정치하게 가능할 것이 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복지로서 지급될 우선적 문화예술급부의 종류를 선정하는 문제 그리고 대상 문화예술을 중심으로의 규정하기 위한 법체계로 전면 제•개정의 비용을 안게 된다.

그 밖에 문화예술복지의 규정형식과 급여기준 등에 관하여서는 '문 화예술복지 조치의 효과성 확보 방안에서 다루기로 한다.
(2) 문화예술복지 규정의 법체계성

문화예술복지에 관한 법적 원칙과 최상위 목적이 기본법체계 내에서 제정될 것이 예정되어도 이에 관한 법체계성 확립 여부는 별건의 입 법평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문화예술복지의 범주를 기준으로 평가

[^2]할 경우, 기본법에 관련 조치에 관한 위임규정은 물론 문화예술진흥 법과의 법적 위계에 관한 명확성도 확보된 바 없다.

결국 구체적인 문화예술복지의 규범화는 문화기본법(안)내에서 적어 도 위임규정을 두어서라도 규범화할 것인지. 구체적 국민에 대한 문화 복지는 또 다른 법체계에서 규범화 할 것인가라는 입법대안의 선정과 제가 여전히 남게 된다. 나아가 개별적 세부적 • 구체적 조치의 규정들 이 어느 법률에서 규정될 것인지도 별도의 입법평가가 필요하게 된다.

왜냐하면 법체계의 정합성에 따라 하위 법률 및 특별법들은 기본법에 부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국민에 대한 문화복지의 정의 내지 선언적 규범이 기본법에서 충분히 규정되었다 해도 이에 정합되는 목표와 구체 적 조치가 규범화되어야 비로소 법적 실현가능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국민의 문화복지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조치들은 기본 법에 따른 하위 법령이든 기타 관련 특별법이든 기본법 체계내로 제 한 될 것이다. 예컨대 문화복지 서비스를 포함한 구체적인 조치에 관 하여 규정할 경우, 입법 정책적인 판단이 고려된 조치도 기본법의 법 원칙과 수권범위 안에서 규율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에 대한 문화복지서비스가 기본법에 규정된다는 것은 최고 상위의 권리로 보호되는 동시에 정책적 탄력에 따른 급여는 제 한되는 것이다.

단순히 문화복지라는 개념과 선언이라는 정도의 법적 대응보다는, 수범자의 수요와 정책적 입법에 시의성과 정합성을 갖춘 구체적인 복 지서비스급여에 대한 필요성이 급증하였음은 이미 앞선 본고의 수범 자에 대한 사회적 분석결과에서 드러났다.

결국 문화예술복지에 관한 규범체계는 본고의 문화예술진흥법에 대 한 입법평가와 기본법(안)에 대한 체계성 평가의 결과를 보건대, 어느 법체계에서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즉 기본법을 통한 관 련 법체계의 정비 효과가 '문화복지' 조치의 법체계성을 확립하는데 까지는 미치고 있다고 보는데 한계가 있다. 예컨대 문화예술진흥법의

상위법을 기본법(안)으로 한다면, 기본법상 목적인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세분화한 목적도 문화예술진흥법 내지 등가적 범주의 다른 법률들의 목적조항에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예술복지'의 하위-목표와 구체적 조치-규정을 어느 법 률체계 내에서 규정할 것인지의 입법과제가 여전한 것이다.
만일 문화기본법(안)의 체계 아래에서 문화예술진흥법과 지역문화진 흥법(가칭) 등을 하위 법률체계로 두는 입법대안의 경우 몇 가지 판단 이 필요하다.
즉 문화기본법(안)체계내의 동일한 범주 안에 문화예술진흥과 지역 문화진흥 그리고 문화예술인복지 등을 포섭하는 방안은 법합치성의 평 가가 필요하다. 법적 합치성은 동일한 기준 내지 범주만을 동일한 법 체계를 부합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문화예술 - 지역문화 - 예술인복지 등은 입법기준이 문화의 종 류•지역적 적용범위•인적 적용범위 등으로 모두 상이하다. 이 경우 문화예술복지는 상이한 기준과 범주에 따라 각각의 법률에서 전부 규 정 또는 전혀 규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사회보장법체계 내에서 문화예술복지에 관한 조치들을 규범화 (안)의 경우에는 기본법과 법률의 입법목적에서 문화적 복지의 위계적 선언과 목적부터 규정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표 VI-2> 국민 문화예술복지 조치-규정의 규범화 방안

| 법체계 | (1)안 <br> 사회법체계 | 문화예술법체계 |  |  |
| :---: | :---: | :---: | :---: | :---: |
| 국민 문화예 <br> 술복지 목적 | (2)안 <br> 가뵈뵌봅(갱장) | (3)안 <br> 문화기본법(제정) | (4)안 <br> 문화기본법(제정) | 문화예술진흥법 <br> (개정) |



## 제 2 절 수범자의 이해가능성 및 집행가능성 확보 방안

1. 수급대상•급여내용의 특성 및 수범자의 친숙성• 필요성 인식에 따른 문화복지 접근경로

문화복지에 관한 궁극의 수요자이자 관련 규범의 수범자가 이해할 수 있는가. 이는 관련 행정의 이행가능성은 물론 실질적인 법적 효과 성확보의 전제이다. 따라서 입법평가의 주요한 평가기준의 하나가 바 로 수범자의 이해가능성이다.

그런데 본고의 사회적 조사 결과분석에 따르면, 수범자인 국민의 문 화예술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이해는 구체적이지 못하며44), 문화 예술진흥법상 조치에 대한 인지나 경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45)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직접적 조치들의 경험 또한 높지 않았다.46) 이러한 결과는 본고 규범분석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문화예술진흥 법상 문화복지에 관한 구체적 조치가 적어서 수범자의 인식이 당연히 낮을 것이 예고되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국민의 문화복지에 관하여 규정하는 방안이 이해가능성 향상 대안이라고 하기만도 어렵다. 왜냐하면 기존의 조치들에 대해서 조차 수범자들의 인식이 낮은 본고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분석할 수 있어야 실효성 있는 대안일 것이다.

예컨대 문화예술 관련 정보의 획득경로가 편중되어 있는 현황자료를 볼 때47) 문화복지 관련 조치는 친숙도가 입증된 접근경로를 선정하여야 한다.48)
44) 본고 설문 결과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이해도'에 따르면 법률에 대한 이해가 쉽다는 국민은 $31.6 \%$ 에 권리와 의무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고 본 국민은 $24.4 \%$ 에 그치고 있다.
45) 예컨대 문화예술진흥법의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규정 인지도는 ‘알지 못 한다'는 응답이 $75.2 \%$ 에 이르렀고(잘 몰랐다 $55.2 \%+$ 전혀 $20.0 \%$ ),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규정에 대한 인지도 또한 '알지 못 한다'는 응답이 $73.3 \%$ 에 이르 렀다(잘 몰랐다 $52.9 \%+$ 전혀 $20.4 \%$ ).
46) <그림 III-12> 주요 제도별 직접 참여경험 인지도
(단위: 명, \%)

47) 문화예술 관련 정보 획득경로를 질문한 결과, ‘자발적인 인터넷 사이트(포털사이 트, 티켓예매, 블로그 등) 검색’이라는 응답이 $59.7 \%$ 로 월등히 높았으며, 중졸이하 저학력층과 전업주부, 자영업 등의 경우 '신문, 잡지, 공연포스터 등’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48) 예컨대 문화이용권의 발급경로를 주민센터 뿐 아니라 이미 친숙도가 높은 인터

또한 문화적 조치들에 대한 접근경로 또한 수급대상 및 급여내용의 특성에 따라 상대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적어도 상 대적 방안과 조치를 재정적 시간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 급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탄력성으로 조치의 상대적 확대의 효 과를 기대할 수 도 있을 것이다. ${ }^{49)}$

다만 필요성조사를 법적 요건으로 하는 특별부조적 조치란 조치가 필요한 수급대상자에 한해서는 필수적으로 전달될 것을 규정하는 것 임을 유의해야한다. 그래서 급여의 필요성 조사, 전달경로 내지 수급 방법이 제한적이나마 규범적 절차로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원부 족의 현실로 제한적 조치가 될 경우에도 산정요건과 지급요건 내지 우선요건 등이 사전에 수급자에게 제시되고 있어야만 한다.50)

특히 향후 문화복지에 관한 급여와 규정이 확대될 것은 예상되는 바, 수범자의 이해가능성 향상의 방안 또한 비교분석 되어야 한다.

기존의 수범자의 이해가능성 평가는 법률용어의 난이나 구조 등에 대한 이해가 주된 평가 대상이었다. 그러나 문화예술 관련 규정 특히 이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규정에 대한 수범자의 이해는 대상자체 또는 복지대상으로서의 인식이 현저히 낮거나 없을 가능성마저 있다. 따라 서 필요성에 대한 인지조차 없는 수급대상의 문화적 고립의 경우에는 인적 용역급여가 시급할 것이다. 반면 필요성을 수급대상이 인식하고

[^3]있는 소외내지 차별의 경우에는 선택적 접근이 가능한 접근경로를 고 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문화적 소외는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제적 문화비용의 소외만 이 원인이 아닌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예컨대 문화시설의 편중 등으 로 인한 지역적 소외, 업무시간과 공연시간의 교차로 인한 시간적 소 외, 프로그램의 편중 등에 따른 연령적 소외 등을 원인으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결과가 문화소외를 판 단하는 법적 요건으로 규정되고 수범자의 조치에 대한 경로접근 방안 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51)

## 2. 행정실무가의 문화복지 규정•조치 가이드라인

법적 실현가능성은 법을 집행하는 자의 인식과 이해가 요건이다. 즉 행 정실무가의 관련 조치와 규정에 대한 이해가 실현가능성에 영향을 준다.

본고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문화복지 관련 규정 및 조치가 신설될 경 우, 이를 관리•운영할 기구 및 인력의 배정에 관하여 행정실무가들 은 기존 체계를 유지 관성이 나타났다. 예컨대 국민 전체의 문화복지 를 위한 법률의 구체적인 제도 및 서비스들이 신설된다면, 이를 시행 하기 위한 기구/부서 및 인력배정과 관련하여 행정실무가들은 '기존의 문화예술 관련기구에 신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투입'(41.0\%), '기존의 문화예술 관련기구 및 인력에 예산을 투입하여 활용' $(29.5 \%)$, 방안을 상대적으로 높게 지지했다.
결국 규정과 조치에 대한 기존의 조직 내지 인력의 활용하거나 신 규인력 활용하는 경우, 더욱 집행가의 이해는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51) 디지털화된 문화영역에서도 오프라인에서의 불평등이 온라인에서도 지속될 가능성 이 있으며, 경제적 빈곤과 문화적 빈곤이 다시 정보 빈곤으로 이어져 사회적 배제를 발생시키는 악순환의 경향을 주의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서우석, "디지털 시 대의 문화자본과 불평등" 문화정책논총 제 23 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 참조.

줄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방안이 마련될 때 집행가능성이 확보되는 것이며, 이에 관한 구체적 방안으로 실무자용 가이드라인의 제정과 교육이 제안될 수 있다. 특히 법적 인과적 급여 보다는 목적적 급여의 성격이 강한 문화복지의 경우 실무가의 판단여 지에 관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복 지 전문인력을 조치의 전달체계로 활용할 경우, 가이드라인의 제정과 교육은 규범 집행자의 이해가능성 확보를 통한 조치의 실현가능성을 향상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당해 규정과 조치의 통일적 체계적 업무로 수급 자의 이해가능성 또한 재고할 수 있을 것이다.

## 제 3 절 문화복지 관련 규정 및 조치의 효과성 향상 방안

1. 문화복지 전문인력을 통한 전달체계
(1) 문화복지서비스의 용역화

2013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정협의(새누리당 제6정조위)를 통해 국가 공인 ‘문화여가사’ 자격제도를 신설하기로 한바 있다. 정부의 문 화여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문화여가사를 배치한다는 취지이다. 이는 현행 민간 재단이나 협회는 물론 대학내 교육기관 등 여러 기관에서 문화복지사(가칭) 등의 다양한 자격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해온데 대한 적극적인 정책제안의 하나라 하겠다. ${ }^{52)}$
52) $\bigcirc$ (가칭)문화복지사 혹은 (가칭)문화여가사 제도화 사업 개요

| 구 | 분 | 2011년 | 2012년 |
| :---: | :---: | :---: | :---: |$|$ 2013년

이러한 조치는 본고의 입법평가 대상인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복지 규정 내지 조치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된다. 즉 (1) 정 부의 문화여가서비스의 용역급여화 (2) 문화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 성 재고 그리고 (3) 문화영역에 '복지'적 조치의 도입으로 평가된다.

본고의 조사에 따르면, 문화복지 서비스의 수급자인 국민은 문화복 지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5.3 \%$ 로 월등히 높았다. 대부분의 계층에서 높게 나타난 가운데 연령별로는 40 대, 직업별로는 서비스/판 매 및 생산/노무직 등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53) 반면, '필요없다'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30대, 기타 응답자 특성별로는 월소득 200만원 미

| 구 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 | :---: | :---: | :---: |
| 지원 대상 | 2개지역/27개기관/총33명 | 10개지역/36개기관/총42명 | 13개지역/85개기관/100명 |
| 총 사업 기간 | '11.11월~'12.3월 | '12년 5~12월 | '13년 2~12월 |
| 채 용 | 중앙에서 채용 | 각 배치기관에서 <br> 직접 인력 선발 | 각 배치기관에서 <br> 직접 인력 선발 |

: 강지훈, "문화이용권 및 전문인력 현황과 과제", 「문화예술복지 정책의 문제와 대응」, 입법 평가 회의자료집 (9), 한국법제연구원, 2013. 10. 10.
53) <표 IV-20>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계층별)
(단위: \%)

|  | 분 | $\begin{aligned} & \text { 필요가 } \\ & \text { 있다 } \end{aligned}$ | 필요가 <br> 없다 |
| :---: | :---: | :---: | :---: |
|  | 체 | 85.3 | 14.7 |
| 성 별 | 남 자 | 84.6 | 15.4 |
|  | 여 자 | 86.0 | 14.0 |
| 연령별 | 19~29세 | 86.9 | 13.1 |
|  | 30~39세 | 81.5 | 18.5 |
|  | 40~49세 | 87.9 | 12.1 |
|  | 50세 이상 | 84.9 | 15.1 |
| $\begin{aligned} & \text { 거 주 } \\ & \text { 지역별 } \end{aligned}$ | 서 울 | 83.2 | 16.8 |
|  | 인천/경기 | 88.3 | 11.7 |
|  | 대전/세종/충청 | 83.7 | 16.3 |
|  | 광주/전라 | 83.5 | 16.5 |
|  | 대구/경북 | 83.2 | 16.8 |
|  | 부산/울산/경남 | 84.9 | 15.1 |
|  | 강원/제주 | 89.5 | 10.5 |
| $\begin{aligned} & \text { 거주지 } \\ & \text { 특성별 } \end{aligned}$ | 서울 거주 | 83.2 | 16.8 |
|  | 6대 광역시 | 85.9 | 14.1 |
|  | 시 단위 | 86.3 | 13.7 |
|  | 군,면,읍 | 83.5 | 16.5 |


| 구 분 |  | 필요가 <br> 있다 | 필요가 <br> 없다 |
| :---: | :---: | :---: | :---: |
| 학력별 | 중졸 이하 | 83.3 | 16.7 |
|  | 고 졸 | 87.3 | 12.7 |
|  | 대 졸 | 84.9 | 15.1 |
|  | 대학원 이상 | 84.0 | 16.0 |
| $\begin{aligned} & \text { 가 계 } \\ & \text { 소득별 } \end{aligned}$ | 100만원 미만 | 83.0 | 17.0 |
|  | 100~200 미만 | 81.1 | 18.9 |
|  | 200~300 미만 | 88.8 | 11.2 |
|  | 300~400 미만 | 85.3 | 14.7 |
|  | 400~500 미만 | 87.6 | 12.4 |
|  | 500 만원 이상 | 83.7 | 16.3 |
| 직업별 | 전문직/관리직 | 84.9 | 15.1 |
|  | 사무직 | 84.6 | 15.4 |
|  | 서비스/판매직 | 90.5 | 9.5 |
|  | 생산/7기능단순노무 | 91.9 | 8.1 |
|  | 전업주부 | 86.3 | 13.7 |
|  | 자영업 | 87.6 | 12.4 |
|  | 농업, 임업 | 100.0 | - |
|  | 구직 중/무직 | 78.3 | 21.7 |
|  | 기 타 | 80.7 | 19.3 |

만인 경우 전체 평균대비 다소 높은 편이었다. 이에 관한 분석과 평 가는 본 설문결과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대적 지표를 포함한 재분석이 요청된다.

적어도 복지급여의 용역화라는 경향이 문화복지의 영역에서도 요청 되고 있다 하겠다. 또한 기존 용역급여에서 제기된 과제 즉 전문인력 의 근로조건 등을 포함한 용역급여의 질적 재고에 대한 평가와 분석 또한 요청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예컨대 문화관련 전문인력의 근 로조건 및 주된 의무에 관하여 이를 지시•책임지는 주체에 관한 재 고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 }^{54)}$
(2) 문화복지 용역서비스의 내용

문화복지 서비스의 전달에 있어서 전문인력 즉 용역급여의 형태로 제공하게 될 것을 상정한다면, 용역급여형태로 제공될 문화복지의 조치 의 개발 내지 적어도 기존 조치들 중 선정의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는 규범적 합리성 기준만으로 결정되는데 한계가 크다. 따라서 용 역급여의 효과성, 수급대상자에 대한 수요 조사 등 상대적 합리성이 반영된 근거자료가 필요하다.

본고의 문화복지 용역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수요조사에 따르면 용 역급여의 전반에 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응답자( $\mathrm{N}=853$ 명)를 대상 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서비스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행정 지원'(42.1\%), '특정 분야의 문화/예술 공연 및 행사 관리'(17.9\%), '담당지역의 문화예술 시설관리'(10.3\%)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그런
54)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2조(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3) 학교의 장은 문화예술교육사가 전문성을 발휘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 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4)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데 '위에 소개한 업무 모두를 담당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응답이 $29.5 \%$ 로 나타나 용역급여방식에 대한 기대를 보이고 있다.55)

## 2. 필요성 요건에 따른 급여 산정기준

문화복지 급여에 대한 필요성 조사에서 인식을 지수로 포함하는 방 안, 나아가 필요성 조사의 결과가 문화복지 관련 급여 산정기준의 요 건으로 포함 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평가대상의 문제점에서 살핀바와 같이 문화에 대한 소외는 주 관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수급대상의 인식에 따른 필요성 조 사의 요건이 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즉 문화복지 정책의 수립과 이행 방법은 물론이고 급여대상의 선정 과 급여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기위한 필요성 심사는 수급자의 인식이 라는 요소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관련 연구와 조사는 그 실시 자체로도 의 의가 있겠으나, 동시에 법정 급여의 산정기준으로서 필요성 조사라는 점에서 법적 조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필요성 조사를 요건으 로 하는 특별 공공부조의 경우, 조사를 통한 결과는 급여의 요건이자 대상선정의 기준이 된다.

더욱이 문화복지 분야도 기존 복지급여종류의 경향과 같이 현물급 여에서 점차 용역급여로 제공되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다. 용역급여는 55) <그림 IV-16> 문화복지 전문인력에 기대하는 서비스 내용
(단위: \%)


소위 전형적인 서비스의 형태이며, 이는 수요자의 주관적•감정적 만 족도가 바로 그 효과로 평가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관련 필요성 조사는 실증적 자료 특히 주관적•상대적 인식요소가 포함된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실증적•객 관적인 데이터가 조치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자 급여요건으로 규범화 될 때, 수급자의 만족도 내지 조치에 대한 효과성으로 입법평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문화빈곤으로 인식저하가 극심하여 수범자의 필요성 자각이 없는 경우에도 인식의 정도는 꾸준히 조사되고 연구되어져야 하는 규 범대상인 것이다. 왜냐하면 문화향유의 정도란 단순히 문화적 소비의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 경쟁과 경제적 성장의 생산적•창의적 요소 취득하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문화향유에 대한 기회의 선별적 요소는 특별 사회부조로서 필요성 조사를 통해 선택적 급여가 가능한 규범체계를 도입하는 방안 도 검토할 수 있다.

예컨대 본고 설문에서 규범화를 원하는 문화복지서비스에 대한 연 령별 20-30대는 적극적 문화활동의 지원이 $40-50$ 대 이상은 강좌 및 교 육 보급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령별로 상대 적인 서비스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라도 법적 수급요건이 되는 필요성 조사는 개인의 프 라이버시권 침해를 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 될 것이다.56) 또한 조사
56) 문예법 제 15 조의 4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의 제 2 항 이하에 따른 시행령 제 23 조의 2 와 시행규칙 제 2 조와 제 4 조에 따라 사실상 이용권 신청자로서는 직접적으 로 제공하는 자기 정보가 적다. 다만, 이는 전자정보의 공유 및 활용에 따른 공개 가 당사자의 직접적 인지 없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침해의 인식이 없다는 것이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수급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증명•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 및 국민 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 부법」 제 36 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

의 주체는 객관적인 조사와 결과발표가 가능한 독립적 지위와 운영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규범화도 고려하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가 능하겠다．

문화복지에 대한 요구는 주관적 속성이 강하므로 차별성 인식요건 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즉 문화복지에 대한 수요에 대한 인적 요건은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정도인 것이다．${ }^{57)}$ 이러한 점에서 문화이용권 사 업에 있어서 단순히＇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이용권 내지 카드의 발급과 사용은 이러한 주관적인 문화복지 수요를 충분히 고려 하기 어렵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상＇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시책과 문화이용권지 급에 대한 규정은 엄밀히 정의규정 형식은 아니다（제 15 조의 3）．수급 대상인＇문화소외계층＇의 정의규정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전부개 정안도＇문화이용권’만을 정의하고 있다（제2조 1 항 5 호）．즉 법률에서 문화이용권이라는 구체적 급여종류와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문화 향유의 장애 원인을 예시하고 있다（제 15 조의 3）．시행령으로 법기술적 으로 수급범위를 규정하기 위해＇문화소외계층＇을 기술할 뿐이다．
현행법이 문화소외계층의 정의를 문화향유의 장애원인을 요건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본다고 해도 이는 객관적 요인만을 예시하고 있는 것이다．즉 법률에 근거한 시행령상＇문화소외계층의 범위＇는 경제적 원 인으로 두고 있다고 분석된다．장애와 한부모의 원인도 최저생계비를

[^4]기준과 함께 판단되므로 경제적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즉 문화이용권 의 급여요건은 문화소외계층의 정의에 따른 급여라기보다는 특별부조 법상 소득보장을 위한 법들의 수급권자에 대한 부가적 급여종류이다. 적용범위 기준으로 '문화소외계층'을 두고 있다면, 문화이용권이라는 급여종류는 '문화소외계층’ 중 경제적 원인으로 인한 소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입법평가대상의 현황 문제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문 화적 소외의 원인은 경제적 지리적 물리적 등 객관적 원인 뿐 아니 라, 문화예술재화의 경험재적 특성과 문화예술교육의 부재, 문화향유 장애원인에 대한 인식, 문화적 향유 차이발생과 원인에 대한 인식 등 주관적 원인을 간과할 수 없다. 예컨대 현행 문화이용권의 지급요건 에서 경제적 원인과 함께 상대적 문화소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구 내 청소년의 수를 요건으로 둔 사례가 그러하다.58)

결국 문화예술진흥법 내의 체계에 있어서 '문화이용권'을 급여의 종 류로 정의한다면, 급여요건 내지 적용기준을 동일 법률안에 정의하는 것이 규범체계성에 부합할 것이다. 현행 법률과 같이 '문화소외계층' 을 적용기준으로 규정한다면, 문화소외계층의 요건까지 법률체계에서 정의구문을 두는 것이 체계성에 부합하겠다. 다만 정책적 판단에 따른 구체적 수급범위의 탄력성이 필요하다면 문화이용권 내지 문화소외계 층에 정의된 요건을 시행령에서 충분히 규정할 수 있겠다.59)
58) 예컨대 문화이용권 산정기준 내지 수급대상 중, 가구 내 청소년( $10-19$ 세) 기준. <문화•여행 • 스포츠관람 이용권 사업 현황> 중,

| 구 분 | 문화이용권 | 여행이용권 | 스포츠관람 이용권 |
| :---: | :---: | :---: | :---: |
| 수혜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br> 차상위계층 가구 및 <br> 가구내 청소년(10-19세) | 기초생활수급자 <br>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br> 차상위계층 가구 |
| 지원 금액 | 가구당 5만원 <br> (청소년 개인당 5만원) | 개인당 15 만원 <br> (가구당 2인 이내) | 가구당 <br> 최대 12만원 |

59) <문화이용권의 인적 적용대상 • 산정기준 • 이용범위 규정 방안(예시)>

| 현 행 | 개 정 안 | 대 안 |
| :---: | :---: | :---: |
| 제 2 조（정의）（1）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음과 같다． <br> 4．＂문화이용권＂이란 문화 소외계층이 공연－전시 • 영화－도서－음반 등 문 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 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 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 다．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 제 2 조（정의） <br> （1） $\qquad$ $\qquad$ <br> 5．＂문화이용권＂이란 문화 소외계층이 공연－전시• 영화－도서－음반 등 문 화예술，여행 및 스포츠 경기 프로그램을 관람 또 는 이용할 수 있도록 금 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 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이 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 제 2 조（정의） <br> （1） $\qquad$ $\qquad$ <br> 5．＂문화이용권＂이란 문 화소외계층이． <br> 6．＂문화소외（계층）＂이란 |
| 제 15 조의 3 （문화소외 계 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 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 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 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 구하여야 한다． <br> ［본조신설 2012．2．17］ | 제19조（문화소외계층의 문화 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 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 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 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 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 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 00 조（문화소외계층의 문 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 구）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는 문화소외계층의 문 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 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제 15 조의 4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1）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 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0조（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1）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 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 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 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 제 00 조（문화이용권의 지급） 제 00 조（문화이용권）（1）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00 조에 따른 문화예술복 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 을 발급할 수 있다．．．．．． 제 00 조（문화이용권 이용범위 와 산정기준）（2）문화이 용권의 이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br> 1．문화예술 <br> 2．여행 <br> 3．스포츠 관람．．．． <br> 4．그 밖에 부령으로 정 하는 사항 <br> （3）제1항 및 2 항에 따른 문화이용권의 이용범위나 산정기준은 부령으로 정 한다． |

## 제 4 절 대안의 한계

평가란 가치판단을 통한 결정은 아니다. 오히려 가치판단의 개입을 제한하고 객관적인 단위로 조치와 제도를 측정하고 이를 제시하는 것 이 바로 평가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입법평가는 정책의 호•불호를 결정할 수 없으며, 단지 판단의 기준 내지 자료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도구로 수집하여 제시하는 것 이다.

따라서 본고 입법평가의 대안단계에서의 제안과 이에 관한 분석은 가장 합리적인 최선적 방안의 선별을 하지 못한다. 다만, 상대적 합리 성에 따른 방안의 '합의'를 위한 '선택'의 요건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 이다. 이러한 입법평가의 대안분석법은 한계인 동시에 실증적인 특히 수범자의 합의를 포함한 요소가 법적 분야에서도 평가요소가 된다는 점에서는 가능성이라 하겠다.

한편 대안 비교(compare the options) 분석을 60 ) 실시하는데 있어서, 이 건 입법평가에 따른 대안은 사회적 편익으로 계량적 분석이 어렵다. 즉 비용-편익 분석이 용이하지 않으며, 효과성 분석 또한 비계량적 효 과의 분석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의 대안분석은 목표-달성 효과 분석과 다중기준 분석 에 따른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는데 지난다.

[^5]
## 참 고 문 헌

박영도，「입법평가 이론과 실제」，한국법제연구원， 2007.
박영도，「입법학 입문」，한국법제연구원，2008，6면．
박영도，「오스트리아의 문화예술진흥법제」，한국법제연구원， 2005.
강지훈，＂문화이용권 및 전문인력 현황과 과제＂，「문화예술복지 정책 의 문제와 대응」，입법평가 회의자료집（9），한국법제연구원， 2013. 10．10．워크쏩．

김영호，＂공공미술과 법제＂，현대미술학 논문집， 2012.
김휘정，＂예술인 복지법 시행의 의미와 향후 과제＂，이슈와 논점，국 회입법조사처，2013．2． 22.

김휘정，문화복지의 동향과 문화복지사업의 개선방향，NARS 현안보 고서 제 175 호，국회입법조사처，2012．12． 28.

서순복，＂문화예술진흥법의 내용분석과 환경변화에 따른 입법방향＂， 문화정책논총．

서우석•김정은，＂문화격차 해소에 대한 평가와 전망＂，한국문화경 제학회「문화경제연구」제 13 제2호， 2010.

서우석，＂디지털 시대의 문화자본과 불평등＂문화정책논총 제 23 집，한 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

서헌제•정병운，「캐나다와 영국의 문화정책 및 법제」，현안분석，한 국법제연구원， 2006 ．

양혜원，한국문화복지의 현황과 과제，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회 의자료집（9），2013．10． 10 워크솝．

윤계형，「입법평가 적용사례 연구－유럽연합－」，한국법제연구원， 2012. 이호영•서우석，＂디지털 시대의 문화자본과 불평등＂，문화정책논총 23집，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정갑영，문화복지법제화 방안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현택수•윤동은•김광병，＂문화복지의 법적 권리화에 대한 탐색적 연 구＂，한국사회복지학 Vol．60，No．4， 2008.

최종혁•유영주，＂문화복지 제도정착에 관한 실천가 의식＂，사회복지 연구 제43권 2호， 2102.

Vik Singh，＂Economic Contribution of Culture in Canada＂，Culture，Tou－ rism and the Centre for Education Statistics Research papers， the Minister responsible for Statistics Canada， 2004.

Government Statistician Statistics New Zealand • Ministry for Culture and Heritage，New Zealand，＂A Measure of Culture：Cultural experiences and cultural spending in New Zealand＂， 2003.

「2012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2.
문화관광부，「예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기본연구」， 2006.
문화체육관광부 주체－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관，「현장과 함께 하는 ‘새 예술정책＇연속 토론회」자료집，2013．8． 28.

한국문화예술위원회，「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법제 연구」， 2008.


1. 행정기관 설문조사 질문지
2. 일반국민 설문조사 질문지

## 1．행정기관 설문조사 질문지

##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위한 설문 조사표【행정기관 담당자】 <br> ID

본 설문조사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로써 한국 법제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본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설문지는 비밀이 보장되며，무기명으로 실시하므로 귀 하에게 아무런 불이익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귀하의 솔직한 응답만이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고 문화예술 관련 입법평가 및 복지문제 해소에 밑거름이 될 수 있으므로，모든 질문에 성심껏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left.$$
\begin{array}{|c|l|l|}\hline & & \begin{array}{l}\text { 귀하께서 소속된 기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text {（1）중앙정부 및 부처（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 \\
\text {（2）지방자치단체（구청，주민센터 등）및 산하단체 } \\
\text {（3）문화 관련 공공기관（ARKO，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text { 예술의 전당 등）}\end{array}
$$ <br>

（4）기타（ 구체적으로：\end{array}\right]\)| 분 |
| :--- |



1. 문화예술 업무 관련

## 1. 거하의 현재 소속 부서와 문화예술복지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

 신 기간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1-1. 소속부서 :
1-2. 관련 업무 담당 기간 : $\qquad$ 년
2. 귀하의 주요 담당업무에 가장 가까운 분야는 어느 것입니까? 다 음 보기에서 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 문화예술공간 분야
(2) 문화예술 관련사업 분야
(3) 장애인, 예술인 및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분야
(4) 일반국민에 대한 문화복지 분야
(5) 문화예술관련 기금분야
(6) 문화예술 관련기관 분야
(7) 그 외 기타 ( $\qquad$ )
3. 귀하의 주된 업무(문2)와 관련하여 가장 빈번히 참조하거나, 찾아 본 경험이 있는 법률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가장 자주 참조하는 법률의 순서대로 3 순위까지 골라주세요.
1순위 $\qquad$ 2순위 $\qquad$ 3순위 $\qquad$
(1) 문화예술진흥법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3) 출판문화산업진흥법/독서문화진흥법/인쇄문화진흥법
(4)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5) 예술인 복지법
(6)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 및 규칙 등
(7) 그 외 기타 ( $\qquad$ )
(8) 전혀 없다
4. 귀하께서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다음의 경우에 해 당하신 경우가 있으십니까? 다음 보기에서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 라주십시오.
(※ 특히 법률과 관련하여 애로가 있으셨던 경우가 있다면 꼭 말씀해주 시길 부탁드립니다.)
(1) 예산 또는 인력의 부족
(2) 관련 민원의 혼선
(3) 관련 법률과 실제 문제간의 차이
(4) 업무관련 법률들의 산재로 인한 어려움
(5) 업무관련 기관(정부부처, 부서, 위원회 등)간의 어려움
(6) 전혀 문제가 없었음
(7) 그 외 기타 ( $\qquad$ )
5. 국민 전체에 계속적으로 특정의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 는 업무가 발생하신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3순위까지 골라주세요.
1순위 $\qquad$ 2순위 $\qquad$ 3순위 $\qquad$
(1) 추가적인 재정과 기금의 확보
(2)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일선의 전문인력 확충
(3) 구체적인 문화복지서비스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
(4) 새로운 관련 위원회 또는 기관의 설립
(5) 그 외 기타 ( $\qquad$ )
6. 귀하께서는 일반국민 및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할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 국가(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기업
(4) 문화예술관련 기관
(5) 일반 국민
(6) 기타 ( 구체적으로 : $\qquad$

## 2. 문화예술진흥법 관련

1. 귀하께서는 아래에서 소개하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해 들어보 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이 있 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예술 복지 증진에 관한 규정으로는 문화의 날 과 문화의 달 설정, 문화강좌 설치 및 지원, 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문화 산업 육성과 지원,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 및 사용 촉진,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 지원, 문화소외계층 문화예술 복지 장려, 저소득층 문화이용권 지 급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1) 매우 잘 알고 있다
(2) 대충 알고 있다
(3) 잘 몰랐다
(4) 전혀 몰랐다
2. 현 문화예술진흥법 제1조(목적)에서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 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해 느끼시는 대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2-1. '문화예술진흥법'이라는 이름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초적인 법 으로 '문화예술복지의 증진'을 규정하고 있다고 이해하기 쉽다.

| 매우 쉽게 |
| :---: | :---: | :---: | :---: | :---: | :---: | :---: |
| 이 해 |
| 가능하다 | | 대체로 |
| :---: |
| 쉽게 이해 |
| 할 수 있다 | | 약 간 |
| :---: |
| 노력하면 |
| 이해할 수 |
| 있 다 |$\quad$ 보통이다 $\left.\quad$| 이해하기 |
| :---: |
| 조금어려운 |
| 편이다 | | 이해하기 |
| :---: |
| 상당히 |
| 어렵다 | | 매 우 |
| :---: |
| 특별한 |
| 전문지식이 |
| 필요하다 | \right\rvert\,

2-2. '문화예술진흥법'은 국민의 문화적 복지에 대한 권리와 국가의 의무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 매우 그렿다 | 대체로 <br> 그렇다 | 약간 그런 <br> 편 이다 | 보통이다 | 약간 그렇지 <br> 않은 편이다 | 별로 그렇지 <br> 않 <br> 다 | 전혀 그렿지 <br> 않 다 |
| :---: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3. 현재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하는 문화예술 복지의 내용 중, 일반 국민 전체에 대한 문화복지서비스로서 '(1) 문화의 날 설정, (2) 문 화강좌 설치, (3) 학교 및 직장에 문화예술활동단체의 권고, (4) 도 서문화전용상품권 인증제도'를 문화예술진흥법으로 정하고 있습니

다.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귀하의 입장에서 이러한 '국민에게 보장 하는 문화예술복지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지금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
(2) 지금보다 소폭 늘려야 한다
(3) 지금 수준이 적절하다
(4) 지금보다 소폭 줄여야 한다
(5) 지금보다 대폭 줄여야 한다
(6) 잘 모르겠다
4. 귀하께서는 문화관련 법률(예: 문화예술진흥법,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법 등)들이 일반 국민의 문화생활에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 있 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도움이 되고 있다 (2) 약간 도움이 되는 편이다 (3) 보통이다 트 (1)(2)(3)번 응답하신 경우 5번으로
(4)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5)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트 (4)(5)번 응답하신 경우 4-1번으로

4-1. (문 4에서 (4)(5)번 응답하신 경우만 해당) 만약 법이 국민들의 문화생활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산재된 관련 법률들의 체계 (2) 구체적인 급여에 관한 규정 미비
(3) 관련 정책과 제도의 미비 (4) 담당자의 과중한 업무부담
(5) 그 외 기타 ( $\qquad$ )
5. 그 밖에 현행 문화예술관련 법률에 관하여 문제점이나 바라는 점 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3. 문화예술복지 관련 법제화 관련 및 기타

1.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문화예술분야의 복지를 위해 국민에게 가 장 필요한 구체적인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보 기 중에서 법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을 한 가지만 골라 주세요.
(1) 문화소외계층 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문화이용권 지급
(2) 장애인이나 예술인뿐 아니라 국민 전반의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3) 전 국민 대상 문화예술 관련 강좌 등 예술교육의 보급
(4) 문화의 날 등의 지정 및 준 공휴일의 지정
(5) 각종 문화관련 이벤트 및 행사의 개최
(6) 기타 ( 구체적으로: $\qquad$ )

1-1. (문 1번에 대해) 앞서 문항의 답변과 관련하여 그렇게 생각하 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급적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세요.
$\square$
2. 다음은 일반 국민 전체의 문화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법으로 정하 는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중 어떤 의견에 더 동의하세요?
(1) 현재의 문화예술예술진흥법으로 충분하다
(2) 기존 문화예술진흥법에 별도의 장이나 규정을 추가하여 제정한다
(3) 새로운 문화복지법을 제정하고, 향후 이법을 구체적으로 개정한다
(4)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한다
(5) 특별한 의견이 없다
3. 문화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기존의 문화예술진흥법의 역할은 무 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1) 기본법이 제정되면 진흥법은 폐지하여도 된다
(2) 기본법에도 규정된 내용만 삭제하고, 현행 진흥법을 그대로 둔다
(3) 진흥법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해나갈 수 있 을 것이다
(4) 기타 ( 구체적으로: $\qquad$ )
4. 문화예술복지와 관련하여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예술인 복지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등의 법률이 있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각 위원회, 재단 등의 기구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보시기에 국민 전체의 문화복지와 관련한 규정들과 시행 기구들 간의 조정 내지 총괄을 하는 법률과 기구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다음 중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해당 공란에 직접 적어주세요.
(1) 현재 특정된 명확한 법률과 기구는 없다 향후 $\qquad$ 법으로 $\qquad$ 기구/위원회/부처/재단에서 역할해 야 한다
(2) 현행 $\qquad$ 법으로 $\qquad$ 기구/위원회/부처/재단이 총 괄 내지 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다
(3) 조정과 총괄을 위한 법률과 기구는 필요하나, 잘 모르겠다
(4) 필요가 없다
5. 국민 전체의 문화복지를 위한 법률의 구체적인 제도 및 서비스들 이 신설된다면, 이를 시행하기 위한 기구/부서 및 인력배정은 어떻 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기존의 문화예술 관련기구 및 인력에 예산을 투입하여 활용
(2) 기존의 문화예술 관련기구에 신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투입
(3)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되, 기존의 인력을 활용
(4) 새로운 기구의 신설과 신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투입
(5) 기타 ( 구체적으로: $\qquad$ )
6. 마지막으로 일반 국민 전체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법이 정하여 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상관없으니 자유롭게 말씀해주십시오.


- 오랜 시간동안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


## 2. 일반국민 설문조사 질문지



1. 문화예술 이용 관련
2. 다음 중 귀하께서 지난 1 년 동안 감상하셨거나 또는 참여한 경험 이 있는 것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구 분 | 1년간 관람 및 감상 경험 |  |  |  |  |
| :---: | :---: | :---: | :---: | :---: | :---: |
|  | 1~2회 | 3 -4회 | 5 ~6회 | 7회 <br> 이상 | 한 번도 <br> 없음 |
| 문학 작품 <br> (소설, 시, 아동문학, 희곡, 평론 등) | (1) | (2) | (3) | (4) | (5) |
| 음 악 <br> (오페라, 성악, 대중음악, <br> 관현악, 국악 등) | (1) | (2) | (3) | (4) | (5) |
| 무 용 <br>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 (1) | (2) | (3) | (4) | (5) |
| 연극, 뮤지컬 <br> (연극(마당극), 뮤지컬 등) | (1) | (2) | (3) | (4) | (5) |
| 영화, 미디어 <br> (영화, DVD, 미디어 콘텐츠 등) | (1) | (2) | (3) | (4) | (5) |
| 전 시 <br> (회화, 전시회, 건축, 사진, <br> 공예, 디자인 등) | (1) | (2) | (3) | (4) | (5) |
| (복합장르 <br> (비보이 등) | (1) | (2) | (3) | (4) | (5) |
| 기타 (구체적으로: | (1) | (2) | (3) | (4) | (5) |

* 위 항목 중 모든 분야에 대해 "(5) 한 번도 본 것이 없음"으로 응답한 경우 트 설문 중단

2. 귀하께서 문화예술을 관람하거나 참여하시는데 있어 가장 어려움 을 격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보기에서 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 경제적 여유가 없다
(2) 생활이 바빠 여가시간이 부족하다
(3)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로 인해 거동이 어렵다
(4) 문화예술 공연 및 관람을 위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5)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 공연시설이 없다
(6)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그다지 친숙하지 않다
(7) 기타 ( 구체적으로: $\qquad$ )
3. 귀하께서 문화예술을 관람 또는 참여를 결정하는데 주요한 정보 는 어디에서 얻으셨습니까? 보기에서 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 자발적인 인터넷 사이트(포털사이트, 티켓예매, 블로그 등) 검색
(2) 신문, 잡지, 공연포스터 등 배포된 인쇄물
(3) 공공기관 (주민센터,지자체문화예술과,국립시립공연단 등)의 홍 보 또는 알림서비스
(4) 주위 지인이나 동호회 등의 추천이나 권유
(5) 기타 ( 구체적으로: $\qquad$ )
4. 귀하께서는 문화예술의 감상 또는 참여를 위한 전문교육을 받으

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래에서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1) 초중고 정규교과목
(2) 대학이상 전공 내지 교양과목
(3) 사설학원, 과외 내지 문화센터 등의 사교육
: 1 주 미만( ), 1 주 이상- 1 개월 미만, 1 개월 이상- 3 개월 미만, 6개월 이상
(4) 공공기관 (주민센터, 구청, 시청 등) 제공의 교육
: 1 주 미만( ), 1 주 이상- 1 개월 미만, 1 개월 이상 -3 개월 미만, 6 개월 이상
(5) 기타 ( 구체적으로: $\qquad$ )
(6) 받은 경험이 한 번도 없다
5.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국민들 간에 문화예술을 누리는 정 도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1) 매우 큰 차이가 있다
※ (1)(2)(3)으로 응답한 경우 트 문 5-1로 이동
(2)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별로 차이가 없는 편이다
※ (4)(5)로 응답한 경우 트 문 6으로 이동
(5) 전혀 차이가 없다

5-1. (문 5의 (1)(2)(3)번 응답자만) 국민들 간에 문화예술을 누리는 정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 니까? 순서대로 3 가지까지 골라주십시오.
1 순위__ // 2 순위__ 3 순위 $\qquad$
(1) 개개인의 관심과 성향
(2) 경제력과 학력
(3) 성별 (남 여)
(4) 연령
(5) 지역
(6) 기타 (구체적으로: $\qquad$
6.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일반 국민들이 평소에 더 많은 문화예술 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엇이든 좋으니 자유롭게 말씀해주십시오.

## 2. 문화예술진흥법 관련

7-9. 다음 설명을 모두 읽어보신 후 이어지는 설문에 응답하여 주세요. (※ 9번까지 계속해서 보여줄 것)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이 있 습니다.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제1조(목적)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창달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 귀하께서는 위에서 소개한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해 본 조사 이 전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1) 매우 잘 알고 있다
(2) 대충 알고 있다
(3) 잘 몰랐다
(4) 전혀 몰랐다
8. 앞서 보여드린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이라는 법률의 이름과 제1 조의 목적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초적인 법으로 '국민'의 '문화예술 복지의 증진'을 규정하고 있다고 이해하시기 어려우신가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 매우 쉽게 이해 가능하다 |  | $\leftarrow$ | 이해가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다 | $\rightarrow$ | 매우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leftarrow$ | (2) | $\leftarrow$ | (3) | $\leftarrow$ | (4) | $\rightarrow$ | (5) | $\rightarrow$ | (6) | $\rightarrow$ |

9. 위의 '문화예술진흥법'의 이름과 제1조(목적)를 읽으시고, 다음의 질문에 대해 느끼시는 대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1] 읽기에 매끄럽다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약간 그런 편이다
(4) 보통이다 (5) 약간 그렇지 않은 편이다 (6) 별로 그렇지 않다
(7) 전혀 그렇지 않다
[2] 문장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약간 그런 편이다
(4) 보통이다 (5) 약간 그렇지 않은 편이다 (6) 별로 그렇지 않다
(7) 전혀 그렇지 않다
[3] 전문용어의 사용이 적고, 설명을 잘 하고 있다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약간 그런 편이다
(4) 보통이다 (5) 약간 그렇지 않은 편이다 (6) 별로 그렇지 않다
(7) 전혀 그렇지 않다
[4] 국민의 문화적 복지에 대한 권리와 국가의 의무에 관하여 자 세히 규정하고 있다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약간 그런 편이다
(4) 보통이다 (5) 약간 그렇지 않은 편이다 (6) 별로 그렇지 않다
(7) 전혀 그렇지 않다

10-11. 다음 설명을 모두 읽어보신 후 이어지는 설문에 응답하여 주세요.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 복지 증진에 관하여 문화의 날과 문화의 달 설정, 문화강좌 설치 및 지원, 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문화산업 육성과 지원, 도 서 - 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 및 사용 촉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문화소 외계층 문화예술 복지 장려, 문화소외계층 문화이용권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 습니다.
10. 귀하께서는 문화예술진흥법이 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문 화예술 활동의 지원 규정에 대해 본 조사 이전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1) 매우 잘 알고 있다
(2) 대충 알고 있다
(3) 잘 몰랐다
(4) 전혀 몰랐다
11.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저소 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 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문화예술진흥법이 정하고 있는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1) 매우 잘 알고 있다
(2) 대충 알고 있다
(3) 잘 몰랐다
(4) 전혀 몰랐다

12-14. 다음 설명을 모두 읽어보신 후 이어지는 설문에 응답하여 주세요.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국민 전반의 문화예술복지와 관련하여 ‘문화의 날 설 정, 문화강좌 설치, 학교 및 직장에 문화예술활동단체의 권고, 도서문화전용상 품권 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2. 위에서 설명드린 문화예술진흥법의 국민을 위한 제도들 중에서, 직접 참여하거나 경험해보신 것이 있으시다면 모두 골라주십시오.
(1) 매년 10 월인 '문화의 달' 또는 매년 10 월 셋째주 토요일인 '문화의 날‘에 시행하는 문화행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예술회관 등의 '문화강좌'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고한 학교 및 직장 내 문화에술활 동단체의 활동
(4) 도서문화를 '전용'으로 하는 도서문화전용상품권의 사용
(5) 기타 ( 구체적으로: $\qquad$ )
13. 위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은 문화예술진흥법이 '국민 전체'에게 보장하는 문화복지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

## 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지금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
(2) 지금보다 소폭 늘려야 한다

트 (1)(2)번으로 응답한 경우 문 13-1번으로 이동
(3) 지금 수준이 적절하다
(4) 지금보다 소폭 줄여야 한다
(5) 지금보다 대폭 줄여야 한다
(6) 잘 모르겠다

트 (3)(4)(5)(6)번으로 응답한 경우 문 14번으로 이동

13-1. (문 13의 (1)(2)번 응답자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복지서비 스를 어떤 방향으로 늘리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깊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 (내용 중심)
(2) 전체 국민들이 보다 문화예술을 가깝게 접할 수 있는 방향 으로 폭넓은 기회를 제공 (범위 확대)
(3) 기타 (구체적으로: $\qquad$ )
14.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이 정하고 있는 문화복지 제도 중에서, '국 민'전반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이 무엇이라 생각하 십니까? 다음 보기를 읽어보시고 가장 마음에 드시는 한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1) 문화의 날 및 문화의 달 설정 및 활성화
(2) 문화강좌 설치 및 지원 확대
(3) 직장 및 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4) 문화산업 육성과 지원 확대
(5) 도서•문화 상품권 인증 및 사용 촉진
(6)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7) 예술인에 대한 복지증진
(8)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이용권 지급 확대
(9) 마음에 드는 것이 없음
(10) 기타 (구체적으로: $\qquad$ )
15. 국민 및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든 상관없으 니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3. 문화예술 복지 관련 법제화 관련

16.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문화예술분야의 복지에 관한 국민의 권 리와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를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1) 그렇다.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2) 아니다. 법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
17.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문화예술분야의 복지를 위해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구체적인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보기 중에서 법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을 한 가지만 골라주세요.
(1) 전 국민에게 문화이용권 지급
(\% 현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일부에 게만 문화이용권 지급)
(2) 장애인이나 예술인뿐 아니라 국민 전반의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3) 전 국민 대상 문화예술 관련 강좌 및 교육의 보급
(4) 문화의 날 등의 지정과 문화행사 이벤트
(5) 기타 ( 구체적으로: $\qquad$ )
18. 귀하께서는 국민 전반의 문화예술복지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 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필요가 있다
Gㅡ (1)번으로 응답한 경우 문 18-1번으로 이동
(2) 필요가 없다
(G- (2)번으로 응답한 경우 문 19번으로 이동

18-1. (문 18의 (1)번 응답자만)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문화예술복 지를 위한 전문가는 어떠한 자격 내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1) 적절한 문화예술적 지식과 소양
(2) 복지업무에 대한 이해와 자세
(3) 신설 전문자격제도의 이수 및 자격증 취득
(4) 기타 (구체적으로: $\qquad$ )
(5) 특별한 능력이 요구되지 않음

18-2. (문 18의 (1)번 응답자만)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문화예술복 지를 위한 전문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가 있다고 보십니까?
(1) 담당지역의 문화예술 시설관리
(2) 특정 분야의 문화/예술 공연 및 행사 관리
(3)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행정 지원
(4) 위에 소개한 업무 모두를 담당할 필요가 있음
(5) 기타 ( 구체적으로: $\qquad$ )
19.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인, 국민, 문화 소외계층 등의 문화복지 향 상을 위해 국가(정부)에 하실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든 상관없으 니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 4. 응답자 특성 관련

20. 귀하가 주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특성은 다음의 구분 중 어디 에 해당되십니까?
(1) 서울에 거주
(2) 6 대 광역시(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인천)에 거주
(3) 도(경기도,강원도,충청도,전라도,경상도,제주도)의 시 단위에 거주
(4) 도(경기도,강원도,충청도,전라도, 경상도,제주도)의 군, 면, 읍 단 위에 거주
21.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중졸 이하
(2) 고졸
(3) 대졸(대재 포함)
(4) 대학원 재학 이상
22. 귀하의 월평균 가계소득(상여금 등 모든 수입 포함)은 어느 정 도 되십니까?
(1) 100 만원 미만 (2) 100 만원 이상 $\sim 200$ 만원 미만
(3) 200 만원 이상 $\sim 300$ 만원 미만 (4) 300 만원 이상 $\sim 400$ 만원 미만
(5) 400 만원 이상 $\sim 500$ 만원 미만 (6) 500 만원 이상
2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전문직/관리직
(2) 사무직
(3) 서비스직 / 판매직
(4) 생산직/기능직/단순노무직
(5) 전업주부
(6) 자영업
(7) 농업, 임업 등 종사자
(8) 구직 중/무직
(9) 기타 ( 구체적으로:

- 오랜 시간동안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


[^0]:    7) 성남문화재단 사랑방문화클럽 참여 시민 집중면접 사례, 2013. 8. 23
    8) 사후적 입법평가의 동기와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박영도, 「입법평가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2007, 183 면 이하 참조.
    9) 자세한 설문의 개요에 관하여서는 본고 사회적 조사의 장에서 살피기로 한다.
[^1]:    질 문
    다음 중 귀하께서 지난 1 년 동안 감상하셨거나 또는 참여한 경 험이 있는 것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2]:    43) 의원발의에 따른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에서도 '임부'가 문화예술복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이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3]:    넷을 활용가능하게 함으로 조치의 접근경로와 조치의 효과성의 양자를 재고한 사 례도 그러하다.
    49) 예컨대 문화이용권, 여행이용권, 스포츠관람이용권을 '문화'이용권으로 통합하고 수급자로 하여금 기존 분야의 구분 없이 통합된 금액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접 근경로와 방식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수급자로서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조 치의 상대적 증대효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50) 이점에서 현행 문화이용권 조치는 소득을 요건으로 프라이버시를 넘어 필요성 조사를 하면서도, 수급대상자의 일부분에게 지급되고 전달방식에 선착순이 포함되 는 것은 재원부족의 현황을 넘어 법적 합치성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필요성조사를 통한 제한적 특별부조적 조치는 산정기준과 지급대상 내지 순위에 실증적 합리적 규범적 요건이 사전에 수범자에게 제시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즉 선착순 보다는 제한되어 지급되는 우선순위에 관한 요건이 제시되어야 한다.

[^4]:    외로 한다．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2 제 2 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5）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이용권의 지급．이용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7）소위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박탈이 문화격차의 체감에 큰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있다；서우석•김정은，＂문화격차 해소에 대한 평가와 전망＂，한국문화경제학회 「문 화경제연구」제 13 권 제 2 호，2010， 22 면．

[^5]:    60) 대안 비교의 기법에 관하여서는 유럽연합 영향평가국의 Key analytical steps의 단 계를 참고하였다: 자세한 것은 http:ec.europa.eu/governance/impact/iab/iab_en.htm 또는 윤계형, 「입법평가 적용사례 연구-유럽연합-」, 한국법제연구원, 2012, 참조.
